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 ~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6 / August / 2005

0508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Korean Architects

건축사 2005 / 08

표지사진 : 광진 문화예술센터 및 구의역광장

Contents



22

35

40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08 436호

칼럼	협회의 홍보전략과 건축산업전람회	이규환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하천 수변역(水邊域)과 건축	김국일	18
회원작품	하비에르국제학교	이관직	20
	광진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화청사	안길원	28
	미켈란 107	이민관 · 차재욱	36
계획작품	키즈맘센터	소명식 + 강현수	44
작품노트	당선된 현상설계경기작품의 부활을 기다리며...	전영철	46
설계경기			50
건축기행	동양의 베니스 - 소주와 항주	강성익	64
기고	근대사의 슬픔은 곧 건축의 아픔이었다	김영수	68
	부산국제 건축심포지엄 : 도시와 영원성	조승구	70
	건축사사무소 경영의 실상	최동규	80
연재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5	박진호	85
건축마당	협회소식		93
	건축계소식		97
	법령		102
	건축상담		116
	보고서		117
	통계		122
	해외잡지동향		124

발행인 이철호
 편집위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경,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주)영림인쇄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50



54



58

Korean Architects

Vol. 436
August 2005

Column

KIRA's Advertisement Strategies and Architectural Expositions Lee Kyu-hwan 14

Cartoon

Yoo Won-jai 17

Current view

Riparian Zone and Architecture Kim Kook-il 18

Works

Lyce' e International Xavier Lee kwan-jick 20

Gwangjin Art Center and Assembly Hall Ahn Kil-won 28

MICHELAN 107 Lee Min-kwan & Cha Jae-wook 36

Process works

Kid's Mom Center So Myung-sik & Kang Heon-soo 44

Design note

Waiting for the Revivification of the Competition-Winning Project Jeon Young-cheol 46

Competition

50

Architecture travel

Shouzhou and Hangzhou - Venice of the East Kang Sung-ik 64

Feature

Sorrow of Our Modern History has been the Pain of Architecture Kim Young-soo 68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Symposium: Urban Permanence Jo Seung-koo 70

Report on the Manag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Firms Choi Dong-kyu 80

Serial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Park Jin-ho 85

Architects' Plaza

Kira News 93

Archi-Net 97

Laws & ordinances 102

Question & answer 116

Report 117

Statistics 122

Overseas Journal 124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협회의 홍보전략과 건축산업전시회

KIRA's Advertisement Strategies and Architectural Expositions

지난 7월 8일에서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향하우징페어 여름전시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 맨 앞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전시공간이 자그마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전시회가 무사히 끝난 지금, 필자는 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느꼈던 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전시회라 하면 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전시회를 떠올리곤 한다. 특히 건축을 문화적인 면에 치우쳐 교육 받아온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인 작품전시회가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산업전시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가 우리생활 속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WTO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우리와는 무관한 기업체들의 홍보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이 산업 및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산업전시회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를 깨닫고 알리는 것에 이번 전시 참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산업전시회의 가장 큰 목적은 판매 및 홍보마케팅에 있다. 그런데 이중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공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의 측면만 고려한다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홍보를 위해서 전시회에 참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협회의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수히 많이 생기는 협의회 성격의 다른 협회들과 전문 자격증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차이점을 전시기획사 및 관련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때로는 우리가 봐도 혼란스러운 많은 협회들 중에서 우리협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향후 건축관련 전시산업에 있어 우리의 자리매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 회원인 건축학도들에게 조금의 자부심이라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협회 전시공간을 지나는



2005경향하우징페어 여름전시회 협회 홍보 부스

어느 건축학도의 간단한 말이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에 대한건축사협회도 나왔네...” 그 짧은 말 한마디와 협회전시물에 관심을 보이던 그 모습을 보며, 왜 진작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감격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10만명이 넘는 관람객(규모면에서 여름전시회는 본 전시회의 5분의 1 수준이라 함.)이 협회 전시관을 지나며 건축사 및 협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물을 볼 수 있었고, 보다 가시적으로는 1,500여부의 홍보물이 배포되었으며 100여건의 건축무료상담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건축모형 및 실시도면 등 다양한 홍보물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작업이 그저 종이 몇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둘째, 산업전시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면대면(Face to Face) 의사소통을 말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상거래와 홍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 협회에서는 대국민 건축무료상담을 통해서 건축 및 건축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이때 상담의 내용은 신축자문에서부터 건축분쟁, 건축사업무 및 구조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국민과 함께 건축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한 상담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왜, 지난번까지는 안계시더니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에 대해 상담건축사의 대답은 명쾌했다. “네! 이제부터 정신바짝 차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필자는 이러한 상담실적과는 별개로 아무런 예고없이 전시회를 찾은 많은 건축인들에게 작은 휴게공간이라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사실 건축산업전시회란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람하기 피곤해서, 또는 관심있는 공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느 순간 산업전시회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이번 협회의 전시참가였으며, 그 곳에서 이루어진 많은 회원 및 건축학도들과의 만남은 앞으로 우리의 결속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셋째, 산업전시회는 이벤트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대내적은 물론 대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다만 이번 본 협회의 전시참가에 있어서는 차분한 홍보를 계획하였기에 의도된 이벤트 행사는 없었으나 참가 자체만으로도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2005경향하우징페어 여름전시회 협회 홍보 부스

하나는 대외적인 성과로써 본 협회의 참가가 그 전시회에 참가한 다른 많은 업체들에게 무형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시회의 권위가 올라가고 덩달아 전시참여업체들의 전시효과가 상승하면서 우리협회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우리와 그들이 같은 동지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으며, 무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대내적으로는 상담건축사들의 봉사정신과 곧은 건축사정신의 확인이라 할 것이다. 초기의 우려가 무색하게 총 30여명의 건축사가 전시 5일간 자발적으로 건축무료상담에 동참해 주었으며, 이 상담을 위한 예비모임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접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아름다운 약속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평가회를 하면서 필자가 느낀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회원 스스로의 참여와 믿음의 확인 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산업전시회란 근본적으로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단순히 전시회망업체 몇몇을 모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논리만으로는 진정한 산업전시회라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있어 비록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회라는 조직과 건축사라는 전문성, 여기에 덧붙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화라는 흐름을 기존의 전시흐름에 잘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산업전시회 진출 가능성은 분명히 밝다. 다만 세계무역기구의 흐름, 국제무역관행의 이해, 행정부처와의 관계 및 산업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시장흐름의 파악과 전시 및 마케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능력없이 단순한 의지만으로 산업전시회의 진출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자칫 또 하나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업무동반자인 산업체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좀 더 신중한 자세와 현명한 접근을 요한다 할 것이다.

기존의 산업전시회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건축산업기반이 좀 더 견고해지면서 더불어 우리의 건축업무범위와 역량이 더 풍부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경향하우징페어 여름전시회에 참여하였다면 과연 비약이 될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곳에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전시회 참가는 내게 매우 고마운 일이었다. ■

하천 수변역(水邊域)과 건축

Riparian Zone and Architecture

인간은 본래 자연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대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일원이다. 예부터 인간의 활동무대는 하천 변에서 시작되었듯이 하천과 인간사회는 경제적, 교통적, 군사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하천과 사회는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독특한 관계를 가져왔다.

하천은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에 의해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유수생태계로 하천의 유량, 유속, 수심, 수질, 수온 등 물이 지닌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하천의 생태환경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은 하천 구성 요소 간에는 다양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되는 복합적인 환경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하천은 도시환경의 생태적 거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하천환경복원을 통한 사회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효과가 뛰어난 공간이다. 그러나 자연 속 하나의 개체로서 인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다양한 자취를 남기므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하천공간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시화 사회로 변화하고 과밀화되어 역동적인 하천 공간이 대폭 축소되고 직강화 및 유로변경, 건천화됨으로서 생물의 생존, 서식처 기반을 황폐화 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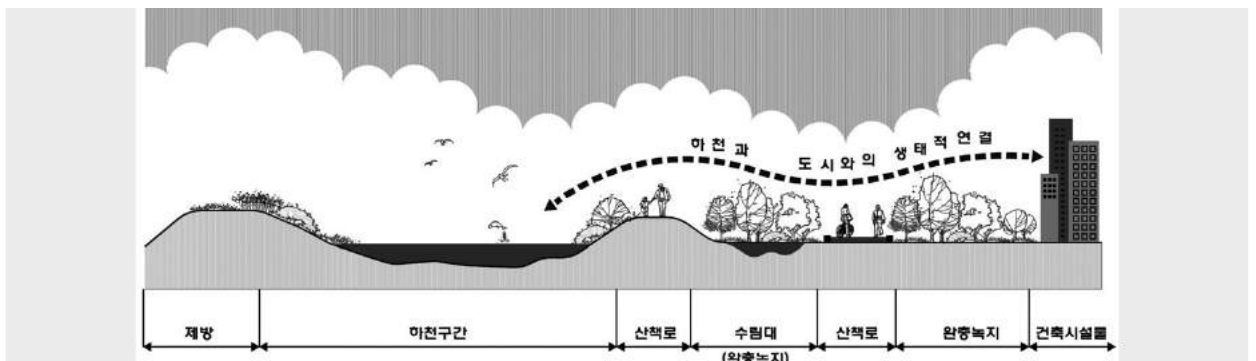
이러한 영향 등으로 해서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강우에 의한 홍수피해, 사막화,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종의 변화, 수자원의 변화로 인한 농업관계 및 생활용수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지구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지구 온난화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도시화된 지역에 수변역의 확보이다. 도시계획시 수변역에 건축과 조화된 습지 및 수림대 같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대기과열과 온실가스를 크게 저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변역은 하천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서 도시화 지역에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고 생태적으로 다양한 공간으로 확충하여 성역화 또는 선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복원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하천 수변역을 살리는 일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하천의 수변역 확보는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수변역 확보를 위해서는, 그 동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하여 인간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거 도시화 및 농경지로 축소되었던 하천공간을 수변역으로 지정하여 확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수변역은 홍수조절 이외에 여과, 자정, 생태계보전, 도시경관기능을 아울러 갖춘 하천과 일체의 공간이므로 수변역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우리는 하천 수변역과 건축이 조화된 도시계획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수방어용 하천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해 하천 공간의 축소, 직강화 및 유로변경 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연하천의 사행과 공

간을 보전·복원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동안 치수사업으로 발생된 폐천부지가 양여되어 대지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것을 생태 습지형 홍수저류지 등 환경과 치수를 접목한 새로운 치수개념의 미래 지향적인 하천과 수변리모델링 등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하천 수변역과 건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양호한 천변식생의 보전과 훼손된 하안의 식생복원을 통해 하천의 수변역과 연계된 친환경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그림 참조)과 개방된 수공간으로의 수변 리모델링을 통해 수변역의 생태적, 토지 이용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하천 수변역과 연계한 Water Front조성, 경관 측면의 Skyline확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개방 공간 확보라 할 수 있다.



하천의 수변역을 고려한 친환경 개방 공간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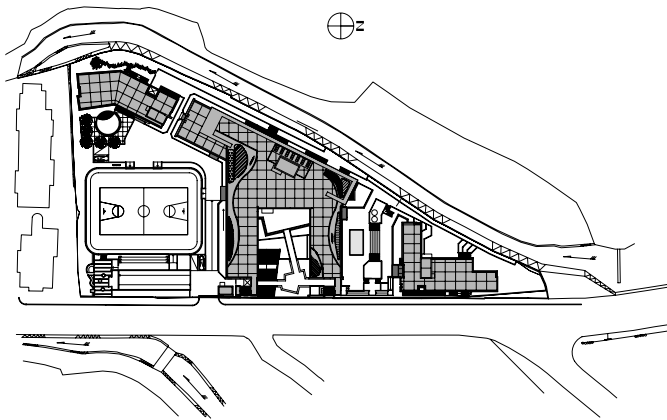
끝으로 하천 수변역의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주변 낙후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며,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산업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토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보전 및 자연복원의 기본골격을 재정립하여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대기과열을 저감할 수 있는 하천 수변역을 고려한 건축의 개발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환경개선과 생물의 종다양성 증대, 자연과 조화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환경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세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하비에르국제학교

Lycée International Xavi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53-1 외 4필지 (151, 152, 153-6, 146-13)
지역지구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7,324.00㎡
건축면적	2,140.94㎡
연 면 적	8,159.86㎡
건 폐 율	29.23%
용 적 륜	51.31%
규 모	지하 2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비개요	GHP, 바닥패널히팅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노출콘크리트, 커튼월
설계담당	이호숙, 안성호, 한철희, 유은미, 허일민, 한웅식, 임형진, 김정래
구조설계	(주)한빛구조
전기설계	(주)우리ENC 컨설턴트
기계설비	(주)선화기술단 사무소
시 공 사	보미건설
설계기간	2003. 01 ~ 2004. 05 (설계경기 기간 포함)
공사기간	2004. 05 ~ 2005. 05



Location	Gugi-dong153-1,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7,324.00㎡
Bldg. area	2,140.94㎡
Gross floor area	8,159.86㎡
Bldg. coverage ratio	29.23%
Gross floor ratio	51.31%
Structure	R,C
Bldg. Scale	two stories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3. 01 ~ 2004. 05
Construction period	2004. 05 ~ 2005. 05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한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혼재되어 있고, 수녀를 중심으로 교사가 구성되어 있는 카톨릭계통의 프랑스 학교이다. 남녀 학생이 기숙생활을 위하여 기숙사가 학교 내에 있고, 소성당, 수녀원, 교사의 숙소까지 배려되어 있다. 운동장과 교사동을 비롯한 학교시설은 국내의 일반적인 학교의 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완화된 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CM을 담당한 회사가 학교측과 협의하여 만든 면적표와 설계지침을 따랐다. 2003년에 현상설계로 당선된 프로젝트이지만 당선 후 도시계획시설로 승인 절차를 받으면서 용적률과 층수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약이 생겼다. 지상 4층의 초기 조건에서 지상 2층 이하로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편복도 교사동이라는 배

치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다시 계획되고 조정되었다. 프로그램도 조금 축소되었다.

대지의 형상과 주변환경은 흥미진진했다. 하나의 예각을 가지고 긴방향 동·서의 양측에 개천과 도로가 면해있고 각각의 개천과 도로를 건너면 가까이 산이 면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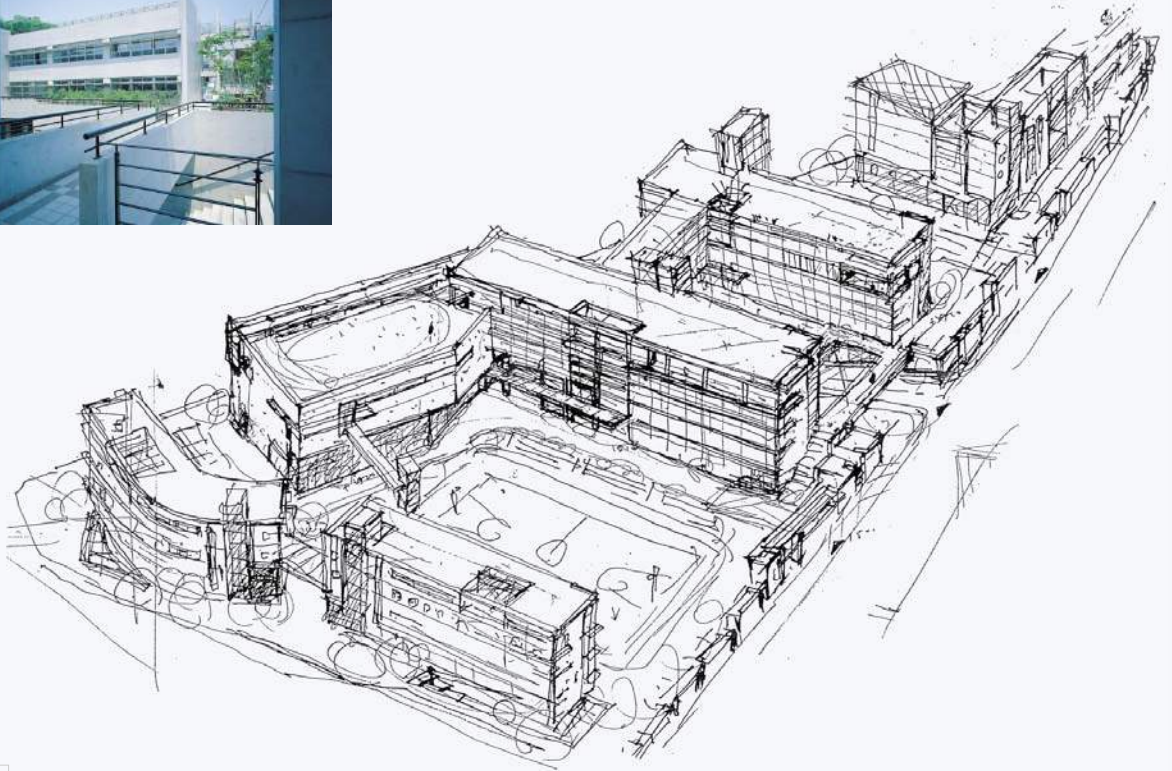
북측은 산세가 수려한 인왕산과 북한산이 계속 이어진다. 주변이 모두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해야 할 방향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동서측 가까이에는 맑은 물의 개천과 숲이 있고, 멀리서는 높고 아름다운 산들. 남측의 연립주택이 약간의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조망을 버리기 아까운 풍경들이었다.

조망과 관계된 문제는 건물의 주된 방향이었다. 대지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서 남북으로 놓으

면 동서의 조망은 살지만 남북의 조망을 포기해야 하고, 동서로 놓으면 근경의 풍경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은 절충해서 개천과 나란하게 학교 본부의 시설을 길가로 배치하고 편복도의 교사는 동서로 놓았다. 동서의 두 라인의 교사동으로 인해서 운동장과 중정 그리고 여학생 기숙사 사이에 세 곳의 마당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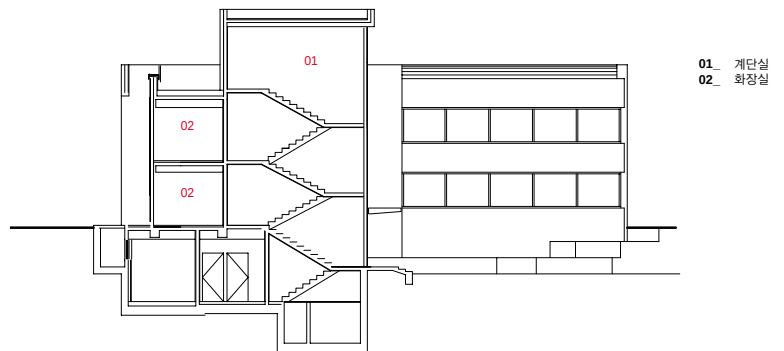
교사동 사이의 가운데 마당은 지하에 계획된 강당의 선권화된 입구로 쓰인다. 강당 진입을 위한 대형의 선권 계단은 전면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부 도로에 면해서 시작된다. 선권의 상부에는 방향이 다른 두개의 브릿지에 의하여 입체감 만들어진다.

각각의 건물들은 비교적 개방적, 순환적인 동선으로 계획되었다. 도로측의 외부 계단을 통하여 건물의 전 레벨과 옥상 정원을 쉽게 접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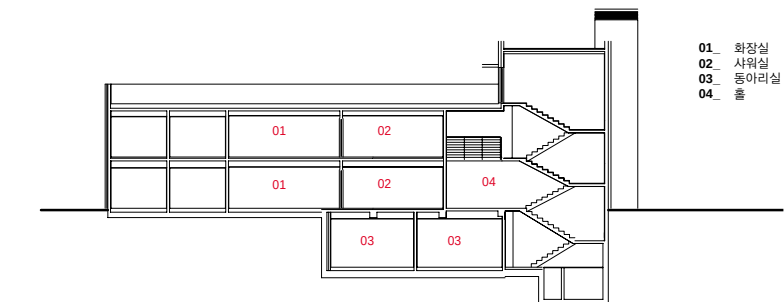
1. 식당 및 강당 전면 Sunken 지하출입로의 자연광 유입, 연결 브릿지 - 벽체간 구성
2. 강당 진입계단 상부 브릿지를 통하여 교사동 및 여학생 기숙사로 연결
3. 교사동 및 여학생 기숙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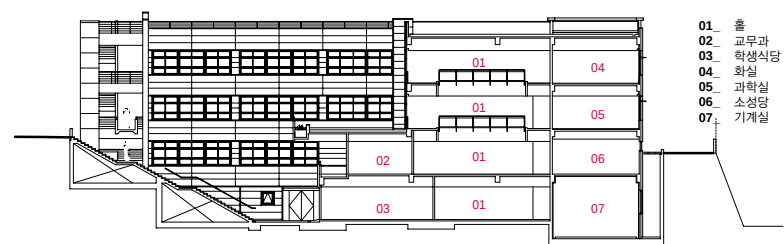
01 계단실
02 화장실

단면도(여학생)



01 화장실
02 샤워실
03 동아리실
04 홀

단면도(남학생)



01 홀
02 교무과
03 학생식당
04 화실
05 과학실
06 소성당
07 기계실

단면도(교사동)

- | | | | | |
|---|---|---|---|---|
| 1 | 2 | 3 | 4 | 5 |
|---|---|---|---|---|
1. Surken 상부 지상 1층 연결 브릿지
 2. 교사동 주출입구-Entrance와 수평성의 혼합구성
 3. 교사동 외부계단
 4. 사도회 및 교사동 정면부 - 차양용 루버를 통한 수평성
 5. 지상 2층 도서관 외부 및 캐노피

수 있고, 이 'ㅈ'자형의 옥상은 비교적 좁은 지상의 야외 공간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마당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관과 기숙사와의 건물간 연결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 과정에서 서로 분리하도록 조정결정되었고, 소성당과 수녀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는 본부 건물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삼각형의 대지의 모양은 도로에 직각인 교사동의 동서 라인과 개천과 나란한 본관동의 남북

라인이 만나는 각도에 반영되었다. 본관동의 중심에 삼각형의 비교적 큰 오프닝이 공용공간 내에 생기고 그곳에 오픈 계단과 브릿지를 만들어 변화있는 공간감이 생겼다. 지붕에 이 오프닝에 대응하는 삼각형의 스카이라이트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동쪽으로 난 대형 커튼월 창호의 채광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포기 했다. 완공 후 학교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아쉬운 점이었다.

계획 초기에 검토되었던 다양한 배치와 형태에 대한 시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되면서 상당히 절제된 모양으로 지금의 건물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전체는 단정한 배치를 통해서 안정된 느낌이 되었다. 내·외부 몇 곳의 입체감을 주는 장소는 공간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의 다양함을 위하여 배려되었다. 동선의 진행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전개는 이용자에게 건축적인 산책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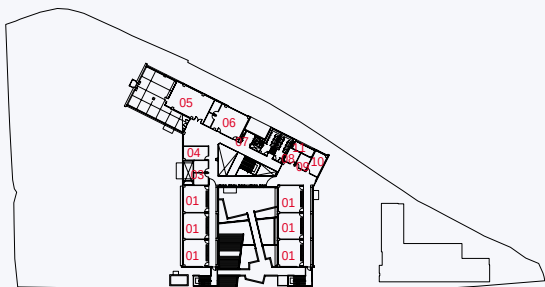
많지 않는 공사비의 조건 속에서 내·외부 재료를 고민했다. 외장 재료는 압출성형시멘트판으로 통일하였다. 주출입구에 일부 마천석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회색 건물에 검은 색 라인을 일부 추가하면서 주출입구의 인식성을 강조했다.

가로에 면한 두개소의 외부계단은 입면상 사선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측에 수직 옹벽을 구조의 해결과 조형적으로 시끄러운 요소를 최소화 했다. 단열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노출콘크리트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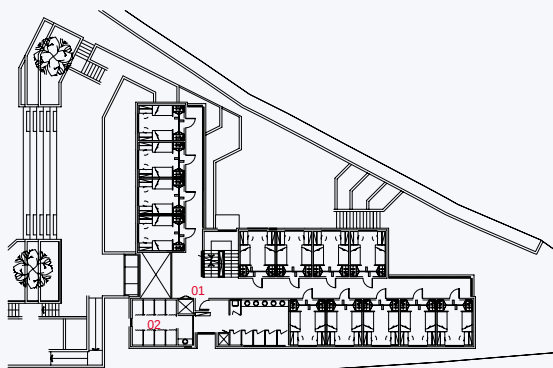
주 이용자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부분 부분 만든다고 생각했다. 학교라는 제한된 율타리 안에서 오랜 시간 지내야 하는 통제된 생활 속에서 조금은 아늑한 숨을 곳과 휴식할 곳을 만들려고 했다. 그렇지만 보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음습한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종류의 외부공간이 그런 요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일 것이다.

이용자인 학생과 선생님, 방문자에게 즐거움의 장소로서, 건축적인 산책의 공간들로 늘 재미를 주는 곳이었던 하는 바람을 갖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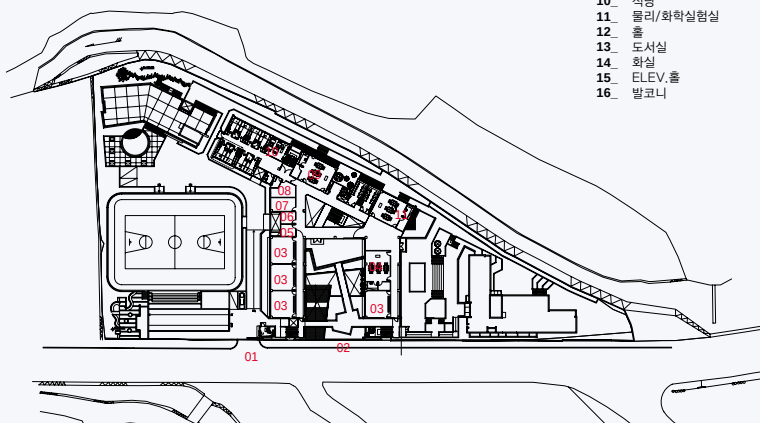
2층 평면도(교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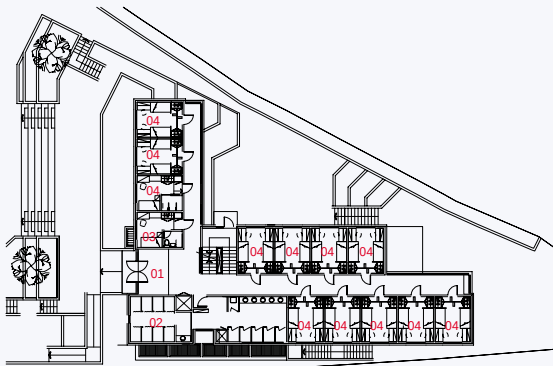
2층 평면도(여학생)

- 01 학교주출입구
- 02 대강당출입구
- 03 학급교실
- 04 생물실험실
- 05 보조교사실
- 06 담임교사실
- 07 소그룹실
- 08 회의실
- 09 과학실
- 10 식당
- 11 물리/화학실험실
- 12 홀
- 13 도서실
- 14 화실
- 15 ELEV.홀
- 16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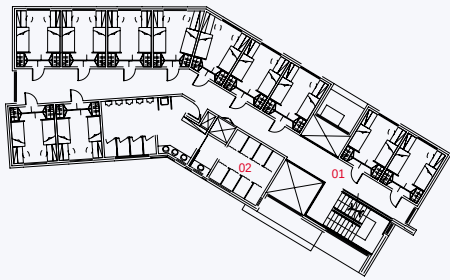
- 01 홀
- 02 사무실
- 03 사강실
- 04 침실



1층 평면도(교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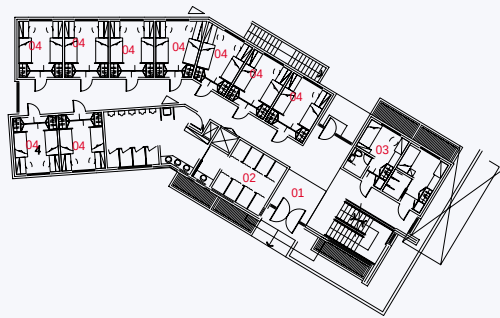


1층 평면도(여학생)



2층 평면도(남학생)

- 01. 출입
- 02. 샤워실
- 03. 사감실
- 04. 창실
- 05. 출입/복도



1층 평면도(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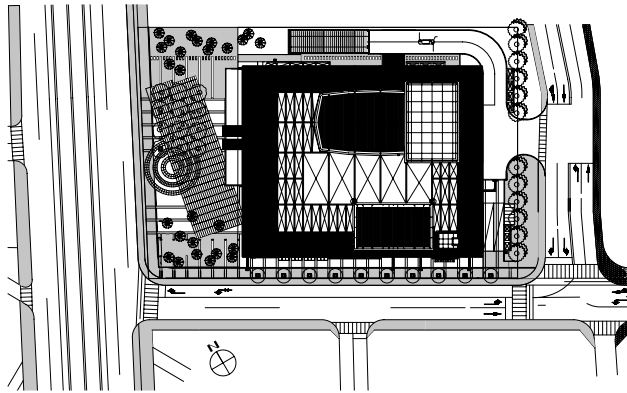
- 1. 교사동 - 여학생 기숙사 증정 및 여학생 기숙사 주출입구
- 2. 교사동 중앙계단 - 삼각형 대지모양에 따라 교사동이 배치되어 생긴 공용공간



광진 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청사

Gwangjin Art Center and Assembly Hal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7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5,931.0㎡
건축면적	2,520.33㎡
연면적	18,860.48㎡
건폐율	42.49%
용적률	151.71%
규모	지하 3층, 지상 6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라임스톤-건식공법, 알루미늄쉬트+루버-건식공법, 알루미늄커튼월
구조설계	(주)다원구조
설비설계	(주)성아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화인 ENC
조경설계	(주)신화컨설팅
토목설계	(주)덕성알파 ENC

Location jayang-dong 227-7, Kw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5,931.0㎡

Bldg. area 2,520.33㎡

Gross floor area 18,860.48㎡

Bldg. coverage ratio 42.49%

Gross floor ratio 151.71%

Structure R.C & Steel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six stories above
ground



- 1

2

1. 청담대교 건너편에서 바라본 광진문화예술회관

2. 수공간 및 문화예술회관 전면부



광진구는 예로부터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의 터전이었고 지금은 자취를 감춘 넓은 나루터(너른 나루, 광진)를 사이에 두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흠뻑 젖어 있던 곳이다. 광진구민회관은 기억에서 사라졌던 너른 나루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행위와 놀이가 있는 곳, 자연과 벗하여 편안히 쉴 수 있으며, 축제와 이벤트가 열려 지역공동체의 장이 되는 마당, 비어 있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한마당으로서 광진구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대지 북쪽으로 건국대학교와 2호선 전철역이 있고, 대지 옆으로 청담대교가 위치한다. 미래에는 대지와 인접하여 고층 주거군이 형성되며, 능

동로를 따라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된다. 광진구민회관은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 및 '건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 축을 조성하였다. 전면광장-공공공지-데크-로비-상설전시장을 연계하여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하면서 공간의 확장과 가변성을 극대화 하였다. 전면 광장에는 수공간과 수변 데크의 노천 카페, 놀이마당 및 중정에 조성된 선큰 가든에서 벽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광진구민회관은 광진구의 정체성 및 지역성을 광나루(수공간 데크)에 정박한 두 척의 황포 돛배를 은유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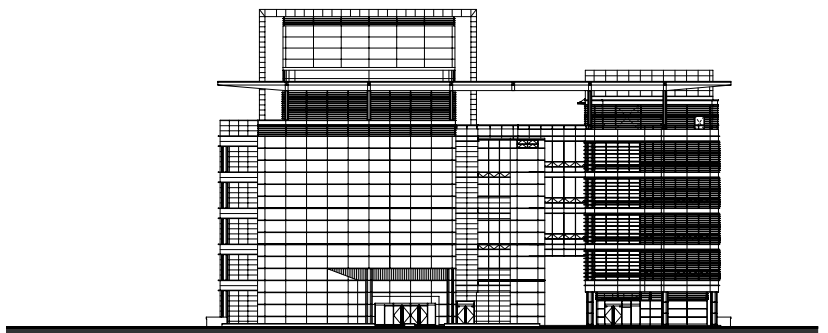
다중이용시설(대강당, 소강당, 전시장)과 교육업무시설(구민회관, 구의회)로 기능을 분리하면서 두 개의 매스가 만들고, 진입 동선 역시도 분리하였다. 그리고 분리된 두 개의 매스를 한국 고유의 전통 처마 형태를 상징화한 하이테크한 자붕으로 이어, 하나의 건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리된 매스 사이로는 보행 물 및 선큰 가든을 통하여 대지의 깊이와 공간의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광진구민회관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첫

- 
1. 전면광장에서 바라본 전경
 2. 수공간 및 공연장등 전경
 3. 선큰가든



째, 지역 주민을 위한 구민회관으로 지하에는 수영장 및 헬스 클럽, 1층에는 공원과 인접한 편의 시설, 지상층에는 청소년 및 주부들을 위한 멀티 미디어실 및 문화교실 등이 구성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상설전시실 등이 계획되어 광진구의 예술문화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상 5~6층에는 구의회 사무국 및 본회의장이 계획된 광진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기능들은 매스 및 명확한 동선의 분리로 유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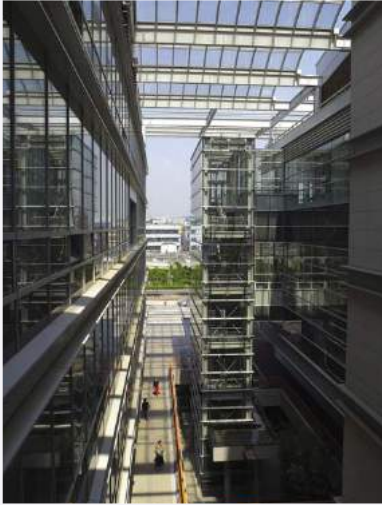
광진구민회관의 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이고 도시 속 휴게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외부 재료는 알루미늄 커튼월과 알루미늄 루버를 사용하여 경쾌하고 활기에 찬 구민회관의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무(적삼목 루버) 소재를 이용하여 따뜻한 느낌과 친숙하고 접근이 쉽도록 하였으며, 차가워질 수 있는 느낌을 보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재료에 의한 통일감을 부여하고, 기능에 따른 재료의 변화를 두어 독자성 또한 표현하였다.(공연장, 구민회관 : 유리, 알루미늄 루버/ 구의회 : 적삼목루버) 마지막으로 광진구민회관은 광진구 지역민의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서 나무아래 조각과 사람들의 담소가 있고, 수변 데크에서의 작은 음악회와 놀이마당에서의 한 무리의 춤꾼과 구경꾼이 있는 도심속 휴게 공간으로 공연, 문화, 체육, 전시가 함께 일어나는 문화의 장으로 이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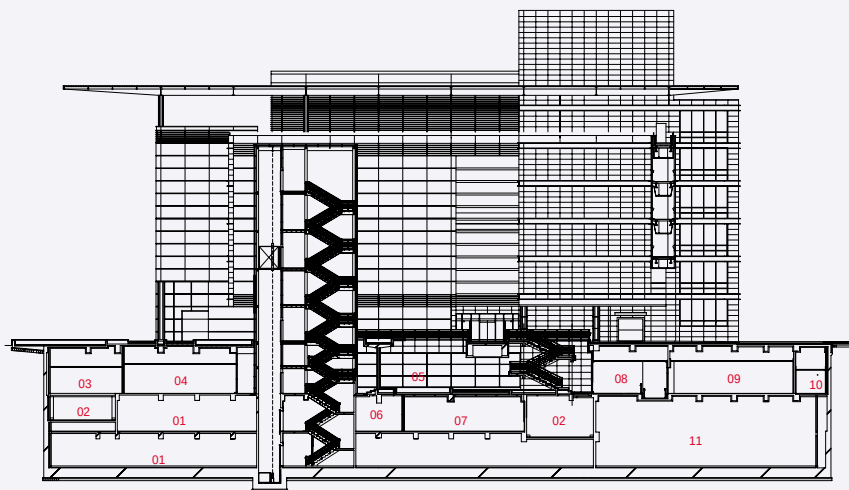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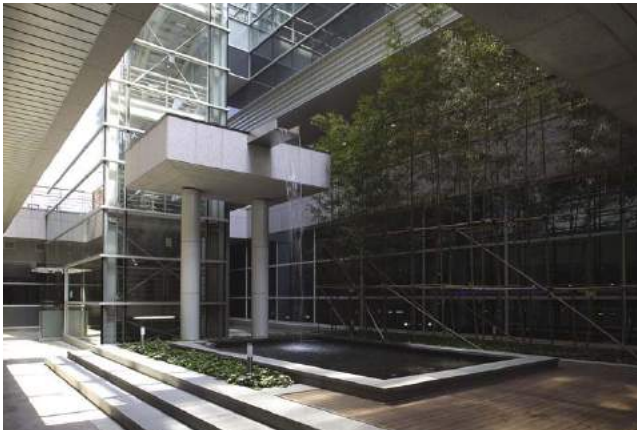
- | | |
|---|---|
| 1 | 4 |
| 2 | 5 |
| 3 | |
1. 문화예술회관 측면
 2. 문화예술회관 후면부
 3. 구민회관에서 바라본 전면광장
 4. 중앙 보행로
 5. 중앙보행로 및 선로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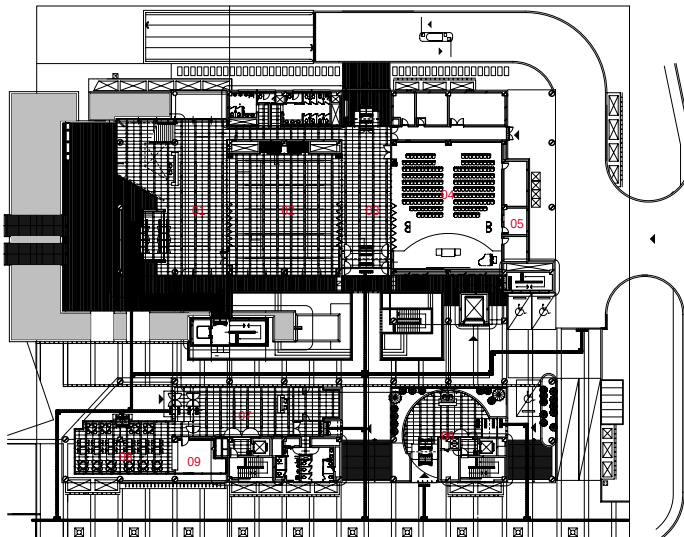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RAMP
- 03 주방
- 04 식당
- 05 선관가든
- 06 분수기계실
- 07 수영장기계실
- 08 홀
- 09 다용도체육실
- 10 사위실(남)
- 11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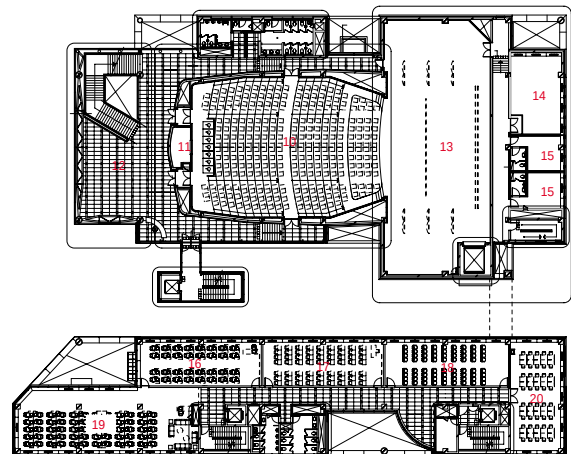
주단면도



- | | | |
|-------------|-------------|-----------|
| 01 기획전시로비 | 12 대공연장홀 | 23 무대상부 |
| 02 상설전시실 | 13 대공연장(무대) | 24 옥외놀이공간 |
| 03 소강당홀 | 14 연습실 | 25 어린이휴게실 |
| 04 소강당 | 15 분장실 | 26 사무실 |
| 05 녹음실 | 16 컴퓨터실 | 27 취침실 |
| 06 의원로비 | 17 시청각실 | 28 가변교실 |
| 07 구민회관로비 | 18 음악감상실 | 29 강사실 |
| 08 패스트푸드점 | 19 정보검색실 | 30 음향조정실 |
| 09 주방 | 20 취미교실 | 31 당직실 |
| 10 대공연장(객석) | 21 대공연장홀 상부 | 32 관리사무실 |
| 11 조정실 | 22 객석상부 | 33 세미나실 |
| | | 34 소회의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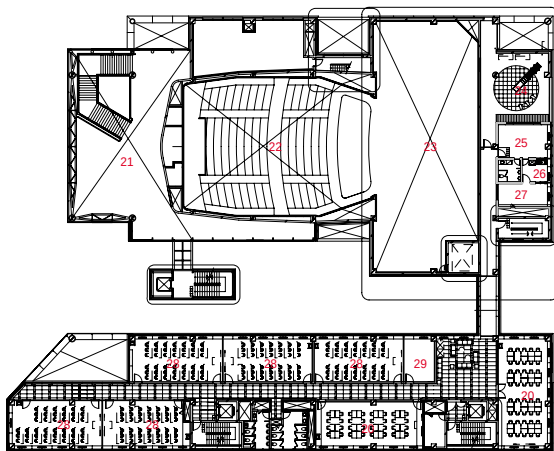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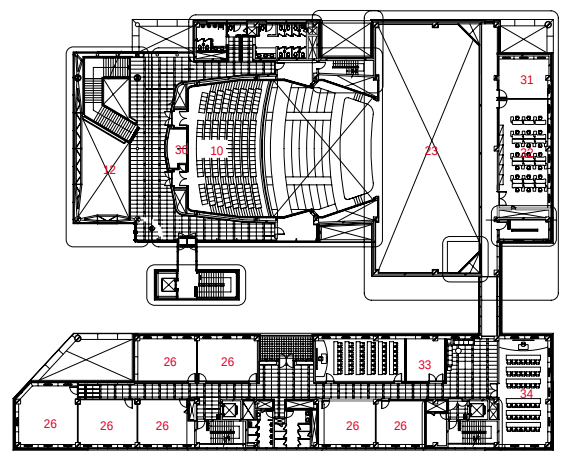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 1 | 2 | 5 |
| 3 | 4 | |
- 1. 선로가든
 - 2. 상설 전시실
 - 3. 실내 수영장
 - 4. 소공연장
 - 5. 공연장 로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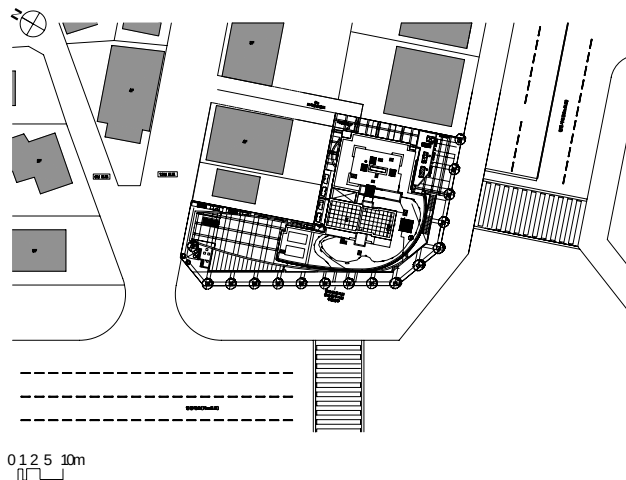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미켈란 107

MICHELAN 107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7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노선), 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1,382.10㎡
건축면적	810.05㎡
연면적	14,248.71㎡
건폐율	58.61%
용적률	699.42%
규모	지하 4층, 지상 2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RC조)
내부마감	석재타일
외부마감	유리 + AL패널, 유리 + 케라트윈
구조설계	건양구조
설비설계	한국설비
전기설계	한양전설
설계담당	김영난, 홍석화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설계기간	2001. 06. 01 ~ 2002. 10. 30
공사기간	2001. 10. 16 ~ 2003. 12. 31

Location Samsung-dong 107,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1,382.10㎡

Bldg. area 810.05㎡

Gross floor area 14,248.71㎡

Bldg. coverage ratio 58.61%

Gross floor ratio 699.42%

Structure R,C

Bldg. Scale four stories below ground, twentytwo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1. 06. 01 ~ 2002. 10. 30

Construction period 2001. 10. 16 ~ 2003. 12. 31





2000년 11월 프로젝트 설계 의뢰가 들어왔다. 봉은사 사거리의 북동쪽 코너에 위치할 400여평의 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문화공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지금은 현대 I-Park와 현대산업개발 사옥이 들어서 비교적 정돈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곳으로 변모되고 있으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역 사거리와는 확연히 다른 낡고, 비교적 한적한 곳이었다. 한 마디로 고급주거로의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주변 여건은 열악한 상태였고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갖기엔 대지가 너무 작아 보였다.

위치의 발전 가능성과 봉은사의 녹지, 고층부에서의 한강조망권 등이라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도시와 사람'은 사업의 추진

을 결정 했고, 그후 2001년 6월 분양까지 설계는 숨막히게 진행되었다. 초기 계획안은 일반 주거지역 쪽의 건축 부분은 일조권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용적률의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선 상업지역으로 8m×50m의 장방향의 단순한 Box로 디자인 되었다. 그런데 이 안은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노선상업지역의 일조권 적용에 대한 건교부 유권 해석이 일주일 전에 변경되었고, 심의조건은 분명했다. 대지코너에 탑상형으로 배치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설계팀의 최초 법규해석과 동일한 해석이고 타당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우리 설계팀은 사투를 시작했다.

사업일정은 정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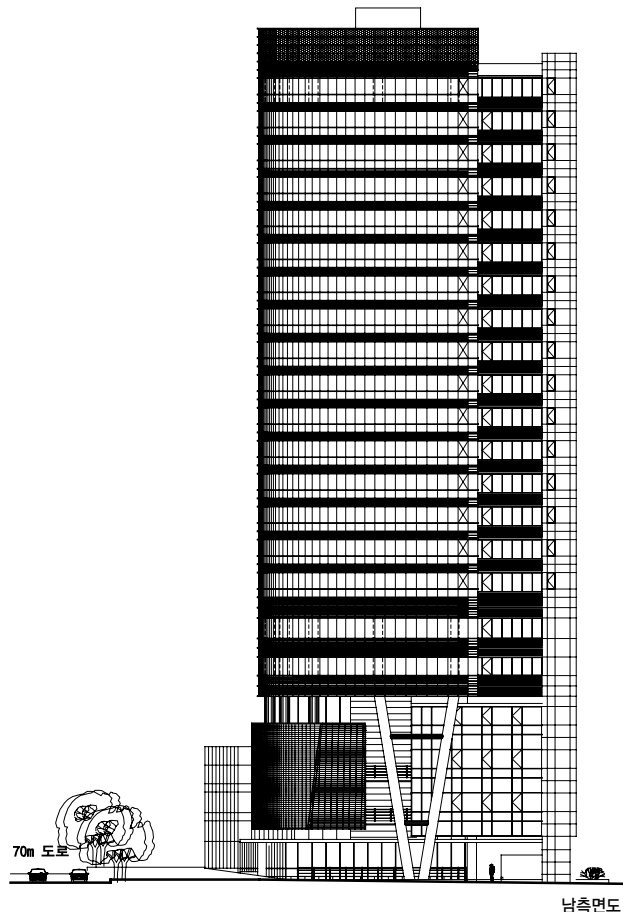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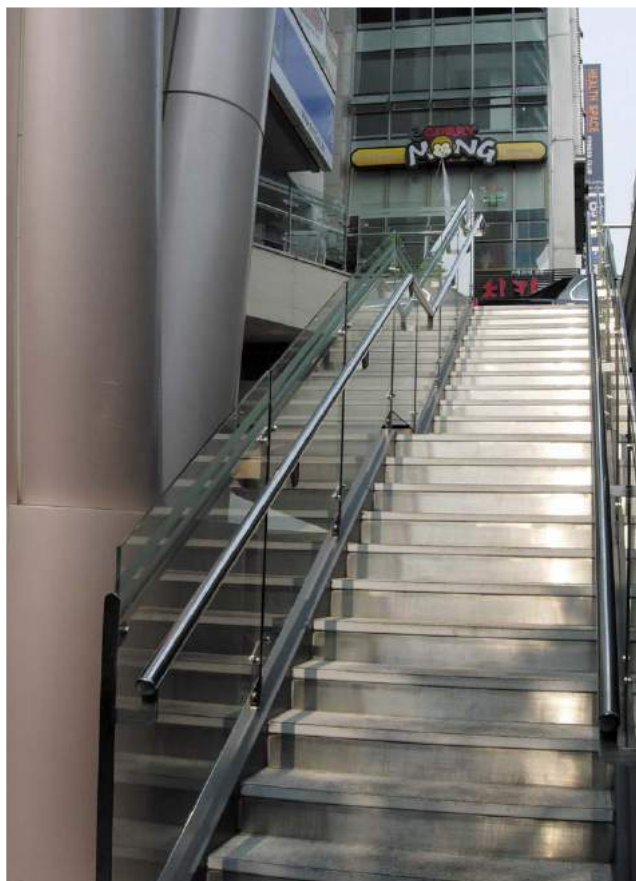
에(단 2주 동안) 새로운 안을 만들고 심의도서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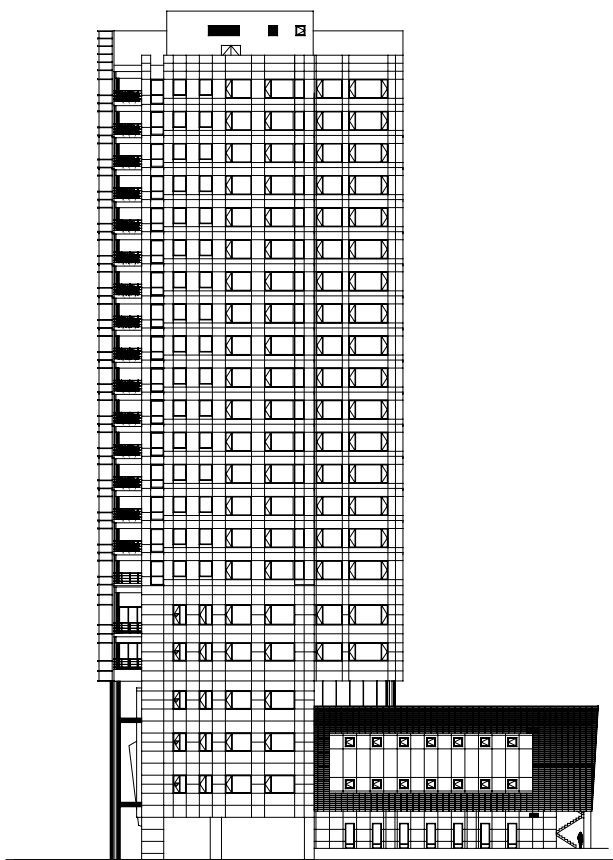
계획의 방향은 의외로 빨리 결정되었다. 북쪽 구릉이 경사를 끝내는 땅의 지세를 따라 긴 유선형 볼륨(Volume)과 코너성을 강조한 실린더형의 타워를 도입했고, 그 두 볼륨(Volume) 사이의 비워진 곳에 전시시설과 옥상정원을 배치하여 대지와 프로그램을 잘 조직화할 수 있는 해결안으로 판단되었다.

직선으로 전개된 실린더형 볼륨(Volume)에는 4개의 주호가 구성되었고, 형태적 제약 때문에 4개의 주호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갖는 유니트(unit)가 되어나갔다.

위치적 장점인 봉은사와 한강 조망권, 더불어

1. 선관계단
2. 북서측면
3. 디테일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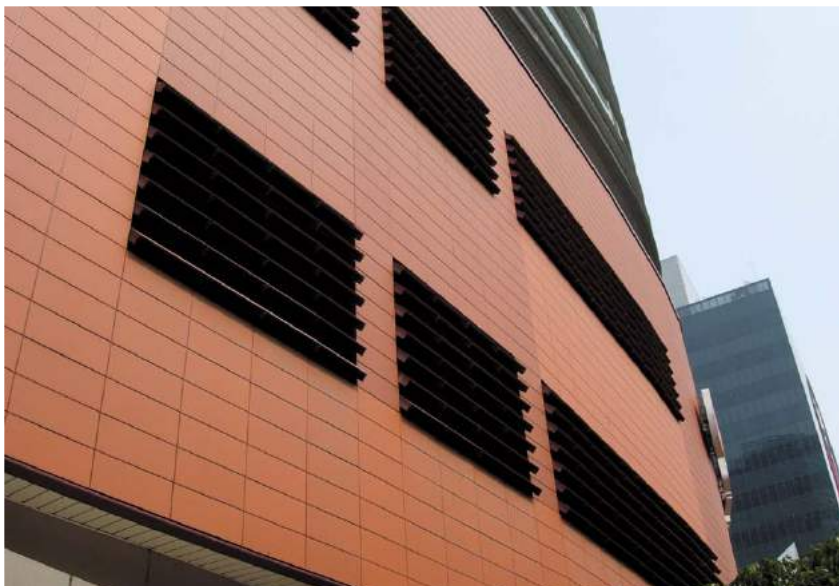


독특하게 구성된 이 4가지타입 유니트(unit)가 주는 각기 다른 매력과 건축형태는 차후 경이적인 청약 경쟁률(약 300:1)로 이어졌다.

건축적 측면에서 사업적 측면까지 성공적으로 판단되었다.

회상하건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당시의 건축적 해석에 후회는 없다. 프로그램에 대지의 맥락과 한계를 적절하게 해석했고 형태의 도입도 적절했다. 지금 보면 형태적 작위로 옛보이지만 의도하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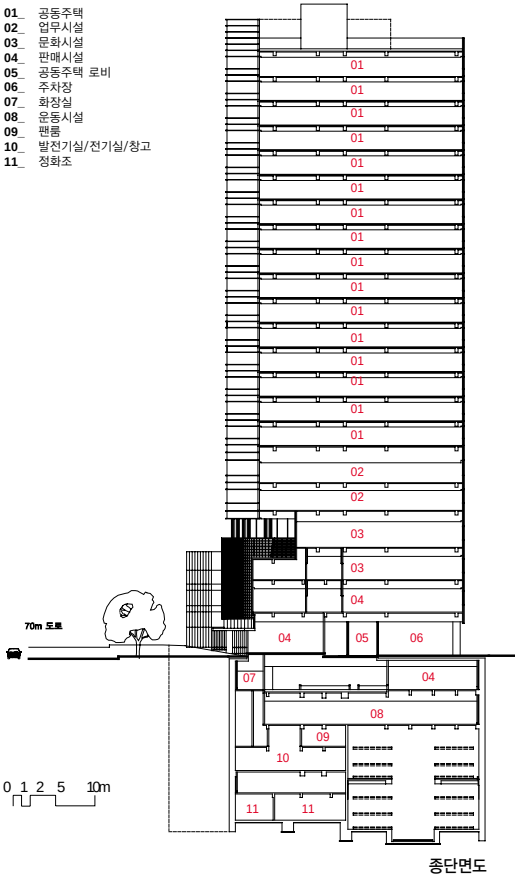
주어진 상황을 직시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힘들었지만 즐거운 체험이었다. 재료의 선택도 2가지 형태와 기능에 의해 비교적 쉽게 결정되었다. 타워부의 전면측은 아셈구역센터 및 그 주변의 오피스타워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면부는 커튼월과 대조되는 Solid wall을 구성하여 유리화 대조되면서도 어울릴 수 있는 케라트윈(건식 점토패널)으로 하였다. 저층부의 유선형 볼륨(Volume)은 문화전시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루버형 케라트윈으로 디자인 되었다. 그리고 2000년 10월 건설은 시작되었고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많은 건축사들이 그렇듯이 쓰라린 경험과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공사비분쟁, 저층부 문화 전시시설의 위치불확정성, 부분적인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로 이면부의 재료는 페인트로 매스의 절개된 부분이 의미 없이 매워지는 경험, 옥상정원의 디자인은 지워지고... 그리고 또 없어지고 덧 대어졌다. 이런일은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건축은 사라지고 사업만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현실이다. 긍정적인들 부정하들 이견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분명한건 내가, 우리 건축사들이 설계되어지고 지어지는 매순간 깨어있고 주시하고 등돌리지 않을 때만이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배웠던 커다란 교훈이 아닐까 싶다. 圖



- | | |
|---|-------------|
| 1 | 선로 야경 |
| 2 | 문화시설 입구 |
| 3 | 저층부 입면 케라트윈 |
| 4 | 남측야경 |
| 5 | 지평층 옥상정원 |
| 6 | 4층 옥상정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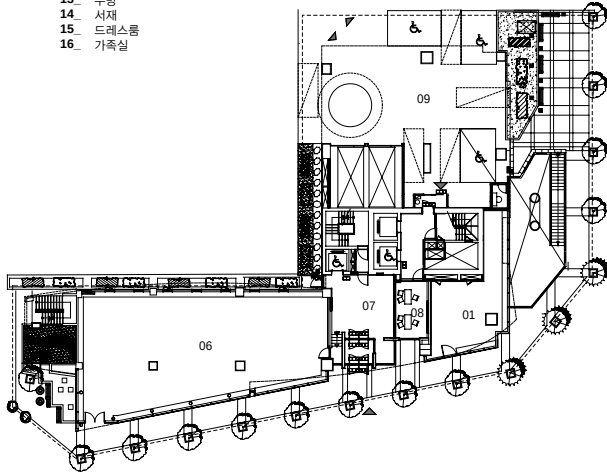


- 01_ 공동주택
- 02_ 업무시설
- 03_ 문화시설
- 04_ 판매시설
- 05_ 공동주택 로비
- 06_ 주차장
- 07_ 화장실
- 08_ 운동시설
- 09_ 편충
- 10_ 발전기실/전기실/창고
- 11_ 정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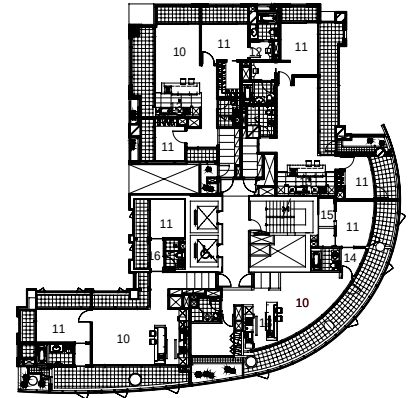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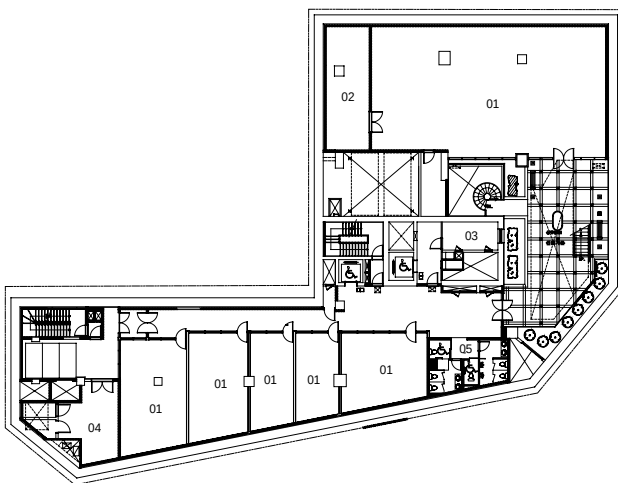
- 01_ 판매시설
- 02_ 공조실
- 03_ 창고
- 04_ 방재시설
- 05_ 화장실
- 06_ 업무시설
- 07_ 홀
- 08_ 게스트홀
- 09_ 주차장
- 10_ 거실
- 11_ 침실
- 12_ 파우더룸
- 13_ 주방
- 14_ 서재
- 15_ 드레스룸
- 16_ 가욕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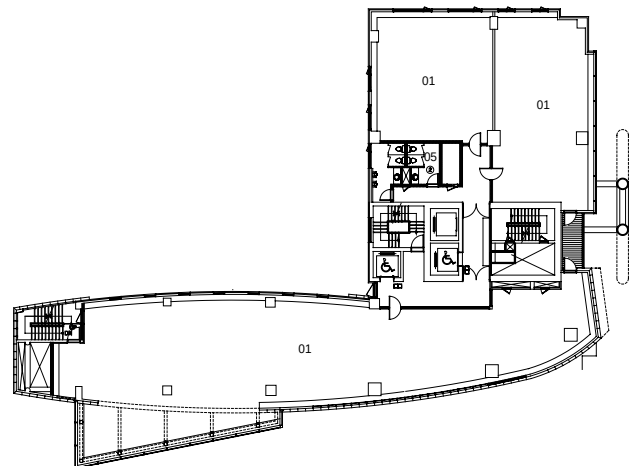


7~22층 평면도



0 1 2 5 10m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 | |
|---|---|
| 1 | 2 |
| 3 | |
- 1_ 선문에서 지하 1층으로
 - 2_ 선문가든
 - 3_ 비주거시설 로비

키즈맘센터

Kid's Mom Center



2년전, 젊은 건축주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은 신선하였다. 그 분들이 들고온 site는 안양시 비산동 50m광로변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50m광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지나가는 도로 (passing root)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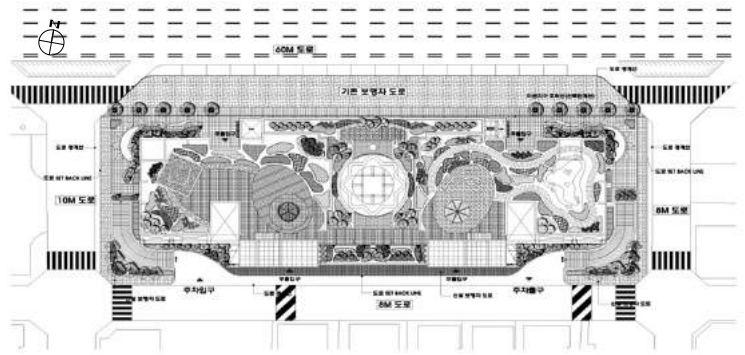
땅 소유주가 제시하는 토지대금 등을 고

려해 볼 때 사업성 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부지였다. 그런데 젊은 디벨로퍼들의 프로젝트 컨셉은 내 건축적 구미를 당기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부지 인근에는 대단위 평촌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둘러싸고 있어 건축주가 제시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전문 테마 몰로 기획하려는 컨셉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며, 인문환경적 위치적요소를 분석하여 본다면 그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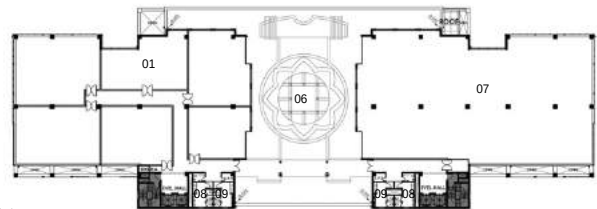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컨셉에 걸맞는 건축물이 되도록하기 위해 여러가지 면에서 고민하였는데, 건물 배치상으로 차량진입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주차출입구를 후면으로 유도하였고, 전면에 길게 보행자 도로변에 접한 주차입구 부분은 좌우로 나누어 전면 공개공지를 배치하여 고객들의 편안한 전면 진입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저층부 옥상에 커다란 이벤트광

장을 조성하여 자연스런 Mass분절과 함께 공간과 시각적 흐름을 연출하여 시선을 끌도록 유도하였으며, 여성고객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포먼스 공간을 적극배치하여 능동적인 휴게공간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전면 파사드의 디자인 개념은 어린이 지능 개발을 위한 퍼즐박스를 Mass컨셉으로 설정하여 유기적으로 4개의 Mass를 배치하여 50m광로변에 신선한 파사드를 연출하도록 고민하였다. 내부에는 지하층과 1층을 내부중정으로 Open하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출하였고, 상부 Mass의 연결은 오버브릿지로 연결하여 고객동선에 활력을 주도록 고려하였다. 모쪼록 이 프로젝트가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테마몰로써 사랑받고 지역에 활력을 주면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자리매김 되어지길 바란다.

(글/소명식)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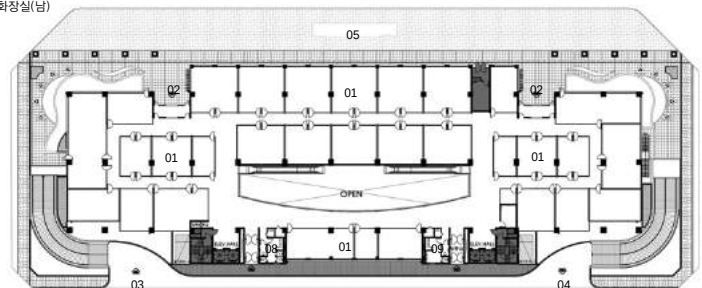


배치도



- 01. 근린생활시설
- 02. 주출입구
- 03. 주차입구
- 04. 주차출구
- 05. 기존 보행자 도로
- 06. 이벤트광장
- 07. 교육시설
- 08. 화장실(여)
- 09. 화장실(남)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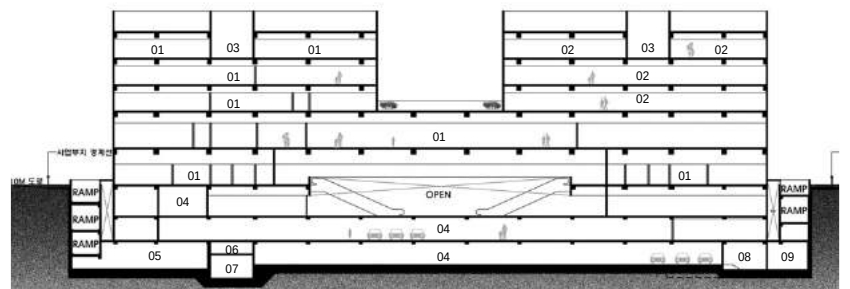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59번지외 3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4,599.90㎡
건축면적	2,713.31㎡
연면적	10,747.86㎡
건폐율	58.99%
용적률	233.65%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화강석 물갈기
외부마감	커튼월 + 베이스패널 + 적삼목
설계담당	용환민, 천진우

- 01. 근린생활시설
- 02. 교육시설
- 03. 중정
- 04. 주차장
- 05. 물탱크실
- 06. 관리층
- 07. 정화조
- 08. 발전기실
- 09. 전기실



횡단면도

당선된 현상설계경기작품의 부활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Revivification of the Competition-Winning Project

천안 복자 여자 중고등학교의 재건축 설계를 위한 현상설계경기에 참여해 달라는 의뢰공문을 받은 2004년 11월초는 무척이나 지쳐있는 상태였다.

2003년에 당선된 작품들의 실시설계도면을 마무리하면서 온갖 진이 다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4년 초에 당선된 성당 한 곳의 대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실시설계작업이 무한정 연기되어 버렸고, 그 이후의 현상설계에 응모한 모 대학교의 도서관과 다른 두 곳에 제출한 작품들이 납득 못할(?) 낙선의 결과로 나왔기에 안그래도 지친 몸과 마음은 더 힘든 상태에 있었다.

기존 업무의 힘든 마무리와 확정된 작업의 무기한 연기, 연속된 낙선의 절망감은 더 심해지는 건축불황의 늪에서 2005년의 작업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사 이전의 직업인으로서 힘들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는 하였지만 설계자의 본능과 직업인으로서의 억척스러움은 용하게도 다시 현상설계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면에는 천안의 복자여자 중고등학교가 한국순교복자 수녀원에서 운영하며 관리하는 학교인지라 현상설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는 없으리라는 확신도 한 몫을 하였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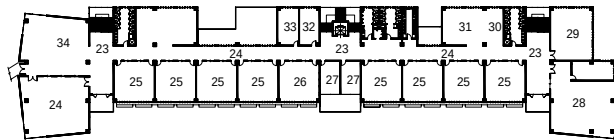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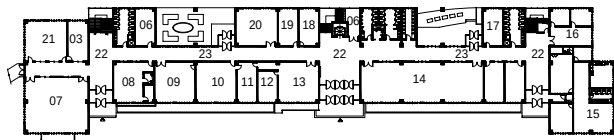
고등학교 조감도

- | | | |
|-------------|------------|-----------|
| 01_ 소강당 | 13_ 행정실 | 24_ 컴퓨터실 |
| 02_ 무대 | 14_ 교무실 | 25_ 보통교실 |
| 03_ 준비실 | 15_ 생활관 | 26_ 학년교무실 |
| 04_ 로비 | 16_ 발간실 | 27_ 교과연구실 |
| 05_ 기계실/전기실 | 17_ 학부모상담실 | 28_ 과학실 |
| 06_ 창고 | 18_ 숙직실 | 29_ 대강의실 |
| 07_ 가사실 | 19_ 인쇄실 | 30_ 락커룸 |
| 08_ 보건실 | 20_ 자료실 | 31_ 학생휴게실 |
| 09_ 회의실 | 21_ 재봉실 | 32_ 상담실 |
| 10_ 교장실 | 22_ 홀 | 33_ 교사휴게실 |
| 11_ 컴퓨터실 | 23_ 복도 | 34_ 정보검색실 |
| 12_ 문서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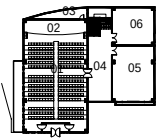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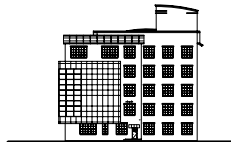
01 3 6 10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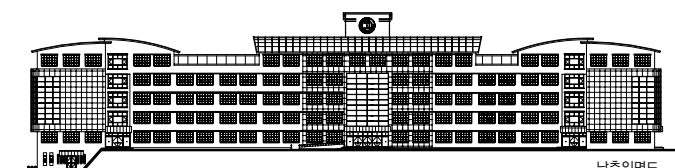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01 3 6 10m



남측입면도

11월 8일에 있었던 현장설명에서는 기존의 도서관동을 제외한 전체 교사의 재건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개교 50주년을 준비하며 계획한 학교의 재건축 연면적은 약 22,000㎡로써 고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8학급을 수용하는 교사와 급식시설, 지하 주차시설이 요구되었고 공사 도중에도 수업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계획안을 필요로 하였다. 계획안을 위한 작업기간은 한달이었고 12월중에 당선작을 발표하며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와 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현장설명을 마치고 직원들과 학교 주변을 촬영하며 반세기 가까운 나이를 가진 운동장 주변의 나무들을 바라보니 충남지역의 명문학교로서 인정받은 학교의 전통을 보는듯하여 펜스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여러차례의 학교 방문을 통해 파악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校舍)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학교는 남향이지만 중학교는 서향이어서 햇빛과 더위로 인한 수업에 지장이 많다. 둘째, 중학교 교사(校舍)의 구성내용과 학교까지의 통로 등을 볼 때 너무 고등학교의 부속학교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어서 중학교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했다. 셋째, 급식시설이 중학교와 붙어 있어서 음식냄새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넷째, 보행자와 자동차가 폭 3m정도의 좁은 도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등하교시간이 너무 위험하고 복잡하다. 다섯째,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장이 운동장의 넓은 부분을 침범하였다. 여섯째, 기동력 재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시설이 전혀 없다. 일곱째, 여학교로서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외부공간 구성이 전혀 없다. 여덟째, 7차교육과정의 수행하기 위한 교실, 휴게이스, 휴게공간 등의 추가시설들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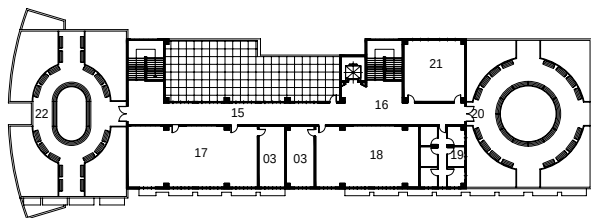
이러한 현재학교를 보완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건물들은 급식시설이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기존 도서관 및 체육관동으로 나뉘었으며 각 건물간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살리는 계획안을 실현하였다.

외부공간은 각 공간마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도서관 앞에는 야외독서와 백일장 등을 위한 '사색의 터'를, 교문 입구에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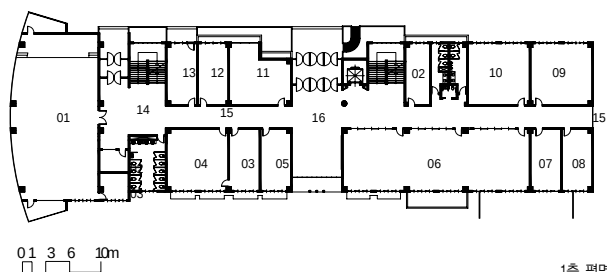


중학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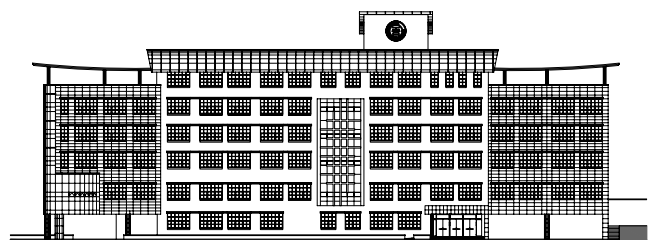
- | | |
|--------------|----------------|
| 01. 소강당 | 12. 학생회의실 |
| 02. 창고 | 13. 체육교구실 |
| 03. 준비실 | 14. 로비 |
| 04. 반성실 | 15. 복도 |
| 05. 상담실 | 16. 홀 |
| 06. 교무실 | 17. 미술실 |
| 07. 교사휴게실(남) | 18. 음악실 |
| 08. 교사휴게실(여) | 19. 개인연습실 |
| 09. 정보실 | 20. 옥상휴게공간 |
| 10. 방송실 | 21. 예능이론교실 |
| 11. 자료실 | 22. 미술 야외 학습공간 |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면도

학부모 등의 약속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터'를, 운동장은 전교생의 행사용인 대운동장과 중학생의 소운동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앞에는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터'를, 1층의 소성당 마당은 마리아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14처를 설치하여 '신앙의 터'를 구성하였고, 중학교와 대운동장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스텐드형 야외 학습장'을 구성하였다.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차량으로 인한 보행불편이나 차량의 운동장 진입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였다.

학교건물의 내부 구성도 현재의 학교 운영형태가 6차교육과정에 가까웠기에 6차교육과정과 7차교육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동선을 해결하였다.

건물의 외관은 기존건물인 도서관동이 보존되는 조건이었으므로 도서관동의 지붕형태와 외장재료를 사용된 벽돌+화강석의 패턴을 응용하여서 기존건물과의 조화를 살렸다.

드디어 12월 8일 작품을 제출하면서 청파동의 한국순교복자 수녀원에서 담당 수녀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다. 관리국장 수녀님의 "이런 학교라면 정말 여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라는 호평을 듣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2005년 1월 24일 예에서야 당선 소식을 학교 행정실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통보 받을 수 있었다.

1월 27일에는 당선작에 대한 학교측의 평가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교장선생님, 행정실과의 1차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를 6월초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급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구조계산은 미리 의뢰를 하고 토목, 전기, 소방, 설비 등의 협력업체와의 일정계획을 협의했고, 1월 31일에는 학교와의 1차 협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체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한 내용을 토로하며 하루종일 가진 회의였지만 중학교 선생님들과의 합의는 거의 원안대로 무난히 이루어졌고, 2월 4일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마라톤 회의가 있었으나 새로운 학교 계획안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행복한 회의였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과 함께 가진 면담에서 학교측의 우려를 전달받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으니...

2005년부터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자금지원도 모두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소식과 시행상의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충남교육청에서는 2005년에는 공립학교만을 지원하며 사립학교는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행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곳에서 지원금 대신에 건물로 인수인계를 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설계와 시공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현상설계 당선작품도 투자자와 협의를 해야고 그 협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계획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실시설계 작업을 내년까지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모든 교육시설들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사업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해결방법이 쉽지 않음이 걱정스럽다.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사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학교측에서 작성하는 지원요청 계획서에 설계부분은 제외하면 된다고 하지만 선정될 민간투자자와의 협의와 학교측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생각하면 기나긴 여정의 한 모습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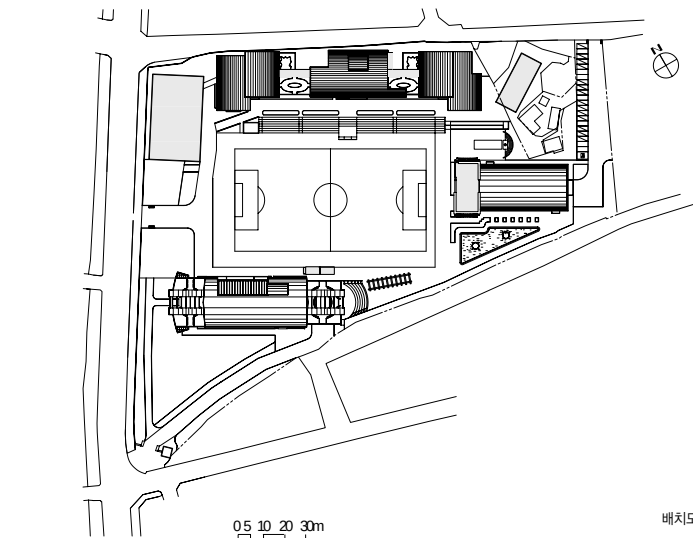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기본설계와 협의과정까지 끝낸 완성된 설계계획안을 두고 새롭게 설계를 시작하겠다는 억지사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2006년이 되어서야

모든 내용이 확정되는 것 만큼은 변함없는 현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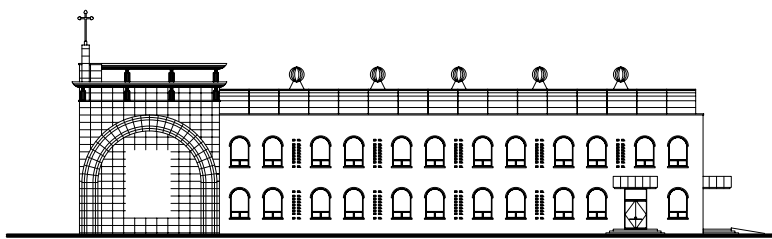
학교측에서는 나의 작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답답하고 지루한 기다림이 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안타까움이 드는 이유는 내가 디자인한 건물이 이 땅에 서게 되는지의 여부보다도 하루속히 작업을 시작해야만 극도의 건축불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될텐데라는 현실생활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든다는 것이다.

현상설계 당선작의 실시설계 지연이라는 변수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건축사로서의 작은 자존심마저 갉아 먹는 것 같아서 그 기다림의 지루함과 고통은 앞으로도 더 크게만 느껴질 것 같다.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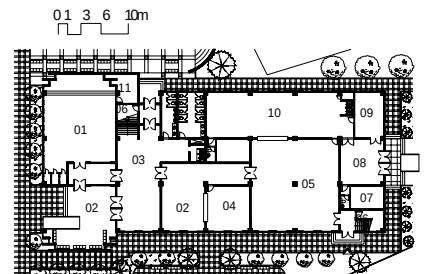


남측입면도(복지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천안시 성황동 9-1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25,647㎡
건축면적	5,749.57㎡
연 면 적	25,389.74㎡
건 폐 율	22.42%
용 적 륜	85.40%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 | |
|-----------|----------|
| 01. 강당 | 07. 영양사실 |
| 02. 휴게실 | 08. 전처리실 |
| 03. 홀 | 09. 부식창고 |
| 04. 매점 | 10. 주방 |
| 05. 교직원식당 | 11. 제의실 |
| 06. 창고 | |



1층 평면도(복지관)

설계경기 | Competition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WP Pyeongtaek Branch

한국서부발전(주)에서는 평택발전본부의 부족한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증축하고, 직원 근무환경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현상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주)건테크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주)천산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당선작 / (주)건테크 건축사사무소(박하전)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1
지역지구	도시지역, 공장용지
용도	공공용시설(업무시설)
대지면적	422,262㎡
건축면적	1,937,433㎡ 증축부분 : 464,50㎡ 리모델링부분 : 1,472,933㎡
연면적	6,068,61㎡ 증축부분 : 1,312,21㎡ 리모델링부분 : 4,756,40㎡
규모	증축부분 : 지상 4층 리모델링부분 :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팀	손승용, 안민, 이수진, 김민우, 장수진, 이상일

계획의 주안점

- 상징성
 - 기존 사옥과의 조화 및 현대적인 입면 디자인 계획
 - 투명한 유리소재와 AL 복합패널의 사용으로 High-tech한 이미지 구현
- 기능성
 - 소방차량의 명확한 동선분리
 - 각층별 기존 사옥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 경제 / 기술성
 - 리모델링 공사와 기존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타일벽체에 신소재를 덧붙이는 Cladding 방식을 채택

배치계획

- 기존사옥과 증축사옥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임
- 증축사옥의 효율적인 서비스동선



- 소방차고를 별도로 Set-back 분리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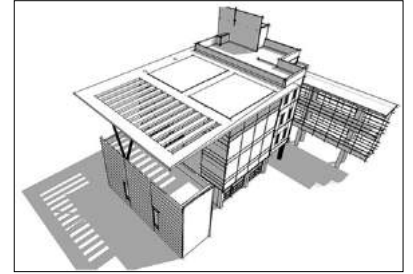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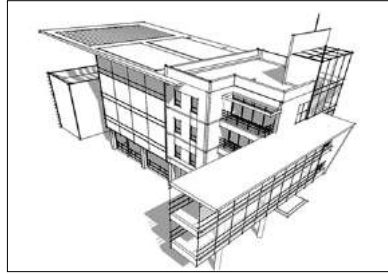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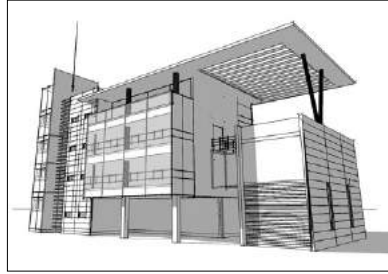
- 사무실의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Flexibility) 부여
- 다양한 형태 / 규모의 사무실 유형제시(개실형, 통합형)
-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의 명확한 분리 구획
- 사무실의 전용을 높이기 위해 소형 부속실을 마련
- 신관, 구관 연계성을 고려한 연결통로 설치
- 밝고, 쾌적성 확보하기 위하여 커튼월로 계획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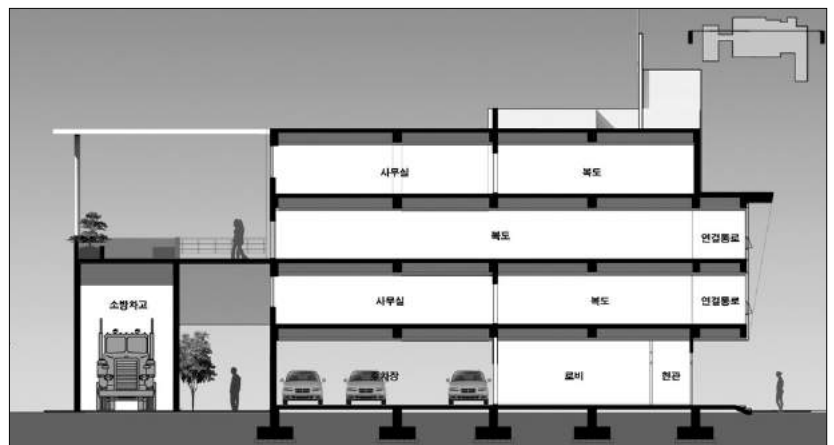
- Soft면(유리면)과 Hard면(베이스패널)을 적정 분배하고 적삼목 루버를 도입하여 짜임새 있는 입면을 구성
- 전면부와 연결통로부분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정면성을 확보하고 외부로의 시야를 개방
- 커튼월과 베이스패널 사이에 적삼목 루버를 사용함으로써 수평과 수직성의 적절한 균형추구
- 적삼목, 베이스패널, 유리등의 자연소재 사용으로 순수성과 단순 경쾌한 재료감 부여

외관 Remodeling계획

- 질서의 재구성
기존의 단조롭고 낙후된 수평 타일 벽면을 체계적이고 짜임새있는 입면으로 재구성하여 미래 지향적인 상징물이 되도록 계획
- 조화와 연계
기존사옥과 증축사옥의 외관 표현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속적인 동선체계를 갖도록 계획
- 경제성 / Clading(덧붙이기)방식
리모델링 공사시에도 일과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타일벽면에 새로운 재료를 덧붙이는 Clading 방식 채택
- 현대적인 재질사용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커튼월로 마감된 매스는 안정적이고 High-tech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적삼목과 베이스패널은 친환경적이고 순수한 재질감을 그대로 표출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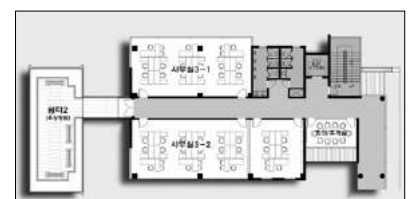
정면도



횡단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우수작 / (주)천산건축사사무소(하인철)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1
지역지구 도시지역
용 도 공장용지
대지면적 422,262㎡
건축면적 44,259.60㎡
연 면 적 94,762.72㎡
건 폐 율 10.48%
용 적 륜 22.44%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상 4층
외장마감 THK18컬러 복층유리 + 알루미늄 골강판
설비개요 FCU
설 계 팀 우민호

계획의 기본방향

한국서부발전 사옥건물의 노후된 입면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에너지 발전시설로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존동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새롭게 개선된 한국서부발전 사옥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수평차양, 이중외피를 사용하여 한국서부발전의 기본, 핵심임무인 에너지 첨단화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계획으로 에너지 절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쾌적함과 안전함, 편리함을 주는 건물의 내·외부 공간을 구성하였다.

기존동 리모델링 계획개념

- 이중외피 구성

- 기존건물의 외벽 바깥쪽에 새로운 외피를 추가로 구성하여 건물의 환경적 성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온실공간을 조경 및 직원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여름철에는 썬 스크린을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겨울철에는 이중외피 내부에 머무르는 가열된 공기를 활용하여 난방부하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였다.

- 에너지의 획득

- 새로이 구성된 이중외피의 유리부분에 건물 부착형 태양광 발전장치(B.I.P.V) 투광형 모듈을 부착하여 건물자체에서의 전기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하여 에너지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 하이테크 이미지 부여

- 이중외피에 의한 외관과 기존코어 부분을 감싸는 내부식성 알루미늄 골강판의 재료적 특성구현을 통해 High tech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증축동 계획개념

- 통일감 부여

- 기존부분과 동일한 재료사용 및 입면구성을 통하여 전체 건물의 이미지 통합을 고려하였다.

- 사무실 영역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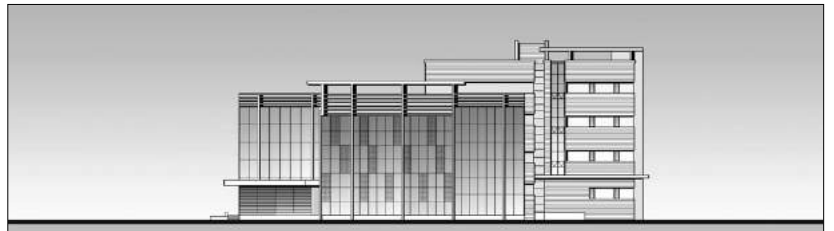
- 기존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2, 3, 4층 사무실 공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개방적 사무공간을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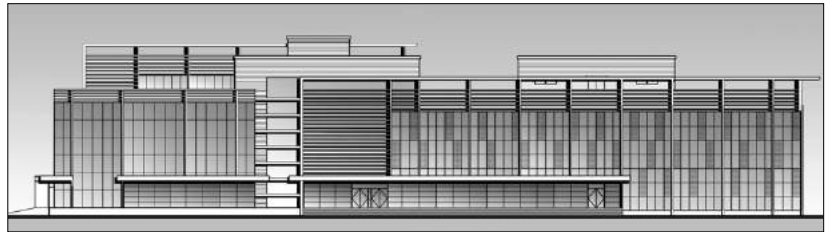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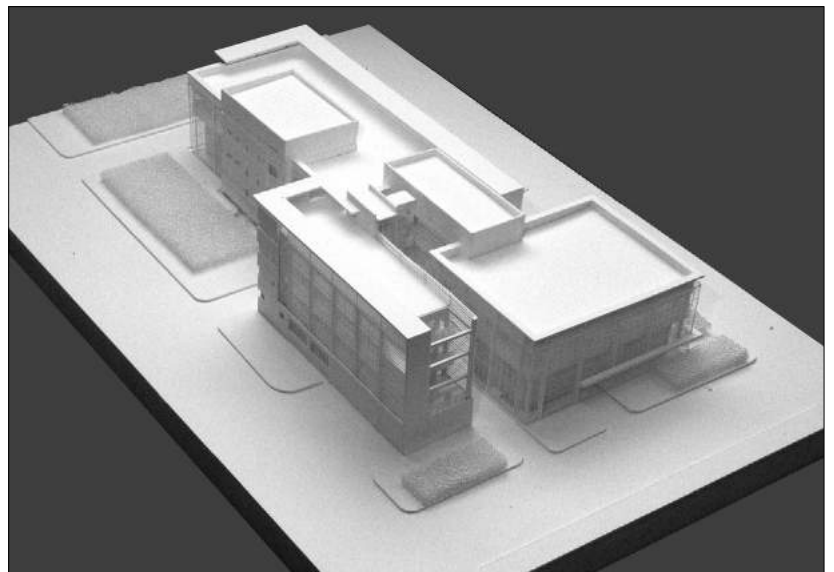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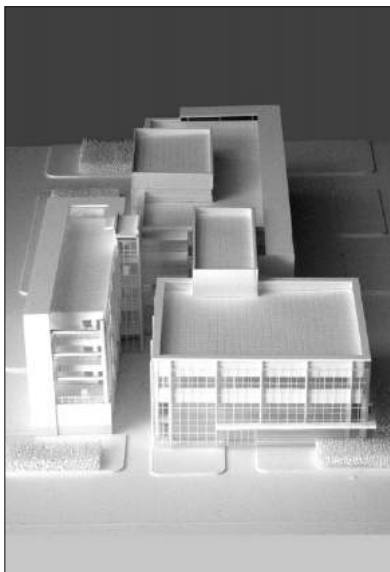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충북대학교병원 영안실 및 주차빌딩

Kore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충북대학교 병원은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장례식장화를 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관과 특수병동 등 부족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우수작으로는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권오준 · 정현석 · 김영각 · 오재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번지의
충북대학교병원 부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62,150㎡
건축면적 7,795.2㎡
연면적 17,382.02㎡
규모 영안실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빌딩 : 지하 3층, 지상 1층
설계팀 조주명, 김용석, 안병익, 송석호, 류미정,
김지호, 류호명, 최문섭, 이호정

• Organize Space

현대 의료서비스는 1차 - 치료의학, 2차 - 예방의학, 3차 - 건강한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수요를 반영하여 병원 대지 전체를 각 수요와 필요한 시설에 적합하도록 배치하며, 병원의 새로운 주진입구와 전체 공간을 통합시킬 수 있는 광장을 계획하여 방문자 및 차량의 진입동선과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공원화된 주차빌딩, 영안실동과 연결하여 휴식과 이벤트 공간을 제공, 병원 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존 시설인 본관동의 외래 진료부와 추후 복지관(건강증진센터) - 장례식장을, 중앙진료부·응급의료센터와는 암센터 - 노인병원을 계획하여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단지내 시설물을 '오름광장' 주위에 U자형으로 배치하여 공간을 통합시킨다. 또한 인근에 헬스파크와 의료요양단지를 추가로 계획하여 종합적인 Medical Service



Town으로 개발하도록 제안하였다.

• Green Network

병원대지 동서측에 위치한 자연환경은 의료 단지
지가 필요로 하는 휴양과 안식의 장소로서 손
색이 없다. 현재의 어수선하게 혼재된 주차장
과 시설물들을 지하공간화하며 외부공간과 동
서측의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양천의 숲 - 하
늘언덕 - 오름광장 - 헬스파크'의 Green
Network를 구성하여 단지 전체를 공원화하도
록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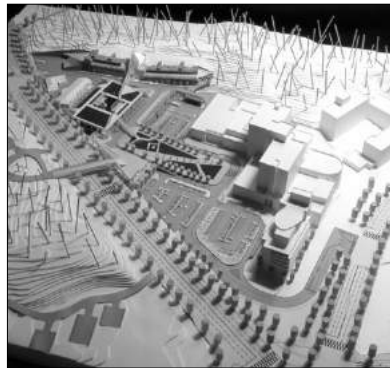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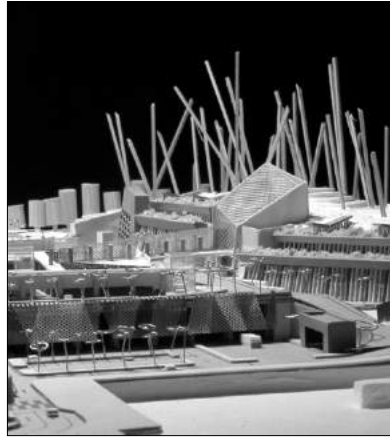
• 주차계획

새롭게 제시된 주진입 도로를 통한 방문자 동선을
병원시설 이용자와 영안실 이용자 영역으로 분리
하고, 병원시설 단기 이용자는 오름광장을 주위로
일방통행의 순환적 동선, 장기 이용자는 주차빌딩
저층부를 이용토록하여 차량동선을 분산시키고 주
진입구에서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영안실 이용자는 주차빌딩 상층부
를 이용, 하늘언덕을 통하여 영안실과 접근하도록
하였다.

주차빌딩 내부는 대중정을 중심으로 순환적 동선
체계를 이루며 양측면에 소중정을 계획하여 지하
공간에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
여 쾌적한 주차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영안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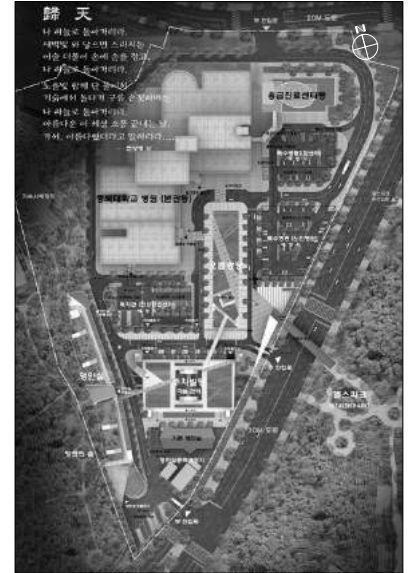
경사지에 배치된 영안실은 상징적이며 반복적 입
면을 갖는 연속하면서도 주변시설과 차별화된 전
면의 파사드를 제외하고는 지하공간화되며 건물
중앙에 계획된 아트리움 로비는 추모객에게 양천
(仰天)을 통한 고인에 대한 경건함을 갖게되며, 이
곳을 지나면 양측에는 병원 단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회랑을 통하여 각분양실로 들어선다. 장
시간 머무르는 접객공간에 천창(Top-light)을 설
치하여 채광·환기 및 공간적 쾌적함을 주고, 분
양실에는 접견·가면·욕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계획하여 현대적 장례공간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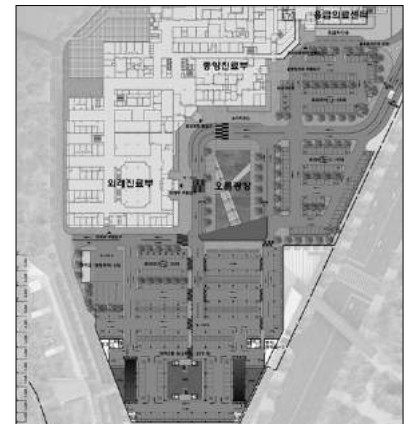
1층 평면도(정례식장)



동측 입면도



배치도



2층 평면도(주차장)



충북대학교병원 영안실 및 주차빌딩

Arenal Auditor and Parking Building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우수작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용현)

대지위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번지 외

충북대학교병원 부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용 도 영안실 및 주차빌딩

대지면적 62,150㎡

건축면적 장례식장 : 1,121.04㎡, 주차장 : 3,525.80㎡

연 면 적 장례식장 : 3,442.65㎡, 주차장 : 13,934.09㎡

규 모 영안실 : 지하 2층 지상 1층,

주차빌딩 : 지상 4층

설 계 팀 임준혁, 박상천, 이영선, 김유란, 서명준,
강영구

프로로그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시민의 욕구 증대와 변화를 기존 시설로는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종합적인 기능 및 규모를 지닌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며, 지역의 장례문화에 중추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측에는 광장, 북쪽으로는 주차빌딩을 계획하였고, 광장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유일한 쉼터이며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는 비워진 공간으로서 이 마당은 서측의 자연과 자연스레 한 공간을 이루어 35m도로를 지나 동측의 자연과 Link되어 숨쉬는 공간이고, 남측 주차장의 벽면과 분리되어 서있는 유리벽은 광장을 한정하고 이벤트 행위시 무대벽으로 사용되며, 궁

극적으로 광장의 시각적 환경 제어를 위한 Screen Wall이다.

또한, 뒷마당에 계획된 수공간의 정적인 분위기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상념에 젖는 공간이며, 돌다리를 지나 정자로 연결된 길을 걸으며 고인을 회고하고 자연으로 떠나보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동선계획

동측을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기존영안실의 출입동선을 선크로 연계하였으며 동선의 흐름에 있어 보차 분리의 원칙하에 부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시켰다.

북측과 남측에 차량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였고 또한, 서비스 동선은 기존 동선을 이용하여 다른 동선과 분리하였다.



평면계획

장례식장은 각실을 유사 기능군별(관리영역과 조문영역로) 조닝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층별, 실별 연결은 아트리움과 선관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으며 아트리움은 지하에 일조 및 시야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였다.

주차빌딩은 장례식장 및 병원과 연계를 고려하였으며, 주차수용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모듈 계획을 하였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차로폭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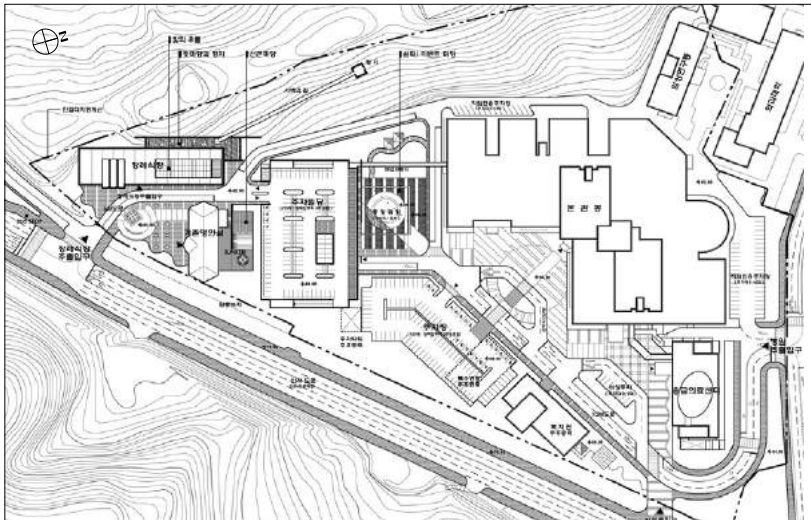
장례식장은 기존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밝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적합한 형태의 개구부, 지붕의 처리 등으로 건물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열주는 장례식장의 정면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는 Land Mark의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주차빌딩은 편창메탈의 불규칙한 개구부를 통해 매스전체에 리듬감을 부여하였고, 유리벽은 병원속 휴게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미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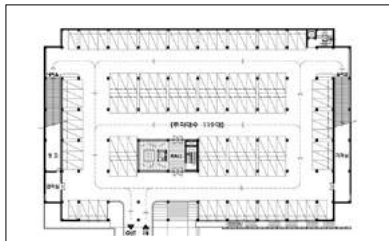
장례식장에서 지상층은 필요기능에 의한 최소한

의 공간구성을 하고 지하층은 수평적으로 볼륨이 확장되는 구성을 통하여 주차빌딩, 기존영안실, 선관 등과의 관계 맺기를 하였으며 기능별 층고의 변화로 다양한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장례식장 중심의 아트리움은 지상층과 지하층을 이어주는 비움의 공간으로 유·무형의 흐름이 형성되도록 하여 전체공간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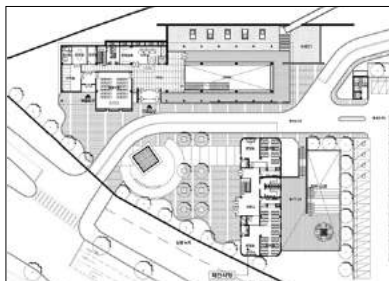
주차빌딩은 새롭게 형성된 영역에 수평, 수직으로 질서를 부여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주차장내에 전용공간(빛우물)을 통해 빛의 유입으로 쾌적하고 밝은 공간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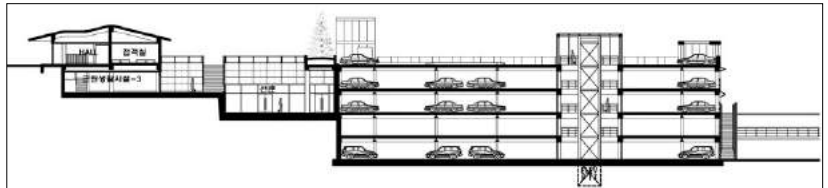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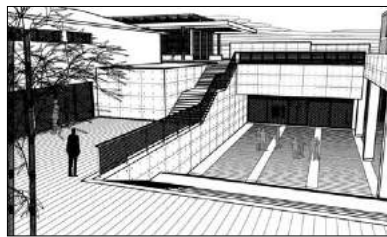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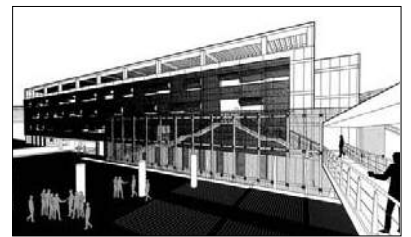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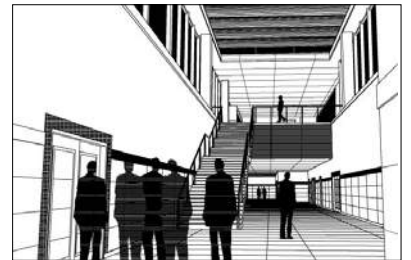
1층 평면도(장례식장)



종단면도(주차장)



정면도(장례식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The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ulture Training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전통문화연수원의 교육·연수시설을 확충하여 강사 및 교육생의 강의 및 실험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통문화 연수원을 신축하고자 현상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가작으로는 '주)한인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조도연)

대지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시설지구내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수원)
대지면적	14,226.00㎡
건축면적	1,642.58㎡
연면적	3,248.62㎡
건폐율	11.55%
용적률	21.26%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팀	김현주, 박임호, 임정훈, 박수민, 하지연, 정성일

계획의 모티브

누(樓) 한국 고건축의 공간 환원 : 자연에 대한 열림
누는 벽과 문을 설치하지 않아 공간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킨 건축물이다.

기둥과 지붕, 바닥이 있을 뿐 벽과 문이 없다. 실이 아닌 바닥과 지붕으로 한정된 트인 공간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선,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인의 자연관과 건축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누는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인의 소박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계획의 방향

대지의 경사에 따라 매스를 낮고 넓게 펼친 후, 그 사이에 누를 세운다. 누는 남측의 교육동과 북측의 숙박동 건물을 배경으로 연수원의 상징적 오브제로 자리하고 있다. 누는 자연을 배경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풍경을 내부로 끌어옴과 동시에 필요시 옥외 이벤트 광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형에의 순응 : 지형을 따라 대지에 낮게 펼쳐지는 배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레벨에 따라 매스를 위계있게 배치하고 기존 수로와 수목을 활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서원과 교육동 : 서원의 공간구성방식을 도입한 교육동. 전통건축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서원의 배치 형식을 도입하여 교육동 배치를 마당을 중심으로 모자형으로 구성하였다.

상징적 오브제 : 누(樓) 상징성과 다양한 옥외이벤트 행사. 전통의 상징적 오브제로서 누각을 설치하여 차경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필요시 옥외 이벤트 행사장으로 활용하였다.

자연친화적 연수원... 대지에 순응하여 낮고 넓게 펼쳐진 매스

주요실의 남향배치 : 숙박동, 교육동의 주요실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고려하고 양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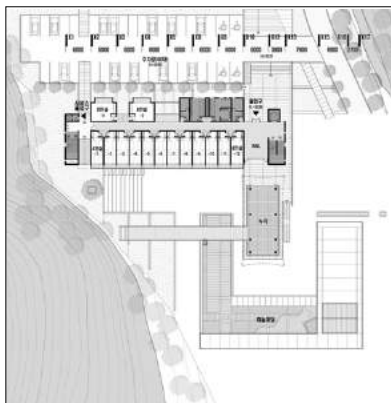
조망권을 확보하였다.

영역의 분리 : 누각을 경계로 숙박동과 교육동 매스를 분리하여 건물의 성격,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동 휴무시 숙박동 별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학교와의 연계 : 기존 전통문화학교의 남북방향 직교축에 순응하여 연수원의 주 매스를 남북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마스터플랜의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The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ulture Training

우수작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식 · 김용미)

대지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한국전통문화 학교 시설지구내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수원)

대지면적 14,220㎡

건축면적 1,615.75㎡

연 면 적 3,512.03㎡

건 폐 율 11.4%

용 적 륜 24.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38대 (장애인지차 2대 포함)

외부마감 화강석 판석, 목재사이딩, 점토벽돌 치장
쌓기, THK24 복층유리

설 계 팀 정준철, 심주영, 손영진, 이상은

전통문화연수원은 한국전통의 기술장인을 교육하는 연수시설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지내에 조성된다. 이에 일반적인 연수원 대신 효율적인 기능과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갖추어 전통문화 기능인을 육성하는 장에 걸맞는 건물로 계획하고자 한다.

계획개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대지위에 전통적인 골짜기마을의 배치개념을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의 건물-강의동, 대강의실, 기숙사, 옥외실습장-이 지세와 향에 따라 서로 다른 축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전통적 조형미를 현대화한 건물로 계획하여, 누마루 형식의 건물을 정면에 세워 대문채의 역할을 부여하고 뒤로 여러 채의 건물을 마을 구성으로 한다.

배치계획

골짜기로 열린 축을 따라서 채를 나누어 위계적 공간을 전개한다. 대문채-사랑채의 강의, 실습동이 연수원의 입구가 되며, 중간채-안채로 기숙사동을 두어 사적인 공간으로 한정한다. 각 동의 앞, 뒤로 마당을 주어 위계적인 공간의 연속된 흐름을 만든다. 연수원 앞 전통정원은 바깥마당으로 입구의 역할을 하며, 강의동과 기숙사 사이 휴게마당은 연수생들의 휴게공간이 된다. 2개의 기숙사 사이 안마당을 만들어 연수원 기숙사생들을 위한 사적공간을 둔다. 실제 주실습공간이 되는 옥외실습장은 연수원 뒤로 거리를 두어 독립영역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마당을 가지게 된다.

평면계획

기능에 따라 분리된 강의·실습동과 기숙사 2



개동으로 구성된다.

관리·사무영역과 교육영역을 포함하는 강의동을 정면에 배치하여 입구의 역할을 한다. 1층에 연수원 사무실과 대강의실을 두고, 2층으로 회의실, 원장실, 자료실, 강사실을, 3층에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두어 동선을 편리하게 계획한다. 장시간을 머물면서 생활하게 되는 숙소는 남향과 동향으로 배치하여 채광과 일조를 확보하고, 두개 동 사이에 중심 코아를 두어 관리 효율을 높인다.

숙소는 편복도방식의 4인1실 일반형과 중복도방식의 8인1실 확장형의 두가지 타입으로, 확장형 평면타입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공부방과 침실을 분리시켜 밤과 낮, 개인의 생활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입면계획

전통미의 투영.

강의동의 길게 뻗은 누마루 지붕은 사람들을 골짜기로 초대하는 강한 요소로 작용하며, 독립된 대강의실의 둥근 매스는 적극적인 초대의 기능을 한다. 대문채 처마선의 아름다움을 투영시킨 경사면의 수평지붕과 누마루의 이미지를 차용한 강의동 지붕에서 전통건축미를 느낄 수 있다.

비움과 채움의 상징적인 입면을 구성하여, 산골짜기 대지의 흐름을 건물에서도 그대로 연속시켜 반영한다.

단면계획

강의동에 주출입구에서 대강의실과 사무·관리 영역의 사이에 홀을 두어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지붕의 처마설치로 여름철의 일사를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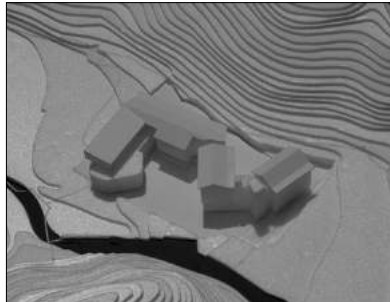
건물의 1층은 필로티와 유리를 사용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만들고, 건물 사이에 마당을 두어 공간의 비움을 통한 대지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유지한 단면을 계획한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서쪽 입면도

가작 / (주)한인건축사사무소(이관영)

대지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한국전통문화
학교 시설지구내
지역지구 백재역사재현단지 예정 개발촉진지구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수원)
대지면적 약 14,226㎡
건축면적 약 1,270.80㎡
연 면 적 약 3,742.88㎡
(교육동 2,040.08㎡, 숙박동 1,702.80㎡)
건 폐 율 약 9% 법적기준(40%)
용 적 륜 약 22% 법적기준(1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교육동 : 지하 1층, 지상 2층
숙박동 : 지상 3층
설 계 팀 이상래, 황진하, 천국천, 김봉현, 변기석 /
C.G : 가우그래픽스(이우순)

배치계획

- 기존 전통문화 학교 마스터플랜의 남북축을 계획대지에 이용하면 전체적인 배치가 북쪽의 수림대만 바라보는 닫혀버린 조망을 갖게 되어 자칫 정면성을 잃을수 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쪽을 바라보는 지형의 형국에 따라 새로운 Main축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전통배치 기법을 도입하되 기존 학교 축 배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연수원 마스터플랜에 기존 학교축을 부분적용하여 학교 전체의 마스터플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자연적인 요소(개천, 오픈 공간)에 의한 기존 학교 시설과의 공간 분리
- 매개공간(체력단력장, 모임마당, 야외무대 등)에 의한 축의 변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와 교차를 통한 기존 동선체계 유지

평면계획

- 동선의 연결 : 브릿지와 회랑을 통해 전체 동선을 하나로 연결
교육동>숙박동 / 교육동>다목적실 / 숙박동>실습동(이론과 실기의 연결 / 장애우를 위한 무장애공간 계획)
- 영역의 분리 : 다목적실은 진입마당과 안마당 사이, 숙박동은 교육동과 실습동 사이에 동서 장방향으로 계획하여 자연스럽게 마당이 형성되는 동시 영역분리
- 대지의 건축선을 따라 계획된 서측도로와 평행하게 이루어진 '가벽'은 차량통행에 대한 소음유출 완화를 위해 계획됨(담장형성)
- 서측도로를 따라 동별, 단계별, 이용자별로 주차장을 계획하여 편리함과 차량동선의 명확한 분리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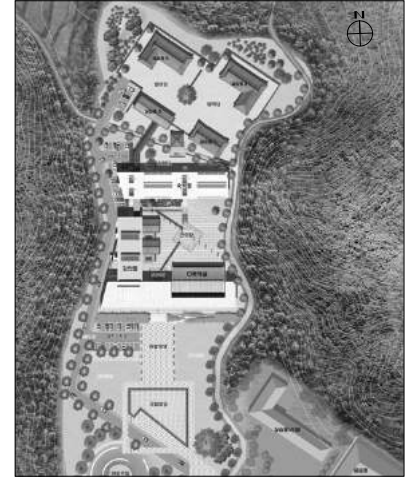
- 진입부에서 인지성을 강조한 입면
- 전통건축 요소들을 디자인 모티브로 도입한 조형(처마, 회랑, 누하, 우회)
- 단순명료한 입면
- 반복과 중첩의 효과 연출
 - 창호의 간략화와 질서
 - 재료의 반복
- 매스의 중첩이 주는 점진적 흥미유발

단면계획

- 전체 : 3마당+1후정이 지세를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한 3개의 매스와 어울려 각각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지님과 동시, 일관된 배치계획

(바깥마당-누하진입-사랑마당-안마당-우회 진입-뒷마당)

- 강의동과 숙박동에 채광을 위한 Top Light 및 일사량 조절을 위한 루버설치
- 강의동과 숙박공간 브릿지를 통한 연결, 숙박동과 실습공간 회랑을 통해 전체동선을 하나로 연결



배치도



2층 평면도(교육동)



1층 평면도(교육동)



교육동 정면도

중단면도

강 성 익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ang Sung-ik, KIRA

동양의 베니스 - 소주와 항주

Shouzhou and Hangzhou - Venice of the East

여행이란 스스로를 편안한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수반하는 이질적인 세계로 끌어내는 일이다. 여행에 나선다는 것은 단 하나의 나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며, 바로 그 별도의 자기에의 회귀, 또 다른 인생의 향수인 것이다.

평소에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는 건축사 몇 명과 함께 상해, 소주, 항주 3박4일('05. 6. 5~'05. 6. 8)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작금의 건축계 현상에서 잠시나마 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자는 위안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비교적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코스를 택하였다.

6월 5일(일) 첫째 날

예정시간보다 3~40분 늦게 출발한 상해항공 FM 828기는 상해 푸둥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상하이에 들어서는 첫 관문인 푸둥 국제공항은 외국의 어느 국제공항과 비슷한 모습이다. 시내로 들어오는 고가도로 옆으로 공항과 푸둥지역을 잇는 시속 430미터의 자기부상열차가 지나간다.

도시가 변하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변한다. 상하이의 인구는 1,400만이 넘는다고 한다. 거리를 메우고 있는 상하이인들은 이미 '인민복'

따위는 벗어 던진지 오래다. 사람들의 모습은 경쾌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음을 재촉한다.

상해는 중국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항구도시이며, 북경, 천진과 함께 중국의 3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건축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중국고전양식의 건축과 서구식, 일본양식과 모던한 스타일의 건물들이 시가지를 메우고 있으며 2000년도 말까지 20층 이상의 건물이 1,478동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도 매우 역동적이고, 시가지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같아 보인다.

상해임시정부청사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상해임시정부청사였다. 마당로에 있는 3층 벽돌집으로 1926~1932년까지 청사로 사용하던 곳이다. 1층에서 비디오텍스를 한 후 2~3층의 전시관을 관람하게 되며, 당시에 쓰였던 가구들과 서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홍구공원

다음에는 매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홍구공원을 방문하였다. 아쉽게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에는 청조말의 혁명가이며, 철학가이고 문학가인 로신 선생의 동상이 있었고, 공원 내의 한편에 윤의사의 기념관을 지어 놓고 유품과 사진이 걸려있으며 안내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상해서커스

저녁 식사 후에 중국 최고라는 상해서커스를 관람하였다. 그네뛰기, 접시돌리기, 팽이 돌리기, 외줄나무 뿔뛰기, 마술 등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압권은 오토바이 타기였다.

지름이 10미터도 안되어 보이는 철망으로 만들어진 원형의 공간 내에서 고속으로 좌우상하 자유자재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처음에는 현대의 오토바이만 타다가 현대식 늘어나서 나중에는 7대의 오토바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쉿쉿 굉음을 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실재의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마지막 날 상해에 다시 와서 나머지 관광을 하기로 하고 다음 여행지인 항주로 향하였다.

이날 오후 3시 넘어서 푸둥 공항에 도착한 후 강행군하여 3군데 관광을 마친 후, 고속도로를 3시간 정도 달려 항주로 이동하였다.

너무 무리한 일정 같았으나 스케줄대로 따라할 수밖에. 3시간의 버스 여행이 지루하다고하니, 이곳 중국에서는 2~3시간 거리정도는 이웃집에 놀러가는 정도란다. 밤 12시가 지나서야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 연길까지는 2박3일을 꼬박 가야한다고...

6월 6일(월) 둘째 날

지난밤의 강행군에도 끄떡없이 아침 5시 반 모닝콜, 7시 조찬, 7시 30분 모두 버스에 승차, 항주의 관광이 시작됐다.

항주는 절강성의 소재지이며 23개 성 중에서 끝에서 3번째로 작은 성인데, 인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4,300만 명이고, 중국이 자랑하는 명승지의 하나이며 물산이 풍부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이태리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항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로 평가하였으며, 예로부터 '인간천당', '녹색천당'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중국의 5대강인 양자강, 황하, 주강, 회화, 전단 강 중 하나인 전단 강이 흐르고 있으며, 수양제 시대에 1,754킬로미터의 경향 운하를 건설하여 일찍부터 경제가 많이 발달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길고, 역사가 오래된 운하로 차, 도자기, 실크가 특히 유명하다.

육화탑

항주 남쪽 전단강가 월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13층처럼 보이나, 안에는 7층의 8각으로 되어있는 탑이다. 동, 서, 남, 북 그리고 하늘과 땅(그래서 6화이다)이 화합하여 전단강의 대 역류를 막아달라는 기원으로 세운 탑이며 밤에는 등대역할도 하고 있다.

영은사

백마사, 소림사와 함께 중국의 10대 고찰중의 하나로 서기 326년에 지어졌다. 대웅보전에는 33.6미터 크기의 석가모니 불상이 있다. 또한 바위절벽에는 470여 각 가지 석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송나라 때에는 3,000명의 수도 스님이 있었다고 한다.



서호



육화탑



영은사 석상



서호 풍경

서호

중국에는 서호라는 이름을 가진 호수가 36개나 있는데, 항주의 서호가 그중 제일이다.

호수에는 3개의 석등이 있는데 각기 5개의 구멍이 나왔다. 가을 달밤에 석등에 불을 밝히면 모두 15개의 빛이 새어나오며, 물에 비추니 30개가 되고, 하늘의 달 그리고 물위의 달, 사람의 눈에 2개, 마음의 달 그렇게 해서 35개의 달이 있다고 한다. 유람선을 타고 서호를 한바퀴 돌면서 보이는 산하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용정차농원

중국에서는 일찍이 차 문화가 발달하였다. 기름진 음식을 즐겨 섭취하고, 많은 양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탓인지 항상 차를 마신다. 이곳에서 나는 용정 차는 녹차의 일종인데, 이곳 메가우에서 나는 용정차를 최고의 차로 알아준다.

용정차는 몸의 해독제 역할을 하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피를 맑게 하고, 이뇨작용을 돕는 등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란다.

'차'를 한자로 풀어서 쓰면 108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차를 많이 마시면 108세까지 무병장수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 모두 차를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비교적 일찍 일정을 끝내고, 발 마사지로 지친 몸과 발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6월 7일(화) 셋째날

소주는 강소성 남부의 양자강 삼각주 평원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2500년 된 오래된 도시이고, 오·월시대에 월나라의 수도였다.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며,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름난 물의 도시이다.

서한 초기에는 동남부의 최대도시로 번영하여 '사주지부(비단의 도시)', '어미지향(바다가 가까워 살기 좋은 곳)', '원림지도(정원의 도시)' 등으로 칭해졌다.

항주에서 소주까지 버스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인치동 건축사의 재치 있는 사회로 각자 자기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이철재 사모님의 노래실

력은 기성가수를 넘었고, 권태정님의 건강가짜와 이번과 같은 여행을 계속해서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회원님과 사모님들의 구수한 와이담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동을 하였다. 월나라에는 궁녀 중에 '서시'라는 중국의 4대 미인중의 한사람이 있었는데, 날아가는 기러기가 서시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떨어졌다고 해서 일명 '라견'이라고도 하며, 하늘의 달이 서시를 쳐다보고 그만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었다고 해서 '패월'이라는 별칭이 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역사 중에 오자서의 둘째아들 '부처'가 복수를 노리면서 장작위에 누워 자면서 곰 쓸개를 씹었다는 '와신상담', '동시'라는 여인이 '서시'와 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인상을 쓰고 다녔다는 '설상가상', '부처'가 왕이 되기 위해 재상 오자서에게 뇌물을 계속해서 갖다 주었다는 '뒷문거래' 등의 예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소주

호구탑

호구 산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이는 47.7미터이고 소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목구조로 되어있고 외벽은 벽돌이 쌓여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탑과 같이 한편의 기초가 가라앉아서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춘추시대 오왕인 합려가 이곳 연못 아래에 묻혀 있다고 전해지며, 합려의 무덤을 만들 때 관속에 명검 3,000개를 함께 묻었다고 한다.



호구공원

한산사

한산사는 육조시대에 세워진 고찰로 당나라 시인 장계의 '풍교야 박'이라는 시로 유명해진 절이다. 시내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 차례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청나라 시대(1911)에 지어진 것이다. 당나라 때의 한산선님과 습득선님을 모시고 있는 절이다.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 풍교에는 고깃배 등불을 마주하여 시름 속에 자고 / 고소성 밖 한산사에는 /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줄정원

유원, 이화원, 승덕이궁과 함께 중국4대 정원 중의 하나이다.



한산사

명나라 정덕 4년(1509년)에 지어졌다. “줄자가 정치를 한다”, “미친한 행 정가의 정원”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나라의 의사이고 바른말 을 잘하는 지사이며, 중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고향에 돌아와 칩거를 하며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왕헌신’이 조성했다고 한다.

화원은 동, 중, 서 세부분으로 나뉘며, 명대의 전통 건축양식이 잘 반영되 어 있다. 모든 창살의 무늬가 형태가 다르며, 총면적은 16,000평이고, 그중 3/5정도가 연못이다. 연못을 중심으로 작은 정자나 복도, 산 모양을 한 석가 산이 만들어져 있고, 방 안에서 사방의 경치를 다 볼 수 있도록 사면을 유리 문으로 만든 원향당 등 이색적인 건물인 견산루, 파산랑, 비파, 해당, 파초가 뿔뿔이 들어선 비파원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돌덩이 하나, 나무 한그루, 연못, 그리고 건물들, 모두가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비경이다.



출정원



창살 상세



출정원

상해 동방명주탑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기둥이라는 뜻의 동방명주탑은 황포강의 동편인 포동자구에 위치한 TV 방송국건물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 는 제일 높은 468미터이다.

전망대는 263미터 높이에 있으며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기존 시가지인 포서자구와 포동자구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야간에 내려다 본 상해 시는 그야말로 불야성이며, 이곳 상해시의 야간 조명을 위해 인근 2개성의 저녁시간에 매일 1시간씩 단전까지 한다.

1991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완공한 이 탑은 상해의 발전, 성장을 한마 디로 표현하는 듯 싶다. 인근에 있는 88층 높이의 진마오 타워를 비롯한 많 은 건물들은 외관이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기발한 디자인으로 이곳이 천지 가 개벽한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외탄야경과 황포강 유람선

외탄은 포서지역에 황포강의 제방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데 외탄에서 보는 포서지역의 건물들은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국내외의 새로운 문 물을 흡수함과 동시에 은행과 호텔, 관공서 등 서양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구라파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 하다.

중국에서 가장 긴 양자강이 상해시의 북쪽에 위치하여 태평양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포동과 포서를 갈라놓은 황포강과도 연결이 되어있다. 19세기 의 작은 어촌이었던 곳이 개항 150년 만에 동아시아의 금융과 무역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황포강의 유람선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합창하며 기념촬영도 하고 상해에 서의 마지막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유람선에서 보는 상해의 야경 또한 가관이였다. 건물모양도 가지각색이거 니와 야간 조명도 각각 특색이 있었고 지나가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뱃고동 소리가 어울려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중국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못해보는 것이 3가지가 있단다.

첫째, 전국 여행을 못하고, 둘째 중국에서 나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볼 수 가 없고, 셋째 한문을 다 익힐 수가 없다.

상하이의 힘은 극단적이고 미묘한 공존이 아닌가 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가 뒤섞여 있는 공간, 그 사이를 시계추같이 왕복하며 간극을 채워가 는 상하이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야말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이 도시 의 매력이 아닌가 한다.

6월 8일(내뽕날)

아침 5시 30분 모닝콜,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우고, 공항으로 출발, 이렇게 우리일행의 상하이, 소주, 항주 3박 4일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여행에 함께해주신 건축사들께 불편하고 힘든 일정을 잘 참아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 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해 본다. 📷



외탄야경



홍구공원에서 기념촬영

김 영 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s●●

근대사의 슬픔은 곧 건축의 아픔이었다

— 마지막 황손 이구(李玖)씨의 영결식을 보면서 —

Sorrow of Our Modern History has
been the Pain of Architecture

- Observing the Funeral Service of Lee Gu, the Last Imperial
Descendent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왕조다. 1905년 일제강탈로 잃어버린 왕국이니, 꼭 백년전의 일이다.

1931년 12월 29일,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영친왕은 일본 황족인 이방자여사와의 사이에서 둘째아들 이구를 낳았다. 첫째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돌아갔으니 홀로 외동의 자리를 지킨셈이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일본국 대사의 눈에 띄어 MIT 건축학부로 옮겨 졸업했다. 그 후 뉴욕의 IMPED 사무실에서 건축설계를 익혔고, 여기에서 8년 연상의 주리아와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슬하에는 자식이 없어 종친의 강압으로 이혼까지 당했다.

필자가 이구씨를 만난 것은 1966년이었다. 고주석(전 텍사스 주립대 교수)씨 그리고 장문기(전 조경기술사회 회장)씨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 설계를 맡아 할때다. 낮에는 TAK(Trans Asia Korea)에서 일하고 밤에는 종로의 여관방에서 마무리 실시설계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TAK는 미8군에 있는 TAE와 협업관계에 있었으나 초창기의 회사조직과 운영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중국대사관 설계가 그 모태였지만 TAK이후에는 달성공원, 청기와 주유소, 호남오일기숙사 정도의 프로젝트가 고작이었다.

TAK의 해산과 더불어 그 이후는 단 한번의 만남도 가지지 못했다. 부인과 함께 조선폰텔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기회가 있으면 만나자는 소식만 오갔을 뿐인데, 이렇게 비보에 접하고 보니 필자부터 몸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과 산다는게 다 무엇인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마지막 황세손, 그는 그의 마지막 길까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볼모의 나라, 도쿄 시내의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객실에서 홀로 눈을 감았으니 말이다. 프린스호텔은 그의 생가터이기도 한 곳이다. '마지막'과 '홀로'는 그의 대명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책갈피 속에도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비운의 역사는 비련의 왕자를 마지막으로 데려갔다.

9일장인 그의 영결식은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에 창덕궁 회경당 앞에서 있었다. 생전의 그와 비교해보면 실로 놀랍고 엄청난. 육군 군악대의 조악(弔樂)은 그만두고라도 국무총리의 조사와 문상객들의 규모에 먼저 놀랄 수 밖에 없다. 조선왕실 전통상례에 따라 취타대 그리고 만장행렬과 어가가 이어지고 남양주 영친왕 묘역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장관이었다. 마지막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라스트 씬'은 영화속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폭염속에서 애트해하는 그의 이혼녀 주리아의 모습이다. 휠체어에 앉은 83세의 노파가 종묘노제 건너편에서 단장의 슬픔을 삼키는 기구한 인연이다. 필자도, 어느 누구도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으리라.

이제 그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그의 일생을 되새기듯 화은(懷恩)이라는 이름으로 홍릉뒤편의 영원(英園)에 안장됐다. 오욕의 거처이기도 했던 낙선재에 3년상의 상청을 마련했으니, 마지막 한이지만 마음껏 풀고 가셔야 할 텐데 딱하기 그지없다.

기구한 인연, 파란만장의 일생, 마지막 어가행렬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제각각이었을 것이다. 국치의 한과 왕조의 비운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자는 조금은 다른 상념에 젖어있다. 죽어서 그렇게나 훌륭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명문 MIT 출신으로 귀국까지 했는데 건축 활동을 또 왜 그랬던가 하는 의문이다.

우리 숙담에 작은 고추는 맵다고 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숙담이 일반적으로 맞아 왔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는 최소한 그랬는지도 모른다. 울분을 삼키고 분통을 이기며 풍파를 헤치고 명예를 지키는 그 일은 그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헤아리기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키는 작지만 누가 봐도 귀족자 얼굴에 귀한 미소의 소유자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에 고상한 톤의 옷맵시에서 언제나 귀족풍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와 "청사진"이라는 우리말 돌밖에 듣지 못한 필자한테서 따끔한 일침을 받을때는 멋쩍게 웃곤했던 그였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프린스(Prince)로서 그 체통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중에서도 바로 우리말이다"하고 아픈 가슴을 건드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말을 배우고 또 썼는지 알길이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왕국속에 스스로 우뚝 서지 못한 연유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그는 진정 하고싶어도 그의 태생적 조건이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 그였지만 조국의 품도 너무나 냉랭했다. 정부입장에서는 정책의 차원도 그러했지만 국민도 종친도 그리고 건축인도 따뜻한 손길이나 눈빛 한번 제대로 보낸적이 있는가. 죽어서는 왕자이신 임금대접하면서 살아 생전에는 왕자이신 이방인 대접만 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건축인들의 책임 또한 모면할 길이 없다. 필자부터도 나름대로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힘을 숨길 수가 없다. 그토록 전통건축을 아끼워했고 또 언제나 설계속에 고전의 디테일을 심고자 했던 그를 보고

서는 그가 정말 조선왕가의 진혈이구나하고 생각했던 필자에게는 더 큰 아쉬움이 남고 또 남는다. 왜 그를 이 나라에 잡아두지 못했고, 필자의 조그만 힘이지만 왜 보낼 수 없었는지 후회가 막급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속에는 불태우지 못한 건축의 열정이 응어려져 있었을 지도 모른다. 동시에 한국의 현대건축이 우리의 전통건축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에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는지도 모른다.

이구의 건축이 싹을 내릴 수 없었던 한국의 풍토, 그 토양이 정녕 좋은 것만은 아님은 너무나 분명하다.

왕국의 부상을 염려해온 해방이후의 정치권력자들이 그랬고, 철옹성을 꿈꾸며 남의 건축을 견제해온 초기건축가들이 또한 그러했다. 그사이 눈치높음에 안주한 종친들과 명분도 인정도 잊어버린 국민들 또한 그 동행자들이었다.

잃어버린 왕국 100년, 다시 찾은 우리나라 60년은 그야말로 슬픈 근대사임에 틀림없다. 사건·사고들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75년의 한평생을 마감한 화은 이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건축의 역사에서도 이구의 시공간에 초점을 맞추면 그 슬픈 근대사에 못지않게 건축의 아픈 상처를 잇을 길이 없다. 건축법이 시행된 것은 40년전인 1965년의 일이다. 조국에서 건축의 인생을 꽃피우려고 귀국한 이구의 인생 역정과 맞떨어진다.

처음에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으나 건축의 길은 바른 듯이 보였다. 이구도 그랬고 당시의 건축상황도 비슷했다. 그 이후 이구는 조자룡의 칼에 휘청거렸고, 시중의 건축사무소는 대소로 양분되면서 부침(浮沈)을 거듭했고 수주질량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다시 이구는 한국을 떠나버리다시피 했고 설계판도는 감리전문회사의 등장과 함께 약육강식의 절대 시장구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었다. 양쪽의 아이러니칼한 건축의 대조 양상이었다.

세기가 끝나고 그는 죽어서 돌아왔다. IMF보다 더 혹독한 건축의 불행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다. 그의 건축은 끝났어도 한국의 건축은 새힘을 얻으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 같다. 그가 살아온 근대사의 슬픔은 동시에 건축사(建築史)의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건축의 참모습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 같기도 하다. 이제 그가 남기고간 인간과 질기고 부드러운 건축이 한국의 토양속에 한줌의 흙으로 고이 남았다.

그는 근대사에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에 오르겠지만 건축사에서는 한 줄이나마 쓰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황세손에 초침이 맞춰져 건축작품 하나 거론치 않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우리가 그의 건축작업과 열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건축을 위해 그의 작품에 조금이라도 빛을 더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생각해 된다.

그의 역사속에 건축이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축을 이끌고 있는 우리 건축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와 국민속에서 차지하는 우리 건축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지 않고서는 그 기대조차 또한 불가능하다 할것이다. 길지도 않았던 그와의 인연속에서 '왕자의 건축'이라는 또 다른 한자리를 메꾸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건축의 명운도 함께 빈다. ■

조 승 구
동명정보대학교 교수, 부산국제건축심포지엄분과위원장
by Jo Seung-koo

부산국제 건축심포지엄 : 도시와 영원성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Symposium : Urban Permanence

현대인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역사상 어느 시기의 사람들보다도 강하게 불안감을 느낀다.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거대화된 사회는 인간에게 이미 은신처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기술력의 발달이 보장해 주리라 믿었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미래에 대하여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된 사람들은 부지런히 안정화의 코드들을 찾아 나선다.

건축에서도 안정화의 코드를 찾는 시도는 시작되었다. 불안정한 인간에게 있어서 안정화의 코드는 영원성에 대한 염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영원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전통적 도시의 파괴가 야기되면서 개발과 보존 혹은 보전의 방법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도시와 건축에서의 상호 연관을 통한 문맥적 방법이었다. 이러한 맥락의 의미를 다원화와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부산지역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도시 상황에서 본 '제5회 부산국제건축심포지엄'을 통해 도시 부산의 미래를 해양성과 연관하여 도시의 영원성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즉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목표인 세계적인 문화제로 발전과 성장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21세기 문화·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도시 재창조로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심포지엄으로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영원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단기적으로는 도시와 건축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도시공간의 질 향상을 통하여 부산의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틀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 조경, 건축의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도시 분야에서 더그 알렌(Doug Allen, 조지아공대)의 도시형태와 구조에서 영원성과 변화, 조경에서 조지 하그브즈(George Hargreaves, 하버드대학교/하그리브즈 사무소)의 해석과 측정, 건축에서 승효상(이로재건축사사무소)의 문화전경, 베르나드 프랑켄(Bernhard Franken, 프랑켄 사무소/독일)의 디지털 건축으로서 만듦과 디자인, 램 쿨하스(Rem Koolhaas, OMA 사무소/하버드대학교)의 보존과 경시의 힘, 맥 스코긴(Mack Scogin, 하버드대학교/스코긴 사무소)의 스코긴과 최근 작품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조지 하그브즈(14작품), 베르나드 프랑켄(6작품), 맥 스코긴(8작품)은 별도로 벅스코(BEXCO) 전시장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당초 6명의 작품 모두를 전시하려고 기획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3명의 작품만 전시한 것은 매우 아쉬웠다. 여기에서는 전시한 이들 3명의 작품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작품의 전시는 기존의 보여주기에 의한 고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작품세계가 입체적 이미지로 펼쳐져 마치 거대한 설치미술의 현장에 온 듯 공간과 이미지와 관객이 일체가 되어 대중과 소통을 꿈꾸는 체험형 전시공간을 개개의 작가들은 제시하였다.

■ 맥 스코긴(Mack Scogin)

맥 스코긴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장으로 초빙되어 교직을 늦게 시작하였으나 그의 건축적 역량 그리고 행정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하버드대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램 쿨하스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를 초빙하여 90년대 하버드대학교의 위상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가로서 중규모의 작은 프로젝트 위주로 설계를 하였으며, 1991년 미국 클레이튼 카운티(Clayton County) 도서관과 1993년 미국 아틀란타시의 벅헤드(Buckhead) 도서관으로 미국건축가협회 우수작품상 수상,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건축 강연과 작품전시 그리고 심사를 했으며 그의 강연은 그의 조형적인 작품성과 건축개념에 대하여 항상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질문 때 마다 “나의 건축 작품은 이론이 없는 것이 이론이다”며 현학적이고 학문적(academic)인 것에 의한 분석을 거부했다. 실제로 그는 작업할 때마다 프랭크 게리(Frank Gehry)와 같이 그가 생각하는 것에 만족할 때 까지 50~60개의 모형과 도면을 만들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최종의 것으로 만드는 매우 특이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건축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설명(Explanation) 또는 분석보다는 기술이나 서술에 의해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에게는 세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실재적인 세



터너건물, 1987



클레이튼 카운티 도서관, 1991



클레이튼 카운티 도서관, 1991

계는 기술되어야지 구축되거나 형성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았다. 스코긴 사무소의 철학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우리의 건축에 대한 경험에서 배워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그리고 오래 동안 일하며 만장일치의 결정을 이끄는 경험과 성숙을 가진다.

프로그램과 기능적 요구의 해결은 우리의 사고 과정에 근거한다. 음향 계획은 기본이다. 기본을 넘어서는 것, 일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접하는 것, 기교가 풍부한 아이디어를 과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 속성과 특성을 비교하는 것, 가정자리를 확장하는 것, ‘현재’ 조건의 요구를 즐기는 것, 문화적 힘과 영향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건축에서 넓은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우리를 매혹하기 위해 지속되는 건축의 현상들이다. 우리의 작업은 이러한 흥미들을 반영하며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프로젝트의 공간들은 역설적으로 평화롭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와 건축가가 함께 실행(forces)해야 하는 근원적 이유와 일반적인 화제는 간단하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진실성, 질, 지성 그리고 탐구, 공정과 좋은 논의, 독창성과 건축의 우수성은 우리가 소중히 하는 다른 것들 사이에 있다.

다음의 작품은 전시된 작품에서 3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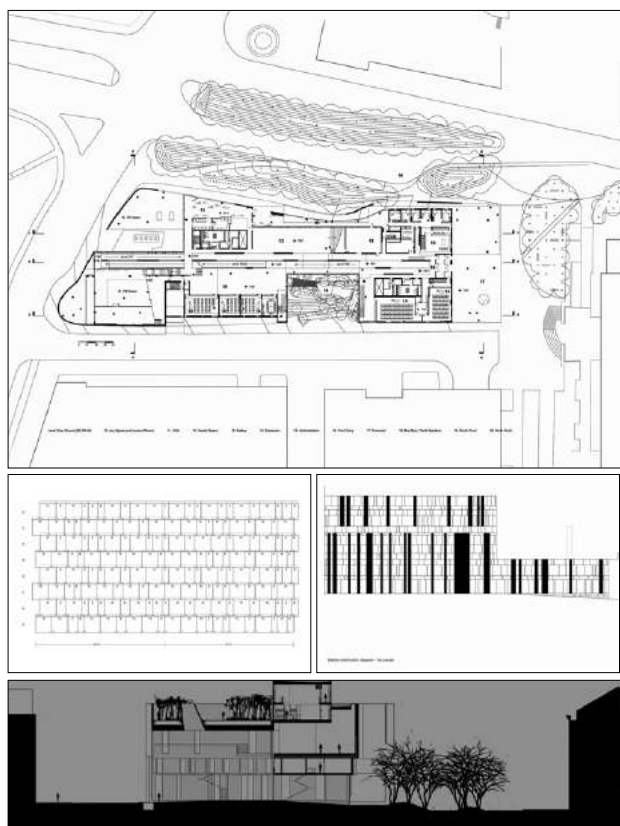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건축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큰 대학으로 600명의 건축대학생들을 수용하며 1998년에 설계하여 2004년에 완공된 작품이다. 오하이오 주립대는 80년대에 피터 아이젠만이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

였으며, 1980년대에 해체주의로 가는 3개의 혁신적인 건물의 하나인 아이젠만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예술센터(1989)가 학교 정문 부근에 있고, 시내에는 아이젠만이 설계한 해체주의계열의 콜럼버스 컨벤션 센터가 있는 건축적으로 매우 자부심이 강한 학교이다.

신축 건축대학 현장은 Woodruff가와 Tuttle Park의 강과 축구 경기장에 가까운 기존 캠퍼스의 서쪽 경계에 위치한다. 남쪽으로는 콘크리트 주차 차고를, 북쪽으로는 차분한 적색 벽돌 건물의 경영대와 맞닿아 있으며, 동쪽에는 실험실 건물이, 서쪽에는 주요 캠퍼스 통행 도로로 둘러싸인 텅 빈 경기장 주차장이 있어 대지는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건축과 조경 그리고 통합적 도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역이다.

건축대학이 학생은 물론 크게는 지역사회에 모범으로써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신축 학교의 건축 형태와 사회적 입지는 전략적으로 활동적이고 상호 작용적이다. 또한 인접 건물들의 외관이 학교 현장의 공간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대규모 현장의 공간과 기존 건물들을 둘러싸고 경계를 정의하여 대립시킴으로써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학교에서부터 북쪽과 대학 캠퍼스 사이의 조경공간은 도로와 통행 활동의 혼잡함과 활동성 모두를 조정하고 있다. 스튜디오는 새롭게 포착된 공간을 멀리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형태를 구축하고 영향을 미치게 될 도시 활동의 한 가운데에 있게 된다.



건축대학은 설계 초기 작업부터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스코킨은 말했다. 이 건물 신축을 위한 기부자는 건물의 주재료를 조지안 마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 측에 기부금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건물에 마블의 사용을 매우 주저하였다. 적절한 대안이 없어 학교 측과 한동안 대화가 단절돼 설계가 중단되는 봉착상태였을 때에 작가는 기존 마블과 다른 입면의 디자인을 제시하여 목재의(마블 싱글) 느낌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작가는 말하길 조정자로서 건축가는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기존과 주 출입구에는 수직의 순환 통로가 시작된다. 경사면 시스템은 위쪽으로 건물을 통과하여 움직임으로써 스튜디오를 지나 이어지는 공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수연구실 순환 형태를 따라 위치하여 스튜디오에서 가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일상 작업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학교로 이르는 수직 경로의 마지막 건물은 도서관으로 30,000권을 보유하고 일반열람실과 참고 열람실을 갖추었다. 도서관의 옥상 정원은 아래에 있는 앞 마당까지 이어져 경사면이 시작점보다 높게 끝나게 된다. 아간에는 유리 벽의 도서관이 찬란한 건축 역사는 물론 건축 교육이 지적인 추구임을 알리는 등불이 된다.

45개의 스튜디오와 65개의 사무실, 강당 및 도서관과 더불어 학교 프로그램 공간에는 목재실, 카페, 디지털 이미지 시설, 컴퓨터실, 강의실, 자료 보관소 및 전시 갤러리 등이 있다. 이 건물은 2005년 미국건축가협회 우수작품상과 2005년 포스트텐션학회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울프스버그 과학센터(Wolfsburg Science Center)

울프스버그 과학센터는 1999년 국제 초청공모전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작가 매우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 건물은 과학센터 이외에 박물관 그리고 카페를 수용하는 11,150㎡로 42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훌륭한 건축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과학은 처음에는 활발한 조사활동, 정통한 실험과 역할, 기회, 직관, 인내, 재능이 큰 부분 작용하여 이 모두가 활발한 조사활동, 정교한 실험과 역할, 기회, 직관, 인내, 재능을 요하는 발명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이는 다시 결국 뛰어난 지혜, 지적 능력, 용기, 기술, 선천적 규모 및 비례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비범한 상상력을 증명하는 기능적 응용력에 영감을 준다.

훌륭한 건축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과학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 상태를 풍요롭게 하고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하며 문화의 영혼을 상징화하고 사상을 물질화하는 동시에 이론을 합리화하고 차세대를 이롭게 하며 심오한 환경적 결과를 유발한다. 또한 상호 공존하는 실제적 차이의 공조를 통해 통합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현대 산업사회의 환상에 대한 기초 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써 구축될 과학의 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비적인 비례를 통합해야 한다. 작가는 Alvar Aalto와 Hans Sharoun의 건축 작업에서 인간과 자연, 시간과 공간 간의 차이를 통합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건축개념의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들 두명의 건축가는 기능과 경험의 유기적 통합으로 만들어낸 공간에서는 규범적 자연과 그 내재적 한계가 외부 세계와 완벽히 연계되는 변화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물리적 현상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창조해 내는 형태는 한편으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경과 하늘을 바라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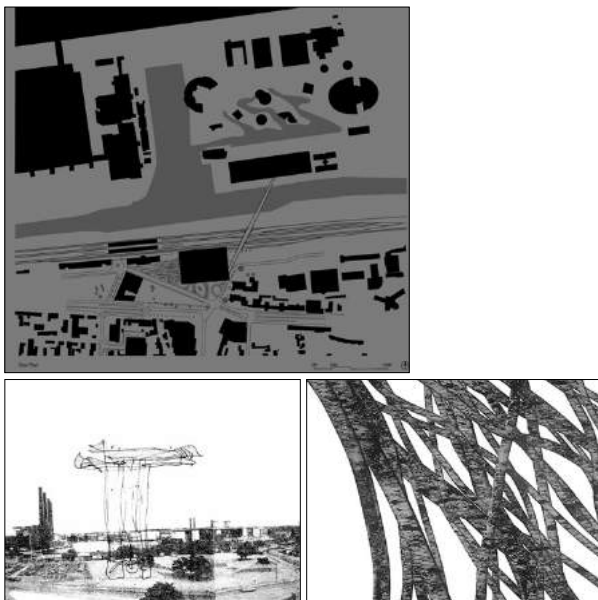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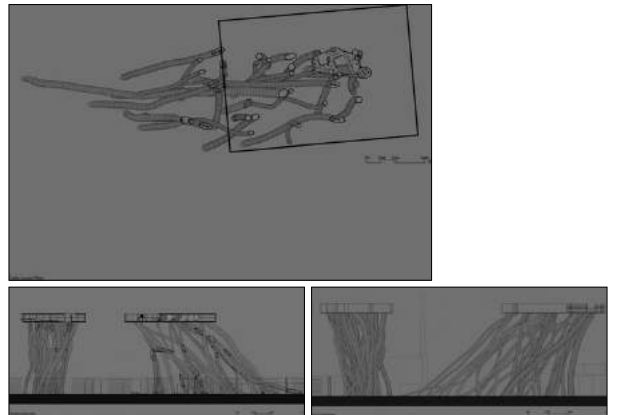
형상이 차별화 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알바 알토는 설계에 있어 “활동의 성향을 경험적 작업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형태는 “그 정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미스터리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단순한 사회적 보조와는 다른 쾌감을 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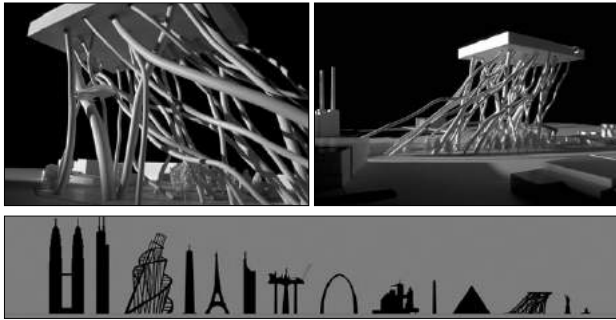
한스 샤론의 경우, 그는 “모든 사물에서(심지어 원래의 상태로 유지된다면 무 존재조차도) 형태가 없다면, 우리는 아이디어의 식물학적 과학 미로에서 식물처럼 성장할 뿐”이라고 믿는다.

울프스버그 과학센터의 설계가 훌륭한 과학과 같은 훌륭한 건축으로서 활동의 성향을 경험적 작업과 통합하며, 그 형태가 정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신념에 영감을 주고,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 경험이 지속되기를 바라고자했다.

분명한 것은 건물의 규모가 크고 훌륭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실질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현장은 소도시 규모와 국제 규모의 산업 단지 간을 중재하는 연결 입구로서 도시를 지역, 대륙, 전 세계와 연계하는 이송 방식이다. 둘째, 과학 대상은 즉시 분자와 우주의 규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무한한 것으로서 판단을 유보하고 현실과 진실 발견에의 지나치게 민감한 신념을 동시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건축이 환경과 기후 영향은 물론 접근 속도와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과학센터가 매혹적인 건물로서 상상력을 사로잡을 것이며, 흥미의 대상으로써 과학에 내재하는 궁금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손과 주변의 정글만으로도 충분히 볼거리가 되고 기념비 일 것이다. 경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중심이 실제로 지탱하는지, 중심이 어떻게 냉난방 되는지, 또한 바람과 전광을 어떻게 포착하는 지들을 발견하는 것 또한 볼거리가 될 수 있다. 과학과 발명의 세계를 소개함으로써 Wolfsburg시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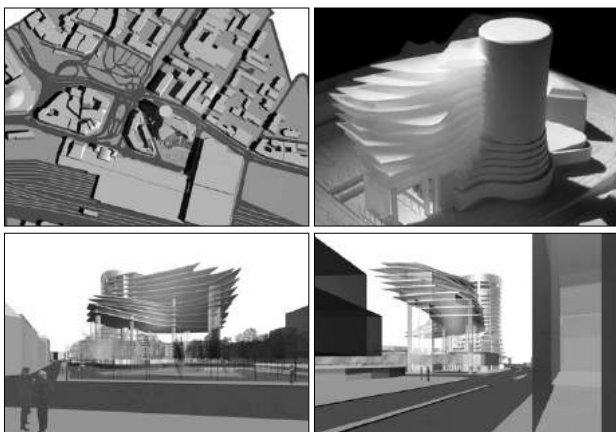


스코건은 이 건물의 디자인은 기존에 지어진 타틀린의 기념탑, 에펠탑, 피라미드와 비교하여 매우 안전하고 정숙한 것이라고 했다. 작품제출을 위해 미국에서 독일로 모형을 보냈을 때 독일의 세관에서 완전히 분해하여(폭발물로 오인) 공모전 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공모전의 심사가 끝난 후 6개월 뒤에 사무실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작품은 모형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위를 했다. 스코건은 다시 이 모형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전시가 가능하였다. 당선작은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 수상을 하였다.

국제 결재은행 증축(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 작품은 1998년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국제 결재은행 증축을 위한 초대 공모전으로 기존 46,450㎡의 면적에 20,067㎡를 추가하는 증축 공사이다. 이 건물의 특징은 미국 에모리 대학의 터너건물과 같이 조형적이며 날아갈 듯한 이미지로 상상력을 무한대로 자극하는 힘을 발휘한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 처리를 위해 1930년 1월 Hague 회담에서 창설된 이후 국제결재은행(BIS)은 국제적 수준에서 고유한 중앙 은행 기관이었다. 1994년 9월 이후, BIS의 이사회 직을 맡은 11개국은 그룹 텐 (G-10)을 구성하는 국가와 동일하였다. 1996~97년 아시아, 남미, 중동 및 유럽의 9개 중앙 은행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확장의 결과로, BIS는 전세계의 11명의 건축가를 초청하여 은행 기존 시설의 50% 확장 설계에의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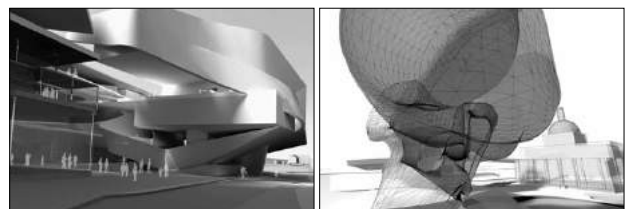
각 건축가들은 두 개의(또는 병행) 프로젝트 연구와 두 연구 모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공간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탁 받았다. 프로젝트 연구 A는 현장에 포함된 부지의 기존 법적 상태(건물과 구획 코드)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프로젝트 연구 B는 건물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현장 전체에 적용되는 기존의 건물 부지의 경계를 따라 새로운 법적 상태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프로젝트 연구 B :

계획 B에서는 구역의 지역 현장과 대도시에서의 은행 건물 형태를 재차 확인하는 건물 부지에 대한 원래의 계획 전략을 가정하였다. 은행 건물은 이러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원동력을 생성하는 것으로 현장의 북쪽 경계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이 계획은 구역에 인접한 건물의 마주보는 정도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응하며 다양한 거주 구역을 결합적이고 활동적인 총체로써 결합시키고 있다.

이 계획에서 기존 건물의 상층(7층에서 17층)을 확장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수용되었다. 이로써 세 가지 중요한 개념적, 구성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첫째, 각 상층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방 공간을 평균 2배 확장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효율성 문제를 제거하였다. 둘째, 폐쇄적이고 내관적인 조직 변화의 속성을 좀 더 개방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 및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단 하나의 고유한 건물이라는 원래의 설계적 특성을 완성하는 동시에 주변의 도시적 배경과 균형을 이루는 매력적인 정원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들 3작품이외에도 이번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전시된 것 중에 매우 조형적인 피츠버그 어린이 박물관, 코네티컷대학 예술센터 등은 건축의 내용과 형태에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으나 지면 관계상 소개할 수 없어 아쉽다.



코네티컷대학 예술센터

피츠버그 어린이 박물관

■ 베르나드 프랑켄(Bernhard Franken)

베르나드 프랑켄은 2000년 건축가 그룹(ABB Architekten)에 합류함으로써 그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건축가 그룹 ABB Architekten은 195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ank, 루프트한자 747기종 격납고(Lufthansa 747 hanger), 드레스너 은행(Dresdner Bank)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경향의 베르나드 프랑켄이 함께 그룹에 합류하면서 건축분야는 물론 미디어 작업, CI 분야까지 미디어를 활용한 포괄적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그룹은 전통적인 영역에서의 CI광고, 로고, 인터넷 프레젠테이션을 감성적 관심에 호소하는 단일 브랜드 세계를 촉발시키면서 더욱 발전을 하게 된다.

베른하르트 프랑켄은 설계과정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건축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형태를 디자인하는 건축가이며 동시에 기술자이기도 하다. 프랑켄은 고유한 건축적 어휘와 철학적 개념의 소유자이며, 2001년 BMW자동차 전시관 디자인을 계기로 2002년부터 자신의 설계사무실 Franken Architekten을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많지 않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상경력 그리고 특이하게 그의 작품은 쿵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 피터 쿡(Peter Cook) 등 건축가들과 함께 이태리, 러시아, 독일, 일본에서 많이 전시했다. 특히 MIT미술관이 주관하는 2005년 세계 건축가들의 작품전시회에 선정되어 자하 하디드에 이어 금년 말에 그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그의 이번 부산 전시는 작은 이미지들과 텍스트 그리고 영상이 혼재되어 끝없이 두르는 순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높이 60cm, 길이 51m에 달하는 연속된 이미지의 중간 공간에는 3차원의 영상으로 작품의 개념을 보여주며 지루함과 단조함을 벗어나 역동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직접체험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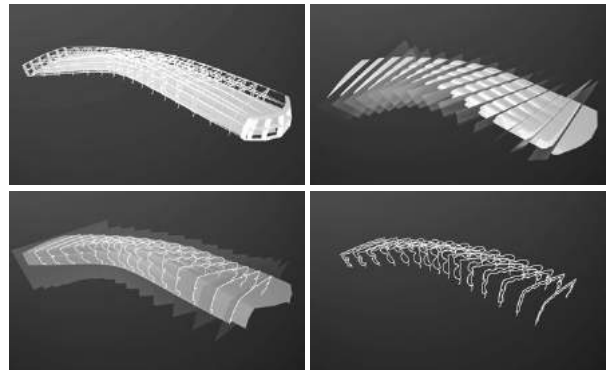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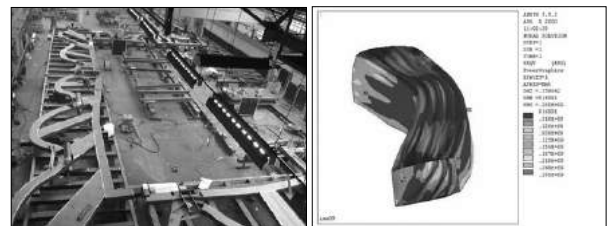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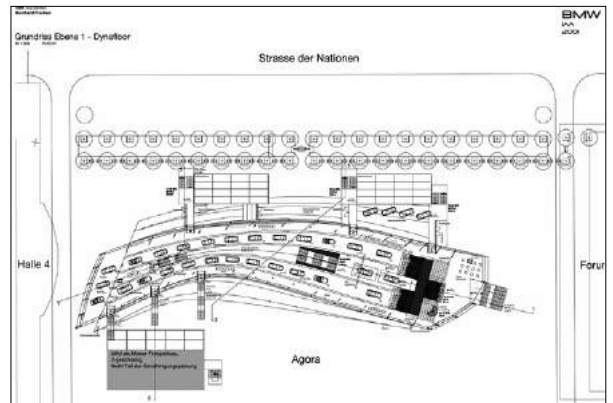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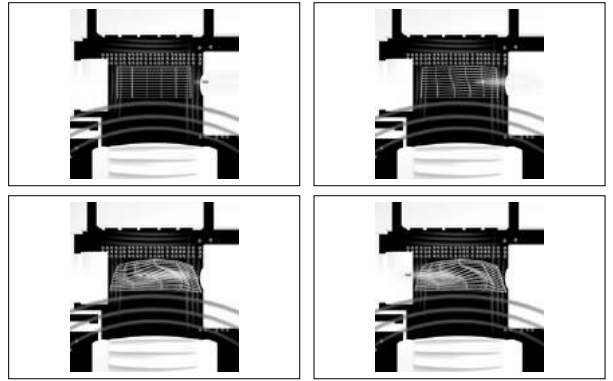
프랑켄 전시장내부모습

IT기술과 건축적 형태

어떤 생산품의 진열을 위한 건축공간은 단순한 제품의 진열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부가적으로 배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총체적 이미지가 건축형태와 공간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건축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건축적 형태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IT기술을 접목하려는 경향이다. 건축가 그룹 ABB와 프랑켄은 BMW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시장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비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BMW자동차 전시장: 다이나폼(Dynaform)

200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다이나폼(Dynaform)은 BMW자동차 전시관으로 BMW 회사의 대표적 이미지 '드라이브의 즐거움(the enjoy of driving)'을 IT기술과 접목하여 건축화 한 작품이다. 자동차의 동적인 부분과 배경의 정적인 부분을 병치하고 주행하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도플러 효과가 도입된다. 이 효과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를 건



축적 형태와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시된 자동차를 오브제로 두고 자동차의 역동성을 자유로운 건축 형태로 구성하여 그 배경으로 한 전시공간이다. BMW의 역동성을 자유로운 건축의 형태로 구체화 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재료보다는 멤브레인, 섬유유리, 아크릴 슬래브, 고무 등 첨단 자동차 기술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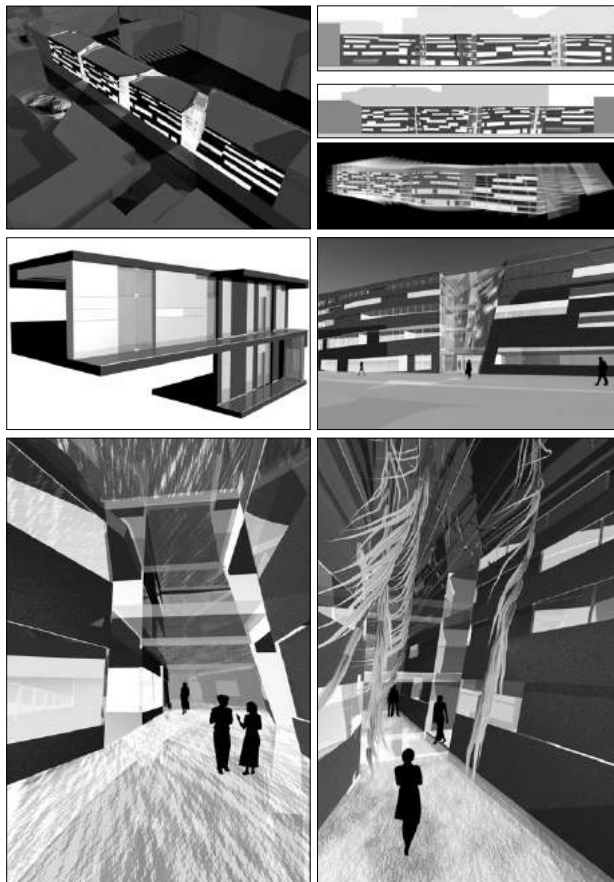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주변이 갖고 있는 도시 및 건축적 맥락을 시뮬레이션 기본조건으로 설정하고 직교 그리드로 구성된 매트릭스의 튜브속에 자동차를 주행시킴으로써 힘의 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그리드의 변형 곡선을 추출하여 이미지화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적인 형태를 도출하였다.

아이슬랜드 정부청사(Ministerial Building in Reykjavik, Iceland)

인간은 힘이나 에너지를 직접 손에 넣을 수 없다. 인간은 단지 힘과 에너지가 그들에게 작용하는 영향에 따른 결론을 가시화할 따름이다. 인간은 경험에 의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인간의 감지능력은 에너지에 의존적이며, 형태를 해석하는 데 그들을 이용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인간은 구성된 형태를 통하여 에너지의 근원을 찾아 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에너지의 물리적 현상을 건축 형태와 공간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이 프랑켄의 주요 건축적 컨셉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화산의 용암과 골짜기가 많은 아이슬랜드의 특별한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요소로 추출하고 건축 형태화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아이슬랜드의 주요 요소인 물, 지열과 토종 식물들이 은유적으로 건축에 표현되었다.

직교하는 그리드를 설정하고 블록형태의 기존 건물들을 장방형의 직사각형 형태로 연결하였다. 용암바위와 서로 이웃해 있는 두 개의 중정을 선택하여 3개의 지점에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부여하여, 이러한 물리적 현상에 의하여 직교한 그리드의 변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힘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드의 변형 곡선들이 자연에서 바위언덕 사

이에 생성되는 골짜기처럼 장방형의 직사각형 건축물에 수직적 틈새를 형성하면서 건물은 4개의 부분으로 분절된다. 건물 사이에 만들어진 수직적 틈은 아이슬랜드를 상징하는 요소가 각각 내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연속과 상시적 변화를 의미하는 물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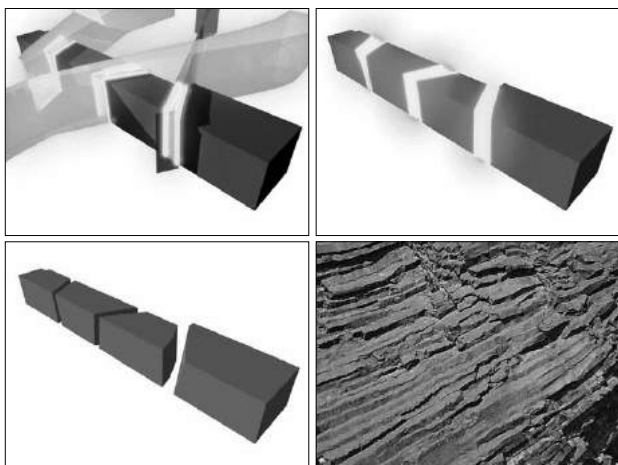


건축물 입면은 현무암의 수평적 단층과 틈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창문은 이러한 단층에서 투명한 물줄기가 틈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되도록 표현하였다.

부산디자인센터(Busan Desig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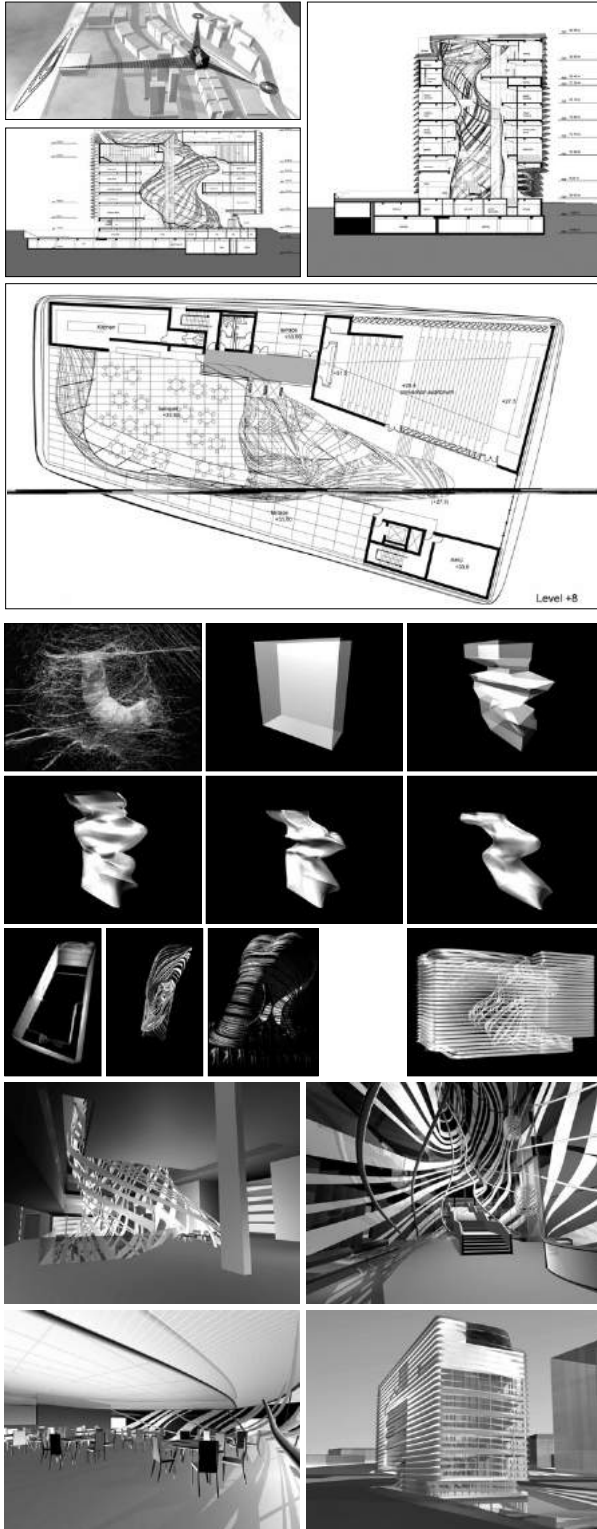
제2의 피부로서의 옷은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1차적인 요구와 인간의 개성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건축물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공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요구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외피는 인간에 있어 옷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누에고치는 자신의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외피를 만들고 1차적인 보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외피의 미학적 해석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옷의 구성과 같이 섬세한 단위조직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디자인센터는 건물 내부에 인간의 형상을 한 아트 리움을 두었으며, 무형의 천이 인간 형상의 불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건



축적 형태를 완성하였다.

건축물 입면은 디자인센터가 입지한 주변 환경의 자연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속도 등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여 얻어진 결과로



무형의 천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자연적 형태와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 조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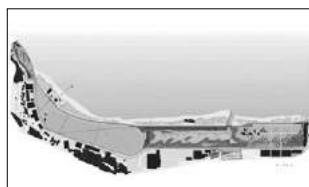
조지 하그리브스는 1986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조경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두고 공원, 워터프런트, 도시설계, 공공의 조경디자인, 스포츠시설 옥외공간 등 26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그는 국제적으로 조경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며 많은 공모전에서의 당선 그리고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초대작품전등 많은 전시를 하였다.

하그리브스는 현대의 공간에서 장소성을 강조하며 과학적,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비, 그림자, 물, 하늘 등 장소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조경과 외부공간에서 중요한 활용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는 “예술이 오늘날의 생태학자와 상업주의자들 사이의 충돌을 중재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면서, 기능중심의 외부공간에서 자연의 본질이 간과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하그리브스는 자연을 기능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본질, 즉 장소성, 지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만들어진 결과물 그 자체(thing in-itself) 보다는 자연의 계속적인 형성과정(ongoing process)을 중요시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하나의 무대(setting)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도록 했다.

하그리브스는 자연과 환경을 그의 디자인에 재현하기 위해 모더니즘 이후 조경을 보다 외부 지향적으로 만들고 의한 변화의 과정과 부지의 고유한 특성에서 이끌어 나오는 의미들을 조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하그리브스는 조경을 “문화와 자연의 만남의 장”이라고 표현한다. 즉, 자연을 문화적 요소(cultural resources)와 자연적 요소(natural resources)로 구분하여 인간의 만남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 주변 환경의 관계, 문화적 맥락을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실제로, 모더니즘의 기능에 의한 대부분의 공원이 단일의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디자인 되었다고 하그리브스는 주장했다. 그것을 탈피하여 그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콘서트를 보고, 게임을 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공원을 보았을 때 그 공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개념은 그의 디자인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공간의 본질은 공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그리고 지각하는 사물들 간에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그리브스에게 세계는 사물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공간과 공간의 관계,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에 더 우위를 두고있다.

이번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전시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기저에는 입지 특성과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유동성이 바탕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순간을 돌이켜보으로써, 하그리브스는 본 작업 전시 물들을 고찰하고 Markings(SFMOMA)나 동경 혁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통일된 조경 해석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직관에 의해 조경의 근본적 측정 개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프로그램을 완전히, 일부 경우에는 다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된입체적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커의 복합적인 의미에는 상징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인 샘의 역할을 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물의 세척 체제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또는 역사적인 비행장이 국가적 기념비로써 구상화되었으나 지역사회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Crissy Field를 지적할 수도 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주제는 물론 해석과 측정이 존재한다. 하나의 해석과 측정이 지배적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모두가 전략적으로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전반적인 설계 전략이 어떻게든 간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작업물을 지지해주는 여러 범주의 아이디어를 균형화하는 지지목과도 같다.



Crissy Field 배치도



Crissy Field 전경



Crissy Field 공원전경



Crissy Field 공원전경



동경혁신박물관



샌프란시스코 Markings

2000 시드니 올림픽경기장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의 공공지역 초기 개념디자인은 8주 동안 올림픽 조직위사무국, 건축가, 많은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발전되었다. 대지내에 건물 프로그램은 스타디움, 경기장, 수영장, 선수촌 센터, 전시홀, 철도와 패리 터미널과 같은 주된 인프라 등 이었다. 친숙한 공간에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며 아주 잘 정의된 도시 조경에서 공공지역의 디자인은 적절히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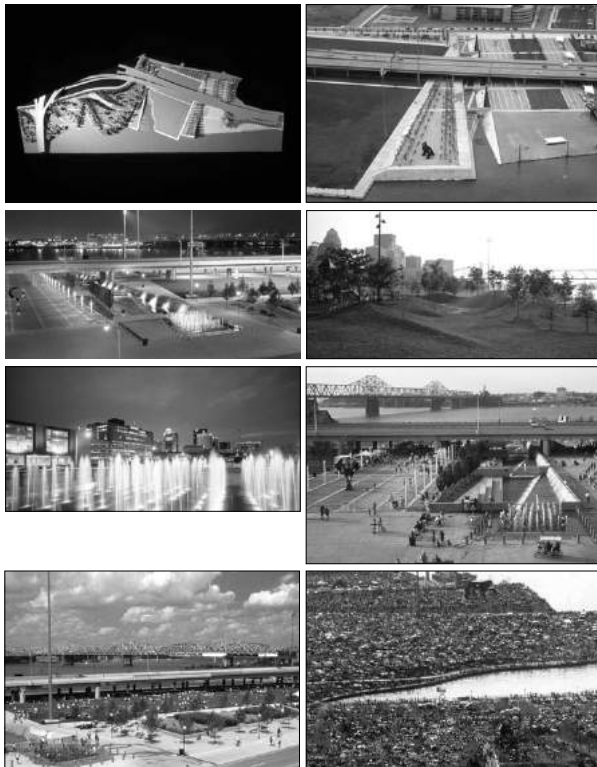
이곳은 9.5 hectares(23.47 acres)의 규모로 300,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담한 규모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래 조경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루이빌 워터프런트공원(Louisville Watfront Park)

마스터플랜과 공원디자인은 루이빌과 오키오 강을 연결시켜 버려진 120에이커의 산업지역의 워터프런트를 재생시켰다. 92,903m²의 주거, 사무소, 이립 소비 공간이 12에이커의 경사지 잔디위에 위치해있다. 공원은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공의 모임 장소, 패스티벌 플라자가 있으며 사람들을 강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도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수가 있다. 강줄기의 토지 형태는 강의 수면보다 높게 위치해 있는 운동장으로부터 강과 도시의 훌륭한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이 수변공간은 다양

하고 유연성 있고 계획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원은 홍수 조절의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로 확대되는 도시로부터 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념의 정원과 함께 크고 공공의 강을 전면에 두며 새로운 도서관과 박물관을 배치하였다. 圖



빌 클린턴 대통령 센터와 공원(William J. Clinton Presidential Center and Park)

아주 큰 30에이커의 강가에 있는 대통령 기념도서관, 박물관, 공원은 미국 알칸사(Arkansas)주 리틀 락(Little Rock)시의 중심가와 가까이 위치해 있다. 디자인은 경사진 잔디공간, 축제의 공간, 공적이고 사적인 개



최 동 규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kyu, KIRA

건축사사무소 경영의 실상

Report on the Manag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Firms

지금 건축계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 같다.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 즉 부자와 빈자가 양극으로 갈라지고, 중간층이 무너지고 없듯이 일이 밀려 바쁜 대형사무실과 일이 없어 절절매는 소형사무실만 존재할 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지만 방금 한 말은 통계자료에 근거한 말이 아니고 주위의 상황을 놓고 한 말이다. 사무실 운영을 함에 장부 없이 하는 사무실이야 없겠지만 매 프로젝트마다 얼마나 남고 밀지는지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손익을 철저히 계산하여 다음해를 대비하는 사무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지난번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신규건축사 면허취득자 교육 시 위와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유 결선생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사무실의 누적된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유선생 말씀인즉 본인이 근무하던 멤버의 사무실은 30명 정도의 규모인데도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각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지출상황을 낱날이 기록한 서류를 가지고 프로젝트 인원배분 및 진행속도를 채근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무실들도 이렇게 되어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동안 해왔던 자료를 일부 공개하려고 한다. 이보다 더 정밀하게 운영하는 사무실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다. <필자 주>

적정 설계비 산정방법

건축사협회 요율 표적용 산정방법

이 방법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표까지 나오게 되어있다.

필자는 건축사협회 요율 적용표를 적용한 금액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필자가 그동안 해온 자료를 토대로 상기 금액의 몇 % 범위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누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동종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미리 대비한다. 누적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선후배에게 물어 사전에 최저금액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그 금액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것은 분명하다.

실비정산방식의 설계비 산정

한동안 써먹었던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주택설계를 맡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건축사와 건축사보가 공동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계획〉

건축사1인x20일/22일x300만원x13개월/12월x계수3 ---- 886.36만원

(실제로 한 달에 22일정도 밖에 일하지 않는다. 13개월을 곱하는 이유는 1년에 1개월의 퇴직금을 더 주기 때문이다. 계수 3은 실제로 직원 급료를 1로 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 3으로 보는 것이다. 이 계수는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설계경기를 많이 해서 실패가 많을수록 계수가 높아지게 된다.)

건축사보1인x3개월x150만원x13월/12월x계수3 --- 1,462.5만원

실시설계2인x2개월x200만원x13월/12월x계수3 --- 1,299.99만원

소계 3,648.85만원 - (1)

설비, 전기, 구조 각150만원x3개 분야 ----- 450만원

조경, 조명, 정화조 일식----- 300만원

소계 750만원 - (2)

공과잡비(1)+(2)=4398.85만원의15% ----- 659.83만원 - (3)

(1) + (2) + (3) ----- 5,058.68만원

상기금액을 보면 설계비만 평당 50만원이 초과된다. 실제로 외주비도 넉넉하게 잡은 것이 아닐뿐더러 계획을 오랫동안 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상기 금액도 부족할 것이다. 모 건축사는 주택 한 채 설계하는데 1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감리비를 이런 방식으로 산정해보자.

실비로 산정하는 감리비 방식

상기 주택 같은 경우 건축주는 분명 꼼꼼하게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수시로 건축사에게 부탁하여 현장을 봐달라고 할 것이 명확할진대 사전에 비용계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장이 한 시간 거리

에 있다고 가정하자. 공사기간을 10개월 정도 가정한다. 실제로 이정도 소요되는 고급주택은 비밀비재하다.

완성 때까지 주1회 방문감리 가정

1년 52주를 12월로 나누면 4.33주/월이 된다.

200만원 급료의 건축사보가 주1회 현장 방문한다고 가정한다.

왕복 2시간, 현장회의 2시간, 사무실에서 보조 작업 2시간, 가정하면 총 6시간 소요된다.

200만원x13개월/12개월/22일/8시간x6시간x계수3.7 -- 27.33만원

(건축사보 주1회 감리 시 비용)

여기서 계수 3.7은 우리사무실 2004년도를 기준한 공통경비 계수이다.

27.33만원x4.33회 ----- 118.34만원 -(1)

(건축사보 1개월 주1회 감리 시 비용)

건축사는 주 1회 감리한다고 가정한다. 건축사 급료를 300만원 밖에 치지 않은 것은 20대 후반에 면허취득하고 개업한 건축사의 급료를 요즘 상황에 맞게 가정해본 것이다.

300만원x13개월/12개월/22일/8시간x4시간x계수3.7 -- 27.33만원

(건축사 주 1회 감리시 비용/사무실에서의 작업시간은 제외할 경우 건축사보의 1회 출장감리 비용과 일치한다)

27.33만원x4.33회/월 ----- 118.34만원 - (2)

(1) + (2) ----- 236.68만원/월,

(건축사보 매주 1회, 건축사 매주1회 방문 시)

마감공사 시 건축사보가 상주하여 감리해야 완성도 높은 집이 만들어진다.

건축사보 상주 시의 비용 산출은 다음과 같다.

216.66만원x계수3.7 ----- 801.64만원/월(A)

(건축사보 상주 시 비용)

만약에 너무 높은 감리비 때문에 건축주가 곤란해 하면 상주대신 매일 출장감리로 비용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1회당 출장감리비가 27.33만원x22일/월 ----- 601.26만원(B)

(건축사보 매일 출장감리의 경우 비용)

이것도 높다고 하면 주3회 감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27.33만원x3회x4.33주/월 ----- 355.02만원/월(C)

(건축사보주3회 출장감리 시 비용)

이 방법은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건축사가 매주 1회 수시감리로 보완한다고 가정하면

27.33만원x4.33회/월 ----- 118.34만원/월(D)

결국(C)+(D) ----- 473.36만원(E)

(건축사 매주 1회 및 건축사보 매주 3회 출장감리 시)

건축사보 상주감리금액과 맞먹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건축사의 몸값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아도 실제로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건축주는 물론 건축사 자체도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 직원과 본인의 행동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직도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전기 및 설비 구조 등의 협력업체의 현장 방문비용은 일체 고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한도의 질을 고려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설비, 전기, 구조, 조정 공사기간 중 3회 방문 가정 시

각50만원x3회x4분야 ----- 600만원(F)

E방법 DF 채택하고 (F)의 비용을 추가하면

792.87X10개월+600만원 -- 8,528.7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된다.

(E)473.36만원X10개월 ----- 4,733.6만원

+각 분야 감리비 600만원=5,333.6만원이 된다.

설계비 5,058.8만원+감리비5,333.6만원 ----- 10,392.4만원

즉 평당 100만원의 설계, 감리비가 된다. 결론은 주택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이만한 금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밀지고 적당히 모호한 행동을 해가며 감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기 기술은 여러분이 행동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보여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감리전문 회사 같은 경우 더욱 철저하게 소요되는 금원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요율표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소모되는 행동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수지확인 방법

진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익손해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물론 이 일도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만 진실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이 얼마만의 기간 내에 끝을 내야 하는지 알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2,500평 규모의 교회를 설계비 3억원에 맡았다고 가정하자. 1단계 계획이 있고 그 다음단계에 허가 및 실시설계 순서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1단계 계획(3억원 중 계획비용을 25% 가정 7,500만원이 된다)

건축사 1인 400만원, 건축사보 250만원, 건축사보 200만원, 3인이 계획을 완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7,500만원에는 공통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7,500만원을 계수 3.7로 나누면

7,500만원/3.7 -- 2,027.03만원(순수 급료)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2,027.03만원을 1,137.5만원으로 나누면 1.78개월에 종료해야만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 1.78개월이면 작업일수 1개월+17일(0.78x22일/월)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상가비용에서 모형작업, CG작업비용 등을 먼저 공제한 후 인건비로 나누면 기간이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딱히 건축사는 며칠간만 작업하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주 계산을 뽑아보면서 진행을 독려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단계계획 실시설계단계도 합리적인 팀워크를 짜되 그들의 급료를 기준으로 몇 달 안에 끝내야 되는지 가능할 수 있다. 실시설계를 얼마 만에 종료시켜야 될지는 의외로 간단하게 짚어 볼 수 있다.

우선 각종 외주비를 먼저 산정한다.

구조, 설비, 전기 각 6,000원x2,500평x3분야 ----- 4,500만원

조정, 정화조, 토목설계비 (500만원+150만원+1200만원) -- 1,850만원

허가수속 1인x25일x250만원/22일x계수3.7 --- 1,051.14만원

(기간은 가정한 것임)

소계 7,401.14만원 - (2)

계획소모비용 ----- 7,500만원 - (1)

(1) + (2) ----- 1,4901.14만원

30,000만원-14,901.14만원 ----- 15,098.86만원

(실시설계에 소모할 수 있는 비용)

건축사보 300만원, 250만원(A), 250만원(B), 200만원(C) 이렇게 진용을 찢다면 이들의 급료 합계는 1,050만원X13개월/12개월 --- 1,137.5만원이 된다. 여기에 계수 3.7을 감안하면 4,208.75만원이 된다. 15,098.86만원을 4,208.75만원으로 나누면 3.59개월이 된다. 즉 3개월 13일(0.59월x22일)내에 끝을 내야한다는 것이고, 매주 이를 검토해가면서 독려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별 실적표

다음에는 실제로 수행했던 실적표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 적자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2005년도 상반기 KES부장 사업실적표

사업 / 목차	YS 교회	2004	2003	2002	계		EPch.설변			EP 교회	2004	2003 경가설계	계	결 론
지출	945.18	1,982.32	903.72	461.23	4,292.45		518.28			1,425.86	3,484.32	273.452	5,183.63	2,557평 건축의경우
인건비	2,024.16	1,404.4	2,551.19	289.024	6,268.77		1,200.75			815.98	4,195.70	974.69	5,986.37	24,097.3만원 이하야함
공통경비	2,777.47	3,931.0	5,453.31	511.53	12,673.31		1,647.62			1,119.65	11,744.09	0	12,683.74	평당 9.42만원
계	5,746.81	7,317.72	8,908.22	1,261.78	2,3234.53		3,365.65			3,361.49	19,424.11	1,248.14	2,4033.74	이되야함
수입	2,000	6,045	5,239.0	2,167.20	1,5451.20		1,760 (설계 변경비 1차)			2,432.73만원 1,800 감리비	15,927.27	0	18,360만원 1,800만(감) 계 20,160 만원	설계비 총액18,360만원 24,097.3만원이 정상
판정	-3,746.81	-1,272. 72	-3,669.22	+905.42	-7,783.33		-1,606.65			+871.24	-3,496.84	-1,248.15	-3,873.75	설계계약 2.04억 원(v별도)잔 2,040만원 잔

* YS교회는 2002년에 설계경기로 시작하여 현재 공사 중인 프로젝트인데, 현재 무려 7,783만원이나 손해가 발생했다. 실제로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인데 계약서 상에는 상주감리에 대한 의무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야 상주감리 대상이지만, 민간 계약베이스에서는 상주안해도 되는 것이다. 건축주는 상주감리 대상 건물이라고 상주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무계약에 의한 것이라 법적으로 따지면 건축주가 진다. 건축주는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 안하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인다. 1,527평에 23,234.53만원이 현재 상태 손익 분기점이니 평당 현재로도 15만원꼴, 감리 끝날 때까지 감안하면 20만원이 적정하다.

* EPch. 설계변경은 최초의 설계비가 2.04억원인데 설계변경 내용이 많아져 설계비의 60% 수준이 되었다. 건축주측은 설계변경비가 왜 그리 많냐고 불평할뿐 더러 마치 무우 배추 값 깎듯이 반 토막으로 깎으려고 덤비는 것이었다. 결국 한번 깎여서 8,800만원에 했는데, 결국 일해주고 남지도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은 건축주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밑지는 가격은 밑지도 말고 안하면 되는 것이다. 2,557평으로 현재 상태 24,033.75만원가 손익분기점으로 공사비 97.27억원 (부가세제외)의 2.47%이나 외주비 미지급 등을 고려하면 설계비만 3%가 적정선, 감리비는 2%가 적정하다.

	IS교회	2004	계	연면적1만 평으로증평	DB 교회	2004	2003	계		YAS교회	2002	2001	계	계약면적 2,387평
지출	238.44	915.29	1,153.73	재계약 해아됨	788.51	831.33	0.16	1,620.0		11.90	400	628.06	1,039.96	9만원 (v별도)
인건비	931.94	1,754.26	2,686.20	9만원	614.57	1,835.80	106.56	2,556.93		588.91	0	786.50	1,375.41	계약시 20%
공통경비	1,278.77	3,789.18	5,067.95	05/07/20 현재	843.29	5,138.54	0	5981.83		808.08	0	1,395.28	2,203.36	4,206.6만원 수금(7월)
계	2,449.15	6,458.73	8,907.88		2,246.37	7,805.6	106.72	10,158.69		1,408.89	400	2,809.84	4,618.73	계약금 수금으로
수입	0	9,818.18	9,818.18		4,418.18	3,954.54	0	8,372.72		0	1,000	0	1,000	거우 +587.87 만원 이익
판정	-2,449.15	+3359.45	+910.30		+2,171.81	-3,851.06	-106.72	-1,785.97		-1,408.89	+600	-2,809.84	-3,618.73	으로 판정

* ISch.건도 2004년 설계경기에 의해 선정된 것인데 1년이 지나가도록 토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다. 시간이 많으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고 하는 통에 계약금은 다 녹아 없어지고 현재 910만원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진행이 더딘 건은 아예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서 진행 하자고 해서 아예 뒤로 미루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 YAS ch.건은 2001년에 설계경기에서 선정된 건인데 2005년에야 시작이 되었고, 이번에 계약금을 받는 통에 거우 587만원 이익으로 반전되었다.

NS교회 사업수행실적표

	NS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계		
지출	354.44	838.62	416.44	180.37	2.62	363.12	223.59	253.16	5782.97	453.35	2732.86	11,601.54		
인건비	1,667.31	4,216.67	1,539.28	15.44	45.96	2,046.81	2,555.62	683.66	329.61	1595.61	4,312.54	18,978.51		
공통경비	0	0	3,290.31	27.32	258.94	3,969.43	4,241.51	1,118.34	322.28	2,193.66	8,945.38	0		
계	2,021.75	5,055.29	1,955.72	195.81	48.58	2,409.93	2,779.21	936.82	6,112.58	2,048.96	7,045.4	30,610.05		
			5,246.03	223.13	4,075.2	6,379.36	7,020.72	2,055.16	6,444.86	4,242.62	1,5990.78			
수입	1,272.72	3,818.16	1,272.72	400	0	800	1,400	600	7,400	0	4,000	20,963.60		
판정	-749.03	-1237.13	-3973.32	+176.87	-407.52	-5579.36	-5620.72	-1455.18	+955.14	-4242.62	-11990.78	-9,646.45		

* NS교회 내 인생의 10년간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질 프로젝트다. 1995년에 어떤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큰 건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 유혹했다. 그리고 커미션을 요구했다. 그 당시 작은 일반 하던 차지라 큰일에 흑해 일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건축주에게 코 꺾어 지금까지 왔고 현재 준공처리중이다. 연면적 8,500평에 15층 정도니 2년이면 끝날 일이 왜 이리 늦어졌나하면 시공사와의 계약조건이 너무나 건축주에게 일방적인 계약이라(예를 들면 준공시점이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하루에 1억원씩 차감하기로 계약한 1군 건설회사가 있었음. 결국 도중에 설계부실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없다는 핑계로 공사 중단 하고 재판까지 감) 도중에 2개의 건설사가 그만두고 세번째 건설사가 완공시킨 건축사무소 자체의 실수도 있었는데, 40m경간의 철골구조물 경험이 없다보니 도면간의 상이점이 많아 시공이 자연되게 한 일단의 책임도 없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감리까지 같이 했을 경우 실수를 보완하며 진행이 가능했을 텐데 그나마 감리는 타 회사로 맡기고 감리회사는 설계도면의 잘못만 이 잡듯이 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화 되어 일이 꼬이게 된 것이다. 3번째 시공사가 시공을 맡았을 때는 감리도 맡게 되어 어쨌든 끝을 맺게 되었다. 참고로 건축주는 각종 소송에 능하여 소송문안을 직접 쓸 정도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계약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 시금석으로 남을 건이다.

	MS성서 2005년 상반기	2004	2003 강실장담당 한단시기	2002 조차장계획 하단시기	2001	계	결론850㎡ 257평 건축으로		DS주택 2005년 상반기(감리)	2004이과 장담당실시 설계및감리	2003 강실장담당 1차계획담당	2002 정차장담당	계	결론 100평 남짓 주택 설계에
지출	50.36	1,276.92	74.33	99.56	3.1	1,504.27	손해액		17.95	1,056.34	377.48	113.99	1,565.76	-4432만원 손해라면
인건비	205.87	472.31	879.27	1,003.02	10.25	2,570.72	3,285.9만 원을		70.37	436.47	1,759.89	420.41	2,687.14	손해를 더하면
공통경비	282.49	1,273.75	1879.49	1,775.18	0	5,210.91	6,000만원에		96.56	1,177.17	3,761.86	744.06	5,779.65	1,0032만원이 되고
계	538.72	3,022.98	2,833.09	2,877.76	13.35	9,285.59	더하면9,285.9 만원이됨		184.88	2,669.98	5,899.23	1,278.47	1,0032.56	평당 100만원
수입	500	2,800	1,800	900	0	6,000	결론		0	2,363.62	2,436.36	800	5,599.98	받아야 함
판정	-38.72	-222.98	-1033.09	-1977.76	-13.35	-3,285.90	평36만/평		-184.88	-306.36	-3,462.87	-478.47	-4,432.58	

* MS연구소는 총 850㎡(257평)규모의 적은 건이나 설계, 감리비 6,000만원 받고 3,285.9만원 밀렸으니 실제로는 9,285.9원 받았어야 하는 건이다. 즉 평당 36만원 받아야 한다. 공사비는 20억원이었으니 4.6% 즉 5%받아야만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 DS주택은 100평짜리 주택이고 현장이 1시간 거리에 있는 주택설계 프로젝트였다. 1차 설계시 4,000만원 받기로 하고 진행했으나 건축주가 다시 다른 안을 원해 추가로 2,000만원을 받고 수행한 건이다. 결론은 손해액 4,432.58만원을 더하면 총액 10,032.56만원이 되어 실제로 평당 100만원이 소요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설계 맡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자중하지 바란다. 공사비는 10억원이었으니 정상설계비는 10%가 된 것이고 건축주는 설계비 많이 주고 시켰다고 생각하지 건축사가 이렇게 까지 많이 밀렸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다. 주택 설계가 재미있어서 계속 현장도 즐겁게 다녔지만 이렇게 많이 밀지게 된 것을 알고부터는 기분이 나빴다. 공사비 10억원으로 보면 설계비 10%가 적정하다.

결론적으로 수지를 따져가며 그리고 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모든 건축사가 일을 하다보면 소위 일의 숫자가 늘지는 않아도 각자가 기왕에 받던 설계비의 30%~50%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블루오션 전략이 아닌가 싶다. ㄷ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5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 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 10서' 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 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필자 주)

목	차
01_ 디자인 선례 연구 - 쉰들러의 작품 '쉰들러 쉼터' 에 관하여	
02_ 디자인 방법론 I : 부분 대칭론	
03_ 디자인 방법론 II : 비례관계	
04_ 쉰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 하우징의 배치	
05_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06_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징 가변성의 실험	

※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 졸업 후, UCL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1998년부터 미국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인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건축디자인 및 이론. 박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협회 (AIA) 하와이 건축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4회 아시아 태평양 건축 심포지엄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2년 하와이대학교 평의회 최고 교수상 수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건축대학 협의회 (ACSA) 신임 교수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는 JAAB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의 최고 논문을 수상하였다. 현재 Nexus Network Journal의 편집위원이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mmetry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A Network-Based Java Interface Model

서론

지금까지의 연재에서는 '원들러 헬터'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 작품의 역사적 의의, 공간구성 방식 및 원리들을 다루고, 다양한 주택 디자인의 변형 및 단지내의 배치를 위한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실험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근원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이 이론들의 활용분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주택건설사의 주어진 기본 평면과 건설방법에 근거해, 수요자의 기호나 요구에 맞는 주택 디자인을 수요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2D와 3D 디자인이 가능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컴퓨터와 인간을 상호 연결해주는(interface) 디자인 시스템의 개발은 기존 주택산업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매개체로 강력한 지구촌 통신수단으로 급속히 발전되어 오고 있다. 2002년 12월에 실시된 Nua Internet Surveys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망을 사용하는 세계 인구는 처음으로 6억을 넘어섰다고 한다. 2005년 현재, 그 수치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이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많은 기존의 상거래 형태가 전자상거래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의 서비스를 증대 시키고, 물품의 가격을 낮추고, 유통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Comscore Media Metrix는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수가 2002년 하반기에 약 180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주택산업의 상업적인 현주소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주택산업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부동산 중개 및 금융거래 등을 운영하는 다양한 주택 건설업자 및 중개업자들이 IT기술로부터 폭발적인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주택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정보 포털 및 전문 쇼핑몰 등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주택 관련 부품의 가격과 품질 비교,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 및 서비스가 용이해지게 되었다.

전미 부동산 중개업자(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001년 주택 구매자들의 41%가 주택을 찾기 위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찾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79%가 다음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주택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 하느냐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들의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전자상거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주택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IT기술은 주택관련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용자가 자신의 주택을 직접 평면을 디자인하거나 디자인된 것을 직접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증가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택산업에 있어서의 인터넷 관련 기술 수준은 아직 미 발달 단계이고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라인 주택디자인의 현주소

현재 주택관련 산업들은 이미 디자인된 상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쇄된 광고 책자보다도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제품을 컴퓨터 화면에서 실시간 볼 수 있는 방식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은 가구나 옷, 장난감, 액세서리 등 일 것이다. 상당수의 생활 가구들,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 재료, 스타일, 마감처리가 된 부엌가구와 같은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IT기술과 인터넷 디자인이 급속도로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는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카탈로그(catalogue)와 같은 책자의 수준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IKEA는 상품을 팔 때 상품의 다양한 폭, 높이, 마감재료의 의자와 같은 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오피스 전문 가구 업체인 Knoll은 다른 크기와 색깔과 가격, 다양한 가구

들을 사진과 도면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언뜻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나 이런 회사에서 주고 있는 정보는 수요자의 기호나 필요에 관계없이 제조회사의 상업용 욕구에 맞는 이미 기성품화 되어있는 것들이다. 인터넷 사용자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 주어진 디자인을 각자의 기호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1. knoll and IKEA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러한 디자인들은 소비자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만약 제조회사의 기초 디자인 위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특수한 기호나 필요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공된다면 더없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혁명은 주택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 산업이 증가할수록 제조업자들은 벽돌이나 시멘트를 팔 수 있는 도소매 상점보다는 이 상품들의 제공자와 수요자가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다. 주택산업에 있어서도 자동차산업이나 가구산업, 의류산업과 같이 인터넷 사용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거래시장에 제공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주택산업의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다른 산업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국내 주택산업에 있어서의 인터넷 사용은 부동산 중개업이나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정보나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비교하는 수준이다. 현재 주택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평면이 유형에 따라 제공되고 있고, 그 크기도 일정한 상품책자(catalogue)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택업자가 이미 고정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는 수요자가 주택의 평면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주택산업의 하나의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웹 포털(Web Portal)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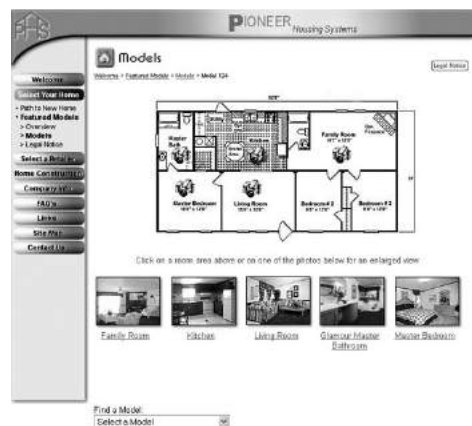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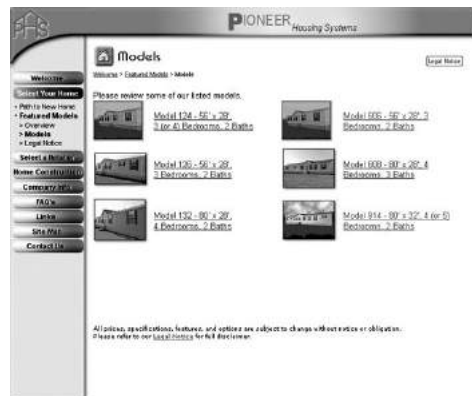


그림 2. 인터넷 하우스 홈페이지 중 파이오니어링 하우스 시스템의 예 : 이 홈페이지에서도 자사의 건설공법, 유형화된 단위 평면과 내부 사진, 가격 등을 상품책자(catalogue)의 수준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단위평면 및 주택과 차고의 결합 가능성의 논리적 산출 및 열거

단위평면은 주택건설업자들에 따라서 크기가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주택건설업자는 그들의 건설 시스템에 맞는 단위 평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제조업자들은 이 단위 평면들을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건축법에 맞게 수정한다. 이 글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단위평면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미 앞서 논의해 왔던 루돌프 쉐들러의 '쉐들러 셀터' 단위평면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 기본평면 위에 쉐들러가 사용한 여러 구성 원리들을 이용 다양한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그림 3. '쉐들러 셀터'의 네가지 기본 평면 유형

디자인의 다양성은 주택의 구성원리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조건과 차고가 주택의 어느 부위에 부가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쉐들러가 제공했던 몇 가지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쉐들러가 다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택과 차고의 공간결합의 가능성을 한정하고 그 가능성들을 나열해 본다. 잠재적으로 무수히 많은 평면들이 나올 수 있고 이 평면들은 모든 가능한 경우의 평면을 양산할 수 있다. 쉐들러 자신이 사용했듯이 여기서도 대칭원리가 주요구성원리로 적용된다.

주택과 차고의 공간결합의 가능성을 한정하고 그 가능성들을 나열해 보기로 하자. 우선,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고려해보자 : $M \times N$ 모듈을 가진 주택 그리고 $P \times Q$ 모듈을 가진 차고. 여기서 주택을 5×5 모듈로 보고 차고를 2×4 의 모듈로 보자(그림 4a 와 4b). 이 두 모듈이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즉 하나는 차고가 주택과 붙어있는 형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리된 형태이다(그림 4c 와 4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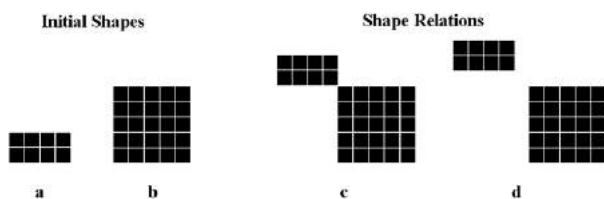


그림 4. 차고(a)와 주택(b)의 기본 모듈 그리고 주택과 차고의 두 가지 기본결합 형태(c 와 d)

차고는 주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치될 수 있고, 따라서 차고와 주

택이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형태 결합의 모든 가능성을 산출하는데 있어 앞서 논의한 대칭이론이 공간 결합과 배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ape Grammar 이론에 따르면 이 두 형태가 접합될 때 전체 가능한 결합의 가능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차고와 주택이 지니고 있는 형태의 대칭성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택과 차고가 그리드에 따라서 서로 면해 있는 경우의 형태만을 고려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과 차고가 붙어있는 경우는 8가지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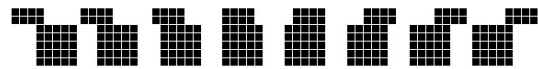


그림 5. 주택과 차고가 그리드에 따라서 서로 면해 있는 8가지의 경우

Shape Grammar 이론에 따르면 이 8가지 구성관계 중 하나가 사용되었을 때 주택과 차고가 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된다. 따라서 주택과 차고가 결합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8가지이므로 총 경우의 수는 64가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좀더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자는 다른 방정식을 고안하였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주택과 차고의 모듈을 각각 $M \times N$ 그리고 $P \times Q$ 라고 한다. $(M + N + P + Q) \times 4$ 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경우 우리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주택과 차고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얻게 된다. 즉, 주택 모듈이 5×5 그리고 차고 모듈이 4×2 이므로 주택과 차고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 + 5 + 4 + 2) \times 4 = 64$ 가 된다. 우선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차고의 옆면이 주택의 현관 앞에서 결합되어 현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비현실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능한 경우의 수 중 차고가 주택의 3면 혹은 2면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 차고가 주택의 4면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4가지가 되고 3면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0가지가 된다. 그리고 2면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종류로 나뉘는데 차고가 주택의 평행한 두면에 붙을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고 대각선 방향으로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2가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가 주택의 1면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8가지가 된다.

온라인(Online) 인터페이스 모델

위에서 논의한 기본공간구성의 64가지의 모든 가능한 디자인을 직접 하나하나 그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의미가 없고 따분하기 그

지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방법은 아마도 주어진 형태구성 이론을 갖고 모든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체계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시스템을 서론에서 논의한 IT기술을 이용한 주택 관련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택의 수요자가 자신의 주택평면을 직접 디자인 하거나 디자인 된 것을 직접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의 가능성을 시험해본다.

이 글에서는 이런 모든 가능한 형태의 디자인을 배열하기 위하여 자바 애플릿(Java Applet)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 자바 애플릿은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사용자가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각적인 컴퓨터 언어이다. 애플릿 상에서 사용자가 주어진 단위 평면을 기본으로 이것을 조작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림 6은 단위 주거 평면을 보여주는 모델의 초기화면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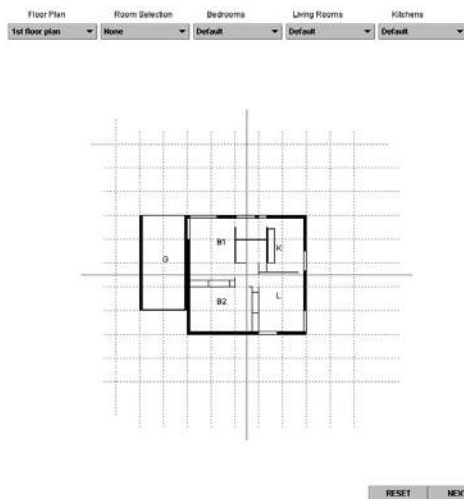


그림 6. 자바 애플릿(Java Applet) 모델의 기본 단위 평면을 보여주는 초기화면. 여기서 1층과 2층 평면도의 유형 및 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에 따라 단위 평면을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붙박이 가구 등을 포함하여 부엌이나 거실의 유형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next'란 도구박스를 누르면 사용자가 이미 설정한 기본 단위 평면을 바꿀 수 있는 도구 박스들이 주어진 화면이 나타난다(그림 7).

그림에서 보듯이 이 기본평면을 변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은 선들러가 사용한 구성언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XY 평면상에 있어서 '유사변형' (Similarity transformations)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유사변형은 모든 아이소메트릭 변형(identity, translation, rotation 그리고 reflection)에 스케일(scaling)이 부가된 변형이다. 이러한 유사변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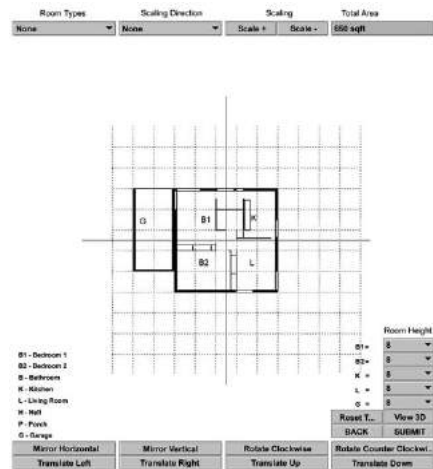


그림 7. 초기화면에서 설정한 기본 단위 평면을 변형할 수 있는 도구 박스들

도형의 각도와 라인의 평형성은 유지된다.

애플릿 모델에서의 변형은 아마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변형을 위해 선택된 방들이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선택된 방의 확장 또한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애플릿 모델의 변형은 항상 선들러가 한 것처럼 단위 그리드 위에서 변형된다. 어떠한 방이라도 확장되거나 축소될 때 그것의 크기는 두 방향 즉, 수평과 수직, 혹은 양쪽으로 팽창되거나 축소된다. 각 방의 최대한의 확장은 실무적으로 무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 왜냐하면 너무 확장되면 기능적으로 불합리해지기 때문이다.

선들러 디자인에 있어서의 어떤 방의 크기는 그의 비례체계에 준한다. 이러한 방들은 단순정수비율로 요약될 수 있다. 지난 6월호의 세 번째 연재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선들러의 시스템이 이 자바 모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모델에서 변형된 모든 방들의 비율이나 그들의 크기는 모두 단순 정수 관계의 크기이다. 예를 들면, 16 x 12 방은 그 비율이 4:3 이나 이방이 수평으로 한 모듈 확장되었을 경우 그 방의 크기는 20 x 12 피트로 되며 그 비율이 5:3이 된다. 또한 수직으로 확장했을 경우는 이방의 크기가 16 x 16 피트 즉 그 방의 비율은 1:1이 된다. 만약 이방이 수직수평 양쪽 확장되었을 경우는 20 x 16 피트의 방이 되는데 그 비율은 5:4가 된다.

방 혹은 차고, 혹은 집 전체가 회전되거나 반사될 수 있다. 그리고 선들러가 한 것처럼 차고는 이 주택의 어떠한 면에도 부가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유사변형이 일어나고 동시에 차고의 위치가 다양하게 선택되어짐으로써 이 주택의 외부형태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변형 그리고 차고가 부가되는 방법을 사용함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마도 신들러가 제안한 주거디자인의 백미일 것이다.

이 자바모델의 작동순서는 간단하고 심지어 초보자가 어려움 없이 쉽게 디자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끔 모든 체계가 그래픽화 되어있다. 처음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애플릿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평면을 보여준다. 동시에 화면의 위아래부분에 상당수의 도구 박스들이 주어진다. 이 도구박스 중에는 사용자가 단위평면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전체 단위평면이 자동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사용자는 주택이나 차고를 선택할 수 있다. 화면의 위쪽 부분들은 다양한 단위 평면들, 각방, 선택된 단위평면의 크기변형 등을 포함하는 도구박스들이 위치되고, 아래부분은 선택된 방과 차고의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는 변형 즉, 회전, 반사, 이동이 가능한 도구 박스가 위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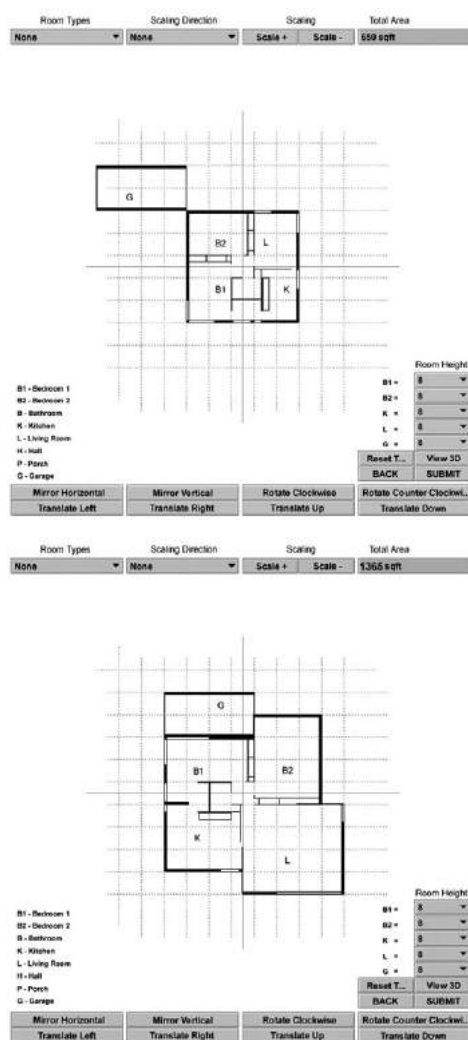


그림 8. 위, 기본 단위 평면이 회전되거나 차고가 다른 곳에 결합된 64가지 가능성 중의 한 예 아래, 여러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의 디자인 예

이 모델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동순서가 있다. 첫번째, 사용자는 그들이 원하는 단위평면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단위평면에서 두 개의 주요 구성요소 즉, 방과 차고를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가 마우스로 그 방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은 푸른색으로 변색된다. 이 말인즉, 선택된 주택이 사용자가 필요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선택된 물체를 회전, 반사, 이동이 가능한 도구박스를 선택하여 변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 후 사용자는 크기 도구박스를 사용하여 각 방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도구박스는 모든 기본변형이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자바모델은 컴퓨터 스크린 상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64가지 기본 평면을 쉽고 빠르게 수정하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기본단위평면을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변형디자인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이 자바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성 중의 하나는 단위평면의 수정 이후에 3차원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미리 만들어진 VRML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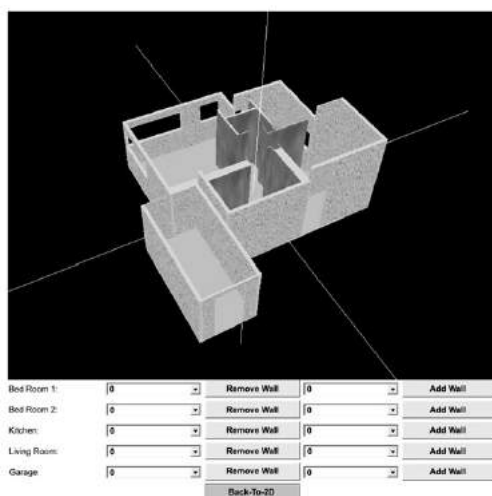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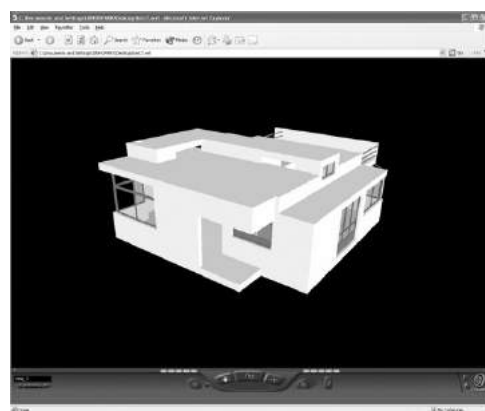


그림 9. 초기에 실험해 본 Prebuilt VRML모델과 자바 Interactive 3D 모델

델을 사용하기 보다는 2D평면과 3D모델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다. 2D 평면을 바꾸었을 때 이 자바모델은 그 형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른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3D모델을 만든다. 초기 자바화면에 있어서 3D라는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는 컴퓨터상에서 자유자재로 각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모델의 내외부를 회전하거나 확대시켜 다양한 각도와 디테일들을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각 방의 벽의 높이들은 자바모델의 2차원평면 상에서 결정된다. 어떠한 벽들은 3차원적 자바모델에서 첨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모델을 만든 이유는 3차원적 인테리어 내외부 공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시적 체계를 배가 시키기 위함이다.

새로운 헬터디자인

이러한 자바모델은 싹들러 헬터 디자인 원리를 사용하여 수많은 새로운 주거디자인을 양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단위평면이나 차고가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많은 기능성들을 확장한다. 그림 10은 자바모델에서 단순한 단위평면으로 생성되는 3가지 예를 보여준다.

첫번째 모델은 기본단위평면과 거의 유사하다. 단지 방 하나가 수직이나 수평방향으로 확장되고 차고가 다시 배치된 것이다. 이 주택의 전체 면적은 806sq/ft가 되는데 이 크기는 기본단위 평면의 면적(650sq/ft) 보다 조금 더 크다. 모든 방들의 높이는 일괄적으로 8피트로 정하였다.

두 번째 모델은 단위평면이 -90도로 회전되었고, 수직 축을 중심으로 반사되었다. 그리고 방이 양방향으로 확장되고, 또 다른 방은 수평으로만 확장되었다. 부엌 공간은 수직으로 확장되었고, 차고의 위치가 바뀌어 전체적으로는 바람개비 형태의 평면을 이룬다. 전체단위면적은 949sq/ft가

된다. 여기서 부엌과 방의 높이를 10피트로 하였고, 거실의 높이를 12피트 차고의 높이를 8피트로 조정하였다.

세 번째 모델은 기본평면을 수평축에 따라 반사시켰다. 각 방들은 확장되고, 차고가 다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는 T자 형태의 평면을 이룬다. 전체 주택면적은 1313sq/ft가 된다. 침실의 높이는 12피트가 되고 부엌과 거실은 10피트, 차고는 8피트로 유지한다.

이 각 디자인들은 '싹들러 헬터'에서 보였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운데는 홀을 두고 부엌과 욕실, 다용도실을 한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평면변형이 이루어짐을 증명해보였다. 위에서 보듯이 기하학적 변형은 다양한 형태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그 디자인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헬터의 예들은 비록 싹들러가 디자인한 것이지만 '싹들러 헬터'의 디자인처럼 보인다.

결론

앞서 연재한 '싹들러 헬터'에 대한 논의는 디자인에 내재된 구성 원리들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싹들러 헬터'를 기본 모델로 어떻게 컴퓨터 언어인 자바 애플릿을 사용하여 싹들러의 원리들을 그대로 수용, 사용함으로써 무수히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보여준다. 분명히 이 연구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주어진 원리와 언어를 가지고 생산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컴퓨터 상에서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애플릿 모델은 창조적인 도구로서 단위평면의 생성 또는 변형으로 다양한 주거평면의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 연구는 싹들러의 디자인개념, 그의 구성원리 그리고 새로운 도구인 컴퓨터 언어를 종합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을 최적화하기 적당하다.

이 모델은 컴퓨터 상에서 실시간에 거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필요나 요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직접 가상공간에서 수정하거나 만들거나 조작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것은 주거디자인 산업을 개선 혹은 가속화할 뿐 아니라 주거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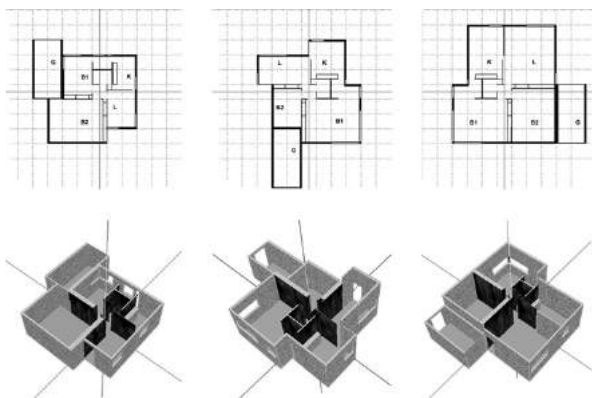


그림 10. 자바모델에서 기본 단위 평면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3가지 디자인 예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개최

■ 제10회 이사회

2005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5년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안) 승인의 건, 워크샵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명예이사 위촉 승인의 건,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에 관한 건 등이 논의 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2005전국건축사대회 답례품 및 감사패 등 제작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5년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당초예산 : 713,872,000원 → 추경예산 : 718,639,000원)
- 제2호의안 : 임의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일시차입금액 : 12,000,000원
 - ▷ 차입재원 :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임의적립금
- 제3호의안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안) 승인의 건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함.
 - 1) 예비비 사용 : 31,000,000원(이사회회비, 건축사회회장회비, 위원회회비)
 - 2) 예산 목간전용 : 보조금 → 법제도개선사업비(1,000만원)
 - 3) 예산의 목내(目内)전용 : 연구사업비, 지도사업비
 - ▷ 「연구사업비」목내의 '전통건축자료집 (사찰편) 발간 연구' 사업과 '건축물의

일조 및 조망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유보하고, 유보사업비 중 1,500만원을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해설집 발간 연구사업비'로 목내전용

▷ 「지도사업비」목내의 '공정위관련 대책사업비' 예산중 550만원을 우선 '회관지분조정관련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료'로 목내전용

4) 기타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참여」등의 반대광고 및 「회장 공약사항 추진사업」에 관하여는 예산조정을 유보함.

• 제4호의안 : 워크샵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기로 하고, 참석범위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기 간 : 2005. 7. 22(금) 23(토)

▷ 장 소 : 호텔 아리아하우스(경기도 광주시 소재)

▷ 참석범위 : 법제위원, 정책개발 TF팀

▷ 지출과목 : 법제도개선사업비(건축문화산업 경쟁력강화 정책포럼 경비)

• 제5호의안 : 명예이사 위촉 승인의 건
- 정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2일부터 회장 임기만료 시까지 다음의 인사를 명예이사로 위촉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에 관한 건
- 토요일 격주(매월 2·4번째) 휴무제를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관련규정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금년 말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 1 호 : 2005전국건축사대회 답례품 및 감사패 등 제작에 관한 건
- 답례품 지급대상 중 회원은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건설회사의 설계겸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05. 7. 14(목) 11

시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하고, 전담인원 배정 등 수임변호사의 업무 활동에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건축사회의 회장 등을 포함.

위원회 소식

■ 제9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9회 정책개발 T/F팀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17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지원에 관한 건, 설계검업 대체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지원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각 위원들이 담당하여 작성키로 함.
 - ▷ 건축문화 선언문 및 기자회견 발표문 작성 : 한명수 위원장
 - ▷ 설문조사서 작성 : 조충기, 임두기, 박종철 위원
 - ▷ 기자회견 질의회신문 작성 : 곽진훈, 강석후 위원
 - ▷ 건의문 작성 : 전영철 위원
- 제2호 : 설계검업 대체에 관한 건
 - 건축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으로 Shop drawing의 법제화(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함.
 - 건설 경제담당관실에서 건교부 T/F팀 회의(05. 6. 30) 설계검업 문제를 결론내고자 하므로 한명수 위원장이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 제10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0회 정책개발 T/F팀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20일 오후 6시에 개최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지원에 관한 건, 정책개발 T/F팀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지원에 관한 건
 - 건축문화 선언문 : 서술적인 표현보다는 선언적인 표현으로 작성키로 함.
 - 기자회견 발표문 작성 : 금일 중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로 함.
 - 설문조사서 작성
 - ▷ 설문 문항수를 20문항으로 결정
 - ▷ 추가 질문사항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하기로 함.
 - 설계검업문제(2문항) / 협회와 관련된 문제(3문항) / 국제문제(1문항)
 - ▷ 설문지 양식 크기는 A3로, 분량은 A4 사이즈 4쪽 분량으로 작성키로 함.
 - 기자회견 질의회신문 작성
 - ▷ '2005 전국건축사대회'와 관련된 문항의 내용만 발췌하여 배포하기로 함.
 - 건의문 작성
 - ▷ 작성된 건의문을 검토·보완 후 6월 21일(화) 최영집 서울건축사회회장에게 전달하기로 함.
- 제2호 : 정책개발 T/F팀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 정책개발 T/F팀 워크샵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날 짜 : 2005년 7월 15(금) ~ 7월 16일(토)
 - 장 소 : 단양(대명콘도)

■ 제11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1회 정책개발 T/F팀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역하도급 제도반 회의(6. 23)결과 대체에 관한 건과 건축문화 선언문 채택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방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업역하도급 제도반 회의(6.23)결과 대체에 관한 건
 - 회의(6/23)에서 건축설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7월 9일까지 기본 방안(1~2장)만이라도 제시하고 9월까지 종합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7월 9일까지 협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지난 T/F팀 회의(6. 17)에서 논의된 건축설계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견 중 Shop drawing을 법제화(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설계검업 허용 대안'에 대한 자료를 다음 회의시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 선언문 채택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방안에 관한 건
 - 선언문의 작성 취지 및 배경 설명 등의 내용을 각종 홍보물에 게재하기로 함.(건축사지, 서울건축사신문, 부산건축사신문, 각종 건축관련 잡지)

■ 제12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2회 정책개발 T/F팀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역하도급 제도반 회의(6/23)결과 대체에 관한 건, 건축문화 선언문 채택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방안에 관한 건, 정책개발 T/F팀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업역하도급 제도반 회의(6/23)결과 대체에 관한 건
 - '설계검업 허용 대안'에 대한 자료를 1차적으로 협회의 의견(안)으로서 정책포럼(김광현 교수)에 제시하고, 검토된 안을 최종적으로 T/F팀에서 검토한후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 선언문 채택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방안에 관한 건

- 선언문의 작성 취지 및 배경 설명 등의 내용을 각종 홍보물에 게재하기로 함.
(건축사지, 서울건축사신문, 부산건축사신문, 각종 건축관련 잡지)

• 제3호 : 정책개발 T.F팀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 워크샵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7월 15일~16일 ⇒ 7월 22일~23일로 변경

- 워크샵에서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기로 함.

▷ 법제위원회 :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조사감사업무위탁대행계약서에 대하여 대표 한사람이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 정책개발팀 : 설계검업문제(창작성설계/전문설계)에 대하여 대표 한사람이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 기타사항

- 7월 9일 설계검업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제시되면 관련 토론회를 8월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하기로 함.

▷ 대 상 : 정부, 규제개혁기획단, 본협회, 건설협회, 건설사 등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시 배포한 설문지와 관련하여 각 시도건축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취합하기로 함.

■ 제3회 홍보소위원회 회의

2005년도 제3회 홍보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경향하우징페어 참여 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 1호 : 2005경향하우징페어 참여계획에 관한 건

- 전시목적 및 방향은 건축,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여러 이벤트(건축관련서적 저자 사인회, 언론사 인터뷰 등)를 마련하기로 함.

- 전시준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별로 역할을 정하기로 함.

▷ 건축상담위원 모집 - 성건경 위원장, 이규환 위원

· 각 홍보위원은 홍보를 위해 당연직으로 전시참여를 함.

· 상담위원은 우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강남지역건축사회 및 법제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함.

▷ 전시홍보물 제작 및 전시참여요원 교육 - 이규환 위원

▷ 언론사 홍보 - 객진훈, 서용식 위원

▷ 건축관련서적 저자 섭외 - 전주희 위원

▲ 기타사항

- '건축공사 분쟁해소를 위한 계약도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되, 유종욱 위원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시 논의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2005년도 제1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자료집 작성에 관한 건, 건축설계경기 제도개선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자료집 작성에 관한 건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되, 외주방법, 검토방법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설계경기 제도개선에 관한 건
- 건축개혁 2004에서 정리된 설계경기의 내용을 사무처에서 정리하고 다음 회의에

서 문구를 일부 수정한 후 건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기로 함.

▷ 저작권과 입찰문제 등에 대해서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저작권 가입과 설계경기운영위원회 운영 등

■ 제2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2005년도 제2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협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

- Auto CAD와 관련, 유저그룹의 등록을 추진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함.

- 법규를 포함한 업무 PROCESS 등의 전문지식을 DB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월간 '건축사'를 웹진화 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제2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2005년도 제2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자료집 작성에 관한 건, 건축설계경기 제도개선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해설자료집 작성에 관한 건

- 건축법시행령 119조 부분을 먼저 발간한 후 점진적으로 건축법령집을 만들기로 하고, 위원들이 각자 편집방향 등을 연구한 후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설계경기 제도개선에 관한 건

- 건축개혁 2004에서 정리된 '설계경기제도 개선' 내용을 건교부(건설환경과, 혁신기획관)에 건의하기로 함.

■ 제4회 법제위원회 회의

2005년도 제4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향하우징페어 건축상담 서비스에 관한 건, 소위원회 구성(안) 및 활성화에 관한 건, 계약서 관련 업무수행과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건축법 의원입법안(다중이용시설 방재성능평가 신설)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경향하우징페어 건축상담 서비스에 관한 건
 - 건축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상담위원 구성 및 근무일정 등을 정하고 여성건축사회, 강남구협의회, 건축위원회 등에 협조요청을하기로 함.
- 제2호 : 소위원회 구성(안) 및 활성화에 관한 건
 - 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함.
 - 건축사법 : 한명수(소위원장), 김상호, 심우석, 이만호
 - 건축법 및 관련법 : 강석후(소위원장), 강희달, 윤혁경, 임두기, 최재웅
 - 정 관 : 장기종(소위원장), 박종철, 이규홍, 전영철
- 제3호 : 계약서 관련 업무수행과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 워크샵 목적, 주제 및 날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함.
 - ▷ 워크샵의 목적
 - 정책 및 제도 등의 방향에 대해 함께 협의하기 위함.
 - 설계겸업 문제에 대한 결론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제위원회와 정책개발TF팀이 공동으로 주치를 하

는 것임.

- 워크샵에서 논의 할 주제
 - ▷ 설계겸업 대차에 대한 대안(공람안 작성)
 - ▷ 계약서 개정(안)
- 날 짜 : 2005년 7월 22(금)~23(토) 1박 2일
- 제4호 : 건축법 의원입법안(다중이용시설 방재성능평가 신설)에 관한 건
 - 건축법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함.
 - ▷ 방재성능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이 설립되어야 함.
 -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재시험 연구소가 설립되어 방재실험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 및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해짐.
 - ▷ 방화뿐만 아니라 내진 등에 대해 성능 평가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제정되어야 함.
 - ▷ 건물, 교량 등의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함.
- 이번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설계·감리발주 방식의 목적에 맞게 BTL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함.

■ 제1회 협회발전위원회 회의

2005년도 제1회 협회발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도 위원회 사업 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년도 위원회 사업 추진에 관한 건
 - 건축사 및 협회 발전에 관한 방향 정립

- ▷ 차기 회의시에는 협회발전을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마케팅 PR 방법인 'Cost and Effective'란 주제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신건영 위원이 강사를 초빙하기로 함.

- 주요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 정관개정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협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건축사 영역의 범위

- ▷ 건축사업무대가기준 2차 토론회 결과가 건교부에 보고된 이후의 진행 결과를 사무처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 또한, 건축사영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과 관련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하되, 타 위원회(법제위원회, 홍보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소규모 건축물 시공

- ▷ 소규모 건축물 시공은 협회발전 및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기로 함.

- 건축 연구원

- ▷ 지금까지 건축연구원의 진행 사항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본 후 향후 발전방향과 인력채용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 기타사항

- 7월 11일 위원장 합동회의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한 후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위원들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차기 회의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 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7월 22일, 23일 양일간 아리아하우스호텔에서 ‘건축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건설회사 설계검업 요구에 대응하여 ‘건축설계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불합리한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워크숍에는 협회 임원, 시·도 건축사회 회장, 위원회 위원장, 정책개발 TF팀, 법제위원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 협회 당면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건설회사 설계검업문제 : 정책포럼의 제안 사항을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시·도건축사회는 시·도별 토론을 진행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조사검사업무위탁 대행계약서 : 개발 시안을 검토하여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회별로 검토하여 의견 주기로 함
- 협회 정관개정 :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지역별 인원 배분 등)/이사 수(상임 이사제 도입 등)/대의원 수 등에 대한 시·도 건축사회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건축계소식 archi-net

제23회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공모

서울특별시와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23회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응모작품을 모집 공고했다.

- 응모대상
 - 신축건축물 부문
2003. 1. 1~2004. 12. 31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의 설계자
 - 리모델링 부문
2003. 1. 1~2004. 12. 31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대수선, 증·개축된 건축물 중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의 설계자
 - 야간경관조명부문 : 2005. 6. 30 이전에 외부경관 조명이 설치된 서울시 소재 모든 경관조명시설물(건축물, 문화재, 교량, 상징물 등)의 설계자
※ 이전 수상작 제외
- 시상종류
 - 신축건축물 부문: 대상(1), 본상(1), 장려상(7)
 - 리모델링 부문 : 본상(1), 장려상(3)
 - 야간경관조명부문 : 본상(1), 장려상(5)
※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설계자 : 상장과 부상(대상 1,000만원, 본상 각500만원, 장려상 각300만원)
 - 건축주 : 기념동판
※ 수상자에 대한 특전(신축건축물·리모델링·야간경관조명부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의 경감

▷ 대상 및 본상수상작 설계자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접수기간 : 2005. 7. 20 ~2005. 8. 31
- 응모작품 제출장소
 - 신축건축물부문 및 리모델링부문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번지 예총회관 501호 (사)한국건축가협회(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도 가능)
 - 야간경관조명부문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과 직접 접수
- 건축상 시상 및 작품전시 계획
 - 시상일 : 2005. 11. 23(수)
 - 작품 전시기간 : 2005. 11. 21(월)~11. 27(일)
 - 작품 전시장소 :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1층)
※ 수상작품은 2005. 11. 21(월)~22(화) 2일간 전시 준비합니다.
- 문의
 - 신축건축물부문, 리모델링부문 : 서울시 건축과 김재영 02-3707-8252~3
 - 야간경관조명부문 : 서울시 도디자인과 박진화 02-3707-8756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김혜정 02-744-8050

제2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1979년에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Best 7)은 매 해당 연도에 완성된 건축가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여 건축가, 건축주, 시공사에게 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11월에 개최되는 '2005 대한민국건축제'에서 일반전시, 특별전시, 이벤트 등 대국민 행사와 더불어 협회상의 시상식과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부득이 선정작의 완성기간을 변경하게 되었다.

- 대상
 - 전년도(2004) 10월 1일(금)~당해연도 (2005) 9월 30일(금) 사이에 건축이 목적 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
- 제출자료
 - 작품카드양식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 작품 자료 1부 : 클리어 화일로 제출(사이즈 제한은 없음)
 - 작품 CD 제출 : 작품 개요, 계획도면, 작품 사진 4~5매 등
 -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필수)
- 접수기간 : 2005년 9월 30일 까지
- 시상 및 전시 : 2005년 11월 23일~11월 27일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 회관 501호 한국건축가협회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김중섭
02-744-8050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및 건축상 작품공모 공고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건축가회(회장 이왕기)에서 주최하여 올해 각각 16회와 17회를 맞이하는 대전광역시 건축대전과 대전광역시 건축상의 작품공모 및 수상작 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전시 및 출품기간
 - 신청서교부 : 7월 1일~9월 29일
 - 1차 작품접수 : 9월 29일 9시~12시
 - 2차 작품접수 : 10월 6일 9시~12시
 - 전시기간 : 10월 7일~10월 13일
- 출품자격
 - 건축대전부문 : 제한 없음
 - 초대작가부문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으로서 초대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 건축상 부문 : 응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설계자 및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자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주

간사를 원칙으로 함)

- 응모대상작품
 - 건축대전부문 :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유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초대작가부문 :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유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건축상 작품은 초대작가전에 동시출품 불가함)
 - 건축상 부문 : 2005년 10월 6일 이전까지 사용검사 완료된 대전광역시 관내건축물(주용도)로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설계자,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검사시점 기준으로 함)
- 발표
 - 1차 심사발표 : 2005년 9월 30일. 통과자는 개별 통지
 - 2차 심사발표 : 2005년 10월 7일. 수상자는 개별 통지
- 원서 교부 및 문의 : 건축대전, 초대작가 부분의 원서교부등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824-9981), 건축상 부문 원서교부등 상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과(600-2834)로 문의.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제2회 인천학생건축 공모전 및 제3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 개최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소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동북아 중심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의 도시 발전과 정체성 제고를 위해 '2005 인천건축문화축제'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인천일보가 주최하며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 이 축제의 일환으로 제2회 인천학생건축 공모전 및 제3회 인천도시

건축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2회 인천학생건축 공모전'은 전국 건축관련 대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작품을 통한 교류의 장려 제공하여 미래 건축계에 밑거름이 되도록 그들만의 자유로운 작품세계를 통해 인천의 미래를 확인하는 특별한 공모전이며, '제3회 도시건축사진 공모전'은 인천이라는 지역성과 장소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그 범위로 하며, 아마추어와 프로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카메라의 시각을 통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공모전이다.

■ 제2회 인천학생건축 공모전

- 주제 :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대지 : 인천광역시 전 지역
- 용도 :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소요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배치한다.
- 응모자격 : 국내대학(2~5년제) 및 대학교(석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 응모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Tel:032-437-3381~4)
- 접수기간 : 2005. 9. 5 오전 10시~ 9. 9 오후 5시(시간 엄수)
※ 단, 우편제출은 기간 내 소인에 한함.
- 심사
 - 위원 : 대학교수, 유명건축가 등 3~5인으로 구성한다.(추후 발표)
 - 1차심사 : 2005. 9. 13
 - 본심사 : 2005. 9. 27(공개 심사)
- * 본 심사는 공개 심사로 진행되며 응모자는 제출한 작품에 대하여 5분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
- 발표 : 2005. 9. 30,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www.inkira.or.kr))
- 시상 : 2005. 10. 15 13:30
- 전시
 - 기간 : 2005. 10. 14~10. 20
 - 장소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 제3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

- 주제 : 인천광역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 빛을 주제로 한 내용
- 출 품
 - 자격 : 제한없음
 - 규격 : 칼라 또는 흑백, 11'×14' Digital 사진도 가능 단, 편집이나 합성시 감점 (작품명과 소재지, 출품자의 소개서는 별도 제출)
 - 인당 3점 이내
- 접수기간 : 2005. 9. 5 오전 10시~9. 9 오후 5시(시간 엄수)
- ※ 단, 우편제출은 기간 내 소인에 한함.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032-437-3381)
- 심사
 - 위원 : 건축가, 사진작가 등 3명으로 구성하여 공개심사(추후발표)
 - 발표 : 2005. 9. 30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www.inkira.or.kr)
- 시상 : 2005. 10. 15 13:30
- 전시
 - 기간 : 2005. 10. 14 ~ 10. 20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문의 :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추진위원회, <http://www.inkira.or.kr>, 032-437-3381



2005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성남시와 함께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여일간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성남 리빙 디자인 페스티벌 2005'라는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고, 이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훌륭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장으로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일인당 한 작품만 출품가능하며,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명익는 3인 이내로 한정함)
- 작품내용 : 실내디자인에 관한 창작품
 - 실내표현을 우선으로 하는 작품
 - 실내표현의 규모에 맞는 작품
- 원서접수 : 2005년 8월 22일~9월 16일
- 작품접수
 - 1차 : 2005년 9월 12일~9월 16일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사무국
 - 2차 : 2005년 10월 25일 /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 심사일정
 - 1차 : 2005. 9. 21
 - 2차 : 2005. 10. 26
- 심사결과발표
 - 1차 : 2005. 9. 23 홈페이지에 발표(전화확인 불가)
 - 2차 : 2005. 10. 27 홈페이지에 발표 / 수상자 개별통지(전화확인 불가)
- 시상일시 : 2005. 10. 28 오전 11시 예정 (추후 공고)
- 작품전시 : 2005년 10월 28일~11월 6일 /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 문의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무국(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74 남산맨션 209호) 02-508-8037, www.kosid.or.kr

제17회 건축사진아카데미

청암건축사진연구소에서는 제17회 건축사진아카데미(APA)를 2005년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12주간 개최한다.

실무자들을 위한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카메라의 기초부터 각종 모델촬영, 현대건축물 촬영, 전통건축물 촬영 그리고 흑백사진 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서 건축답사를 병행하며 진행한다.

- 내용
 - 축사진의 이해
 - 건축을 보는 눈
 - 빛과 공간의 이해
 - 도시와 건축 촬영실습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 각종건축물의 촬영방법
 - 각종 모델촬영 및 테크닉
 - 건축답사 촬영실기 (1박 2일)
 - 흑백사진의 이해
 - 프레젠테이션
 - 포트폴리오제작
 - 종합토론 및 총평
- 기간 : 2005년 9월 7일~11월 23일(12주)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 장소 :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 참가인원 : 선착순 12명
- 참가비용 : 30만원(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입금후 이름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됨
- 문의 : 석정민 02-444-7088, www.foto.co.kr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국제아이디어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건립을 위한 국제현상설계 결과가 지난 7월 29일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UIA(국제건축가연맹)를 통해 지난 2005년 4월 27일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하였고, 2005년 6월 10일 참가등록을 마감한 결과 세계 각국 538명이 참가등록(내국인229명, 외국인 309명)한 바 있다. 이중 심사를 통해 1등과 2등 각각 5작품, 3등 10작품, 가작 4작품을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5작품은 최성희(Choi Song hee, 한국), 김정곤(Kim Jung Gon, 한국), 안나 라노바 룬트스트롬(Anna Ranova Lundstrom, 스웨덴), 앙드레 페레아(Andres Perea, 스페인), 리앙 호(Liang Hou, 벨기에)이다.

심사위원단은 김종성, 조병수, 유 길, 스텔알 렌(미), 장 마리 샤르팡디에(프), 게리 핵(미), 마티아 사이어브루흐, 켄 스미스, 마리아 데오도르(그) 등 9명의 국내외 건축가로 구성되었으며, 심사평에서는 '1등 수상작에는 건축과 조경을 융합하여 기능적 평면구성이 토포그래피 (topography)를 재형성 한다는 점, 강한 형태적 아이콘을 창출하는 점, 그리고 요구되는 기능들을 부지에 의도적으로 산재시켜 부지 전체를 하나의 조형물로 만드는 점 등이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번 공모가 국제 공모였다는 점에서 세계 건축계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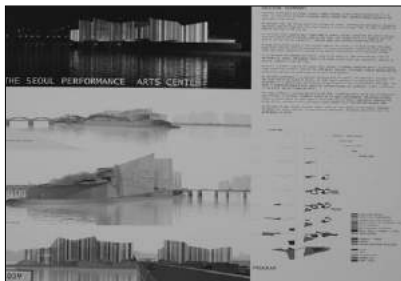
이번 국제아이디어설계경기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 5명은 7월 초 기 결정한 초빙건축가 3명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장누벨, 도미니크 베로)과 함께 총 8명의 건축가 Pool에 포함되며, 터키 입찰시 입찰건설사가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은 2005년 9월에 입찰 공고하여 2006년 3월에 기본설계적격심의 후 2006년 4월중에 우선 공사분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당선작은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며,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광화문 지하도 내 광화문에서 전시된다.

문의 : 문화예술센터 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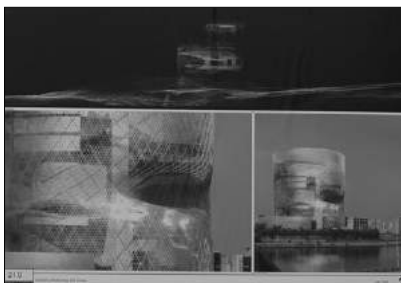
02-3707-83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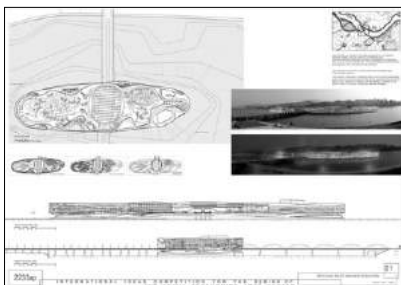
1등작 - 최성희 / 한국



1등작 - 김정곤 / 한국



1등작 - 안나 라노바 룬트스트롬 / 스웨덴



1등작 - 앙드레 페레아 / 스페인



1등작 - 리앙 호 / 벨기에

신간

조리개속의 도시 INCHEON @문화비평_건축21세기>>

이 책은 건축비평가 전진삼의 세 번째 평론집으로 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감당하는 최전선의 도시 인천을 중심소재로 한 도시와 도시문화, 도시철학 전반에 걸친 비평과 아이디어의 제안서이다. 저자는 역사적, 환경문화적으로 근대화의 과정을 앞에서 견인해온 중추 도시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통해 황금도시화의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도시개발과 디즈니랜드화의 거품도시를 문화산업이란 미명하에 확산시켜가는 각급 지자체의 현장을 주목하면서 이 시대에 건축과 도시가 어디에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를 적시한다. 국제화시대에 안팎으로 위축되는 우리 건축가의 현재적 모습을 통하여 자주성에 대한 전망과 대중적 성애(erotics)의 건축화를 부르짖고 있다.



전진삼 지음/320쪽/10,000원/시공문화사 발행
02-3147-1212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7월 30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본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지하 터파기공사와 병행하여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05. 7. 4일에는 전면도로 주출입 부분의 복곡판 설치가 완료되었고, 가시설공사를 위해 반입한 토사 8,000㎥ 중 6,130㎥가 반출되었다.

지하 터파기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있는 총 12단의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는 '05. 7. 13일 북측구간의 코너스트럿 설치(1, 2, 3단)공사가 완료되었고, '05. 7. 18일에는 남측구간의 코너스트럿(5, 6, 7단)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북측구간 코너스트럿(4, 5단) 부위의 굴토작업을 완료하고 코너스트럿 4단 띠장 설

치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05. 7. 21일에는 인접지역 거주인들로부터 공사소음, 진동 등의 공사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서초구청으로부터 '05. 7. 22일부터 7. 27일까지 6일간 행정처분(공사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05. 7. 26일에는 서초구청 주관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7월말 현재 10.72%(계획 19.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년 7월에는 18일(제13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3회 위원회 회의('05. 7. 18)에서는 설계보완사항으로 다목적실 내부계획과 지상부 방화구획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별도 공사인 냉·난방설비공사, 주

차관제시설공사, 다목적실내부공사 등에 대해서는 발주방안을 확정하고 공사발주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관 주요자재 협찬에 대해서는 협찬이 가능한 주요 자재품목을 확정하고, 해당 자재업체에 협찬 의뢰 공문을 발송기로 하였다.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진행 현황

인접지역 서초효성빌라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은 '05. 6. 24일 법원에 제출된 신청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피신청인측(남흥건설 외)은 '05. 7. 13일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2~3주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남측부 코너스트럿 설치



북측 4, 5단부위 굴토작업



주출입부 복곡판설치



공사 전경



투시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년 7월 18일)

■ 제안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공포·시행)되어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제5조)

-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면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심의참여나 비공개 심의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중복심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를 한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 (3) 건축심의의 중복 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 (1)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나 내진설계는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됨.

- (2)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 (3) 지진 등 재해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제86조제2항)

- (1) 현행 「건축법」 상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도 최소한의 일조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와의 이격(離隔)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2)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 (3)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다소 충족할 수 있으며 이웃간 분쟁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 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지적법 제18조제3항”을 ““지적법, 제20조제3항”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을 “건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중 “건축허가”를 “건축”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 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 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을 “허가권자는”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범위”를 “규모 및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 호중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를 “100제곱 미터”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별표 1 제 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

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중 “표준설계도서”를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 계도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1호·제1호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 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 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 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 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 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 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11호중 “농업용”을 “농어업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을 제외한다)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 ⑧ 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종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

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지정·업무범위”를 “업무범위”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6층”을 “3층”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만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주요 구조부”를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1.1미터이상”을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 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제44조중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제34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제48조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를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으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출구를 갖춘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
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
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
(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
재료로 사용할 것

제8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
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
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1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
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다세대주
택 및 기숙사”를 “기숙사”로, “4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을 “2배(근린상업지역·주주거지역안의 건축
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
문중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
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다음 각 목의 거리 이
상”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0.8배이상”을 “1배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원”을 “공원
(「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으
로 한다.

제91조의3제5항중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옥
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으로,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
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처
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
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
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목”
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다락(층고
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다락(층고
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
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
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를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
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
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하층의 산정
방법은 건축물의 주위”를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
한다)”로 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
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
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
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
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별표 1 제4호타목중 “안마시설소”를 “안마시설
소·안마원”으로 하고, 별표 1 제10호나목중 “오
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박을 할 수 있
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
함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
며, 동항제4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농지법”을 “「농지
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조의2제1항제
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철도
법”을 “「철도법」”으로, “도로법”을 “「도로법」”
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군사시설보호

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군기지법"을 "해군기지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6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5조제1호중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제1항제4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법"으로 하며,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61조제6호(중전의 제5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113조제1항제1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16조제4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9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19조의2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마목 및 아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각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6호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표 제12호라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16호아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별표 15 제10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건축법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항 제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 3. ~ 6. (생략) ② (생략) 제4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고속도로 통행료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회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나. (생략) 〈신설〉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 ————— 다음 각호 —————. 1. (현행과 같음) 2. 「지적법」 제20조제3항 ————— 다음 ————— 각 목의 어느 하나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건축위원회) ① ————— —————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 ② ————— ————— 전문위원 ————— 화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음 각호 ————— —————.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건축 ————— 가. 나. (현행과 같음)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⑤ ————— ————— 건축 —————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

현행	개정안
제6조(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회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회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회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가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 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회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허가권자는 ————— ————— 다음 각호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규모 및 범위 ————— 다. 라.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신고)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100제곱미터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100제곱미터 ————— ————— 2. (현행과 같음) 3. ————— 표준설계 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2.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생략)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 (생략) 제13조(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21조제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0. (생략)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92. ~ 12. (생략) ⑥ · (생략)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19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같은 ③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9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제1호9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9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용 _____ 1192. ~ 12. (현행과 같음) ⑥ ·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_____ 「건설기술관리법」, _____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_____.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자재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중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중축 또는 1개층의 중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서 신설) 3. 4. (생략)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현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기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 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자체 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_____ 업무범위 _____.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_____ 3층 _____ 2. _____ 1천제곱미터 _____, 다만, 창고·측사·적물제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4. (현행과 같음)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에 지하층에 설치하는

현행	개정안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설)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 _____ _____ _____1.2미터 이상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차(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제44조(피난구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만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리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생략)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이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기난방·자기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리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열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신설)

현행	개정안
4. (생략) 5. (생략)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③ (생략) (신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⑤ (생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다.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생략) ⑤ 제4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제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춘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재 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재료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芯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_____ 다음 각 호 _____ 1. ~ 5. (현행과 같음)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다음 각 호 _____ 1. _____ 기숙사 _____ _____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_____ _____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 _____ 상 _____ 가. _____ 1배 이상 _____ 나. 다.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 _____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 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와 같다.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② (생략)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6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각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호 (현행과 같음)
④ (생략)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다음 각 호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차마, 차양, 부연, 단둑, 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차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분에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총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기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다락 [총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테(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로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나.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현행과 같음)
다. 라. (생략)	다. 라. (현행과 같음)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높이를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가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가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 (삭제)
③ (생략)	
제122조(발착)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다만, 사ীগ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2005년 7월 18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완화(제2조의4제4호)

- (1) 리모델링을 하여 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2) 지상 1층의 세대를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소하는 세대수만큼 수직으로 증축을 허용함.
- (3) 리모델링 제약요인이었던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재건축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안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2)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함.
- (3)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방지되므로 사회적 약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건축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시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범위”를 “규모 및 범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

-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 (3)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 (4)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3) 외부벽체
-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8조제5항 각호”를 “법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8조제5항 각호”를 “법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배치도 및 평면도”를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영 제15조제6항”을 “영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공사감리업무)”를 “(공사감리업무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44조 전단중 “영 제121조제2항”을 “영 제121조제3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기기술 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6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 촉진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신설〉 ② ~ ⑨ (생략)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목의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구조개산서·피난시설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각목의 건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 공동주택 가. 승강기·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2. 제1호외의 건축물 가.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중앙건축위원회)①————— —————이하 이 조에서—————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회에서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 —————규 모 및 범위————— 각 호—————, 〈후단 삭제〉 1. 건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 ————— ————— —————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6항 각 호 ————— ————— ————— ————— 제12조(건축신고) ①—————

현행	개정안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생략)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 ④ (생략) ⑤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생략) (신설)	_____ _____ _____ _____ 각 호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6항 각 호_____ _____ _____ _____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가설건축물) ① _____ _____ _____ _____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인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_____ _____ _____ _____.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제7항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_____ _____ _____ 각 호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_____ 경 우_____ _____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건축 물_____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104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고지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③ _____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_____.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_____ 영 제121조제3항_____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_____.

※ 별지 서식 변경 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를 참조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952호, 2005년 7월 18일

■ 제안이유

왕성한 근무활동 연령에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업무를 전폐하고 수험 준비를 하는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별 합격제도를 도입하고, 시험과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조정(제8조제1항)

- (1)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대지계획 및 건축설계 2과목이고 대지계획 과목은 100점으로, 건축설계 과목은 200점으로 배점하고 있어 과목별 합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점 운용을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 200점으로 배점하고 있는 건축설계를 건축설계1 및 건축설계2로 구분하여 각각 100점씩 배점하여 총 3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함.
- (3) 각 과목별 배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험생으로 하여금 근무하면서 틈틈이 한 과목씩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목별 합격제도 도입(제10조제1항)

- (1)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일시에 득점하여야 함에 따라 왕성한 근무활동 연령에 있는 응시자가 업무를 전폐하고 수험 준비를 하는 등 국가의 효율적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음.
- (2)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

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

- (3) 시험부담을 줄여 근무를 성실히 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건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사법시행령"을 "건축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설계1

다. 건축설계2

제10조의 제목 "(합격기준)"을 "(합격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1의 2. 개별기준 제9호다목의 위반사항란중

- (1) 내지 (3)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104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제11조중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제2조의2중 "법"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의2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자정부구

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조제3항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의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다목,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나목, 다목(1) 내지 (3) 외의 부분, 라목, 마목(1) 내지 (3) 외의 부분, 바목(1) 및 (2) 외의 부분, 사목(1) 및 (2) 외의 부분, 아목(1) 내지 (3) 외의 부분, 자목(1) 및 (2) 외의 부분, 제12호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축사법시행령	제8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8조(시험과목 등) ① ————— 각 호 —————.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생략)	1. —————
가. (생략)	나. 건축설계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설계	〈신설〉	나. 건축설계1
〈신설〉	2. (생략)	다. 건축설계2
2. (생략)	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10조(합격기준)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대지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0조(합격기준 등)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58호, 2005년 7월 18일

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중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사법”으로,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건축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중 “영”을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5조제5항중 “건축사법시행령”을 “건축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5조의2제8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별표 2의 1등급 경력구분란 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동란 제3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 시행규

칙”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제2호 및 제4호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

의2서식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사법시행령”을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제2호 및 제4호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

의2서식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

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

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중 “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건축사법 시

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제2호나목 및 제4호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관련)

1. 건축사자격시험

과 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실 기
건축설계 1	평면설계	
건축설계 2	단면설계	실 기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

과 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작업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및 설비 건축계획각론 설계이론 건축사(史)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별지 서식 변경 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ira.or.kr>)를 참조

이 난은
건설교통부
건축서비스팀에서
상담한 내용중에서
발췌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Q : 건축법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중인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황도로는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위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허가 처리 가능 여부

A : 질의의 건축물이 당초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이 가능할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과-3379 ; 2005. 6. 18〉

Q : 내력벽 30㎡이하, 기둥 2개,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이상을 해체 또는 변경 수선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면적은 일부 감소(44.09㎡ → 43.15㎡)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대수선”이라 함은 증·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내력벽을 30㎡이 상, 기둥·보·지붕틀을 각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을 해체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증수, 높이 및 면적증가가 없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3264 ; 2005. 6. 14〉

※ 대수선의 범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자료제공 :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02-2110-8437)

바로잡습니다

본지 2005년 7월호 중 '질의회신(125쪽)' 코너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회신 중에 「이에 대한 적용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쪽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축약)~건축사가 하여야하는지 야 하는 것임.」을 「이에 대한 적용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쪽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이격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바로잡습니다.

APEC ARCHITECT PROJECT

제2차 임시이사회 · 제1회 중앙이사회

제2차 임시이사회 겸 제1회 중앙이사회가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동경의 Mita Kaigisho(삼전공용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APEC 21개 회원국 중 미국(8), 일본(10), 대만(11), 태국(4), 멕시코(3), 뉴질랜드(3), 필리핀(7), 호주(3), 캐나다(2), 중국(5), 홍콩(4), 말레이시아(4), 싱가포르(2), 한국(3) 등 14개국에서 64명이 참석하였고,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석하여 실질적인 이사국 참가국은 12개국이다.

한국에서는 건교부 행정사무관 송길수 사무관, 우리협회의 이근창 부회장과 신춘규 국제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설립 기본정신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간 기술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후 8개국(칠레, 홍콩, 멕시코, 파파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APEC Architect Project는 APEC 산하기구인 인적자원개발 Working Group(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회원국간의 건축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건축사에게 현존하는 장해를 없애고 건축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APEC Architect Project는 2001년 호주

의 브리즈번에서 발족되어 제4차의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제2차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uncil)에 걸쳐 2005년 중앙이사회(The Central Council)로 탄생하게 되었고, 제4차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된 운영 매뉴얼(Operations Manual)에 의해 각 회원국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에 대해 상호 인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회에 걸친 추진위원회에 이어 연속선상에 있는 안건을 다루었지만, 특히 각국의 심사 위원회(Monitoring Committee)의 승인, 중앙이사회 발족과 APEC Architect Project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과 진행절차에 관한 논의 그리고 APEC Architect Register의 개시일 등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시이사회 구성 (ITEM 4)
2. 임시 Monitoring Committee에 대한 승인 (ITEM 5)
3. APEC Architect 중앙이사회 재정(ITEM 6)
4. APEC Architect 등록 데이터베이스, Monitoring Committee 웹 사이트(ITEM 7.1)
중앙이사회는 각국의 Monitoring Committee Web site에는 다음사항을 내포하기로 동의하였다.
 - 각 Economy내의 건축사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
 - 각 Economy의 APEC Architect 자격요건을 충족한 건축사의 리스트와 접근 방식
 - APEC Architect 로서 등록을 위한 정보 및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 다운로드
 - 회원국 중 타 Economies에서 온 APEC 건축사에 대한 Home Economy의 인정 조건에 대한 설명

중앙이사회는 각 Economy에 의해 APEC Architects에 주는 등록번호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 각 Economy를 표시하는 약어와 5개의 숫

자로 구성하기로 동의했다.

(Australia - AU, Canada - CA, People's Republic of China - CN, Hong Kong China - HK, Japan - JP, Republic of Korea - KR, Malaysia - MY, Mexico - MX, New Zealand - NZ,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PH, Singapore - SG, Chinese Taipei - CT, Thailand - TH, United States of America - US)

5. 중앙이사회 Web Sites 승인(Item 7.2)

중앙이사회는 현재 제정하여 운영 중인 Web Site의 목차와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운영기로 합의하였다.

6. 건축사로서의 7년의 실무기록에 대한 요구 (Item 8.1)

중앙이사회는 이전의 현재성 요구 사항이었던 실무책임에 있는 위치에 최소 2년간은 APEC Architect 신청 직전에 있어야 된다는 항목을 '신청 직전 적절한 실적이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부록2에 첨부된 7년의 실무 경험을 위한 기록에 대한 양식을 최소한의 양식으로 하고 각국의 특성과 편의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는 데 합의하였다.(일본에서 사례 제시)

7. APEC Architect 로서의 등록을 위한 신청 (Item 8.2)

중앙이사회는 부록3에 첨부된 '등록을 위한 신청서'의 초안을 최소한으로 수용하는 것을 동의함.(일본 신청서 사례 제시)

8. APEC Architect ID CARD와 증명서(Item 8.2)

APEC Architect ID CARD와 증명서는 표준 설계에 의하여 중앙이사회를 대신하여 각국의 Monitoring Committee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ID CARD와 증명서에는 건축사의 이름, Home Economy 이름, APEC Architect의 등록 날짜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9. Operations Manual(Item 8.4)의 인준

각 Economy는 현재 작성된 Operation manual을 기초로 하여 사용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10. 서류에 대한 표현과 언어(Item 8.5)

각 Economy는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유로워야 하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자료 등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11. 정부로부터의 지원서신(Item 9)

각 정부로부터 Monitoring Committee의 지원 확보를 위한 서신이 초안으로 제시 되었으나 각 Economy의 정부와의 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2. APEC Architect 등록의 시작(Item 10)

각 Economy가 APEC Architect 등록 신청은 지금부터 받을 수 있으나 개시 일자를 통일하기로 합의하고 그 날짜를 2005년 9월 19일로하기로 결정하였다.(참고 : 2005년 9월 17일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APEC Architect Project를 추진하기로 한 제1차 모임을 갖은 후 4주년이 되는 날이나 공교롭게 토요일이 되어 다음 월요일인 9월 19일로 정함) 각 Economy의 Monitoring Committee의 Web site도 이 시점까지는 준비하기로 하였다.

13. APEC Architect Framework 의 기금과 재정운영(Item 11)

1)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Economy)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엔 회의 진행에 대한 경비를 대표단 등록비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2) 사무국은 참여하는 국가들이 미래의 재정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과 자료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4. 중앙이사회 Operations Program(Item 12)

1) 참여국은 APEC Architect Framework의 효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 회의에서 채택된 요약결론에 대해 가능한 빨리 수용하기로 하였다.

2) 모든 Monitoring Committee는 Operations Manual의 제2장에 기록된 APEC Architect 기준과 정책에 모순이 될 만한 직업인 중에 대한 요구에 대한 어떤 변경도 중앙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무국은 이런 변경을 각국에 열람시키고, 필요하다면 중앙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4) 각 Monitoring Committee는 사무국이 결정한 날짜로부터 6개월마다 간략한 Survey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국도 이를 모든 국가에 열람시켜야 한다.

15. 한국과 싱가포르에 대한 조건

1) 한국과 싱가포르는 Monitoring Committee를 구성한 것을 사무국에 통보 한다.

2) 양국은 Survey Application과 부가적인 자료를 완성하고, 중앙이사회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3) 사무국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요구된 서류가 완전하게 접수되었을 때 중앙이사회의 공인된 Monitoring Committee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용되었음을 통보한다.

4) 사무국은 모든 자료를 공인된 Monitoring Committee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6. Summary Conclusions(Item 14)

중앙이사회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사무국은 결론요약을 3개월 이내 서명하여 각 Monitoring Committee에게 배포하고, 그리하여 동경중앙이사회의 결정이 유효하게 되도록 하였다.

17. 행정조항 - 사무국(Item 15)

차기 사무국은 중간에 신청이 있지 않는 한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18. 중앙이사회의 차기 일정(Item 16)

차기 회의는 2006년 5월 또는 6월 중 Mexico City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날짜는 멕시코 측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 캐나다에서 중앙이사회 개최를 신청했으나 멕시코에게 양보함.



(왼쪽 : 이근창, 오른쪽 : 송길수)

앞으로의 과제

APEC Architect Project는 올해 동경의 제1회 중앙이사회에 12개국이 참여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최소기본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각국의 APEC Architect를 받아들이는 최소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UIA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축사의 상호인정 지침보다는 각국의 등록건축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실무 경력에 따라 상호인정의 바탕을 두는 등 많이 완화된 조건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이미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곧 외국의 대형 건축사무소가 한국 내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PEC Architect Project에 의한 회원 상대국의 경제적 수준과 시장의 크기를 고려 할 때 회원국간의 다자 협상에 의해 서로 개방이 되더라도 시장 개입에는 다소 마찰이 예상되지만 커다란 피해 볼 것은 없다고 사료된다. 이 시점에 우리의 시장과 상대국의 시장 크기를 조사하여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단, 중국과 미국, 일본 주요 경제 국가들이 APEC 건축사 Project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를 APEC Architect에게만 한정 지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규제방안을 만드는 개연성이 예측되고, 현재 UIA에서 마련하고 있는 WTO하에서 다자간 건축사 상



(왼쪽 : 신준규)

호 인정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APEC Architect Project에 이사국으로서 유리한 위치 확보를 가질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라고 가정 할 때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많은 국내 APEC Architect를 배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앞으로 중앙이사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운영 지침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중앙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동안의 준비과정에 앞서버려 참여한 사실이 참작되고,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의 강력한 지지로 힘입어 Monitoring Committee의 설치, Web site 작성 등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무국에 보고함으로써 자동 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일단 간편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회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여 가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협회에서는 해당 행정 기관과, APEC 관련 부처와 국내 건축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사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Monitoring Committee를 만들고, 요구된 Web Site 등의 제작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 APEC Architect Project의 이사국으로서 승인을 득하고 국제적인 경쟁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 한 후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국내건축사들이 APEC Architect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근창 / 본협회 부회장, 신준규 / 본협회 국제 부위원장)

2005년 건축허가 현황(6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6월)			누계 (1~6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2,998	12,007	-7.6%	74,137	63,553	-14.3%
	연면적	11,646,976	8,568,910	-26.4%	54,248,215	54,209,994	-0.1%
주거용	동 수	3,866	3,698	-4.3%	25,987	18,406	-29.2%
	연면적	5,239,905	3,593,426	-31.4%	20,538,265	23,923,745	16.5%
상업용	동 수	4,230	3,509	-17.0%	23,457	18,905	-19.4%
	연면적	3,038,267	1,652,561	-45.6%	17,245,265	12,018,612	-30.3%
공업용	동 수	2,123	1,849	-12.9%	10,045	9,895	-1.5%
	연면적	1,222,997	1,534,043	25.4%	6,760,803	6,717,971	-0.6%
문교및 사회용	동 수	730	850	16.4%	3,990	4,653	16.6%
	연면적	804,005	660,334	-17.9%	3,870,240	4,653,912	20.2%
기 타	동 수	2,049	2,101	2.5%	10,658	11,694	9.7%
	연면적	1,341,802	1,128,546	-15.9%	5,833,642	6,895,754	18.2%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6월)			누계 (1~6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2,998	12,007	-7.6%	74,137	63,553	-14.3%
	연면적	11,646,976	8,568,909	-26.4%	54,248,215	54,209,993	-0.1%
철 근 철골조	동 수	11,325	10,560	-6.8%	63,933	55,493	-13.2%
	연면적	11,502,476	8,419,751	-26.8%	53,114,741	53,496,523	0.7%
조적조	동 수	1,475	1,230	-16.6%	9,097	6,914	-24.0%
	연면적	120,348	126,608	5.2%	891,346	589,181	-33.9%
목 조	동 수	198	216	9.1%	1,107	1,142	3.2%
	연면적	24,152	22,378	-7.3%	242,128	123,910	-48.8%
기 타	동 수	0	1		-	4	
	연면적	0	172		-	379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6월)			누계 (1~6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2,998	12,007	-7.6%	74,137	63,553	-14.3%
	연면적	11,646,976	8,568,910	-26.4%	54,248,215	54,209,994	-0.1%
수도권	동 수	4,768	3,670	-23.0%	24,268	19,461	-19.8%
	연면적	5,668,002	2,994,787	-47.2%	25,397,448	24,662,893	-2.9%
서 울	동 수	736	720	-2.2%	4,687	3,442	-26.6%
	연면적	977,111	1,020,655	4.5%	7,154,892	5,987,788	-16.3%
인 천	동 수	491	289	-41.1%	2,418	1,810	-25.1%
	연면적	958,372	187,029	-80.5%	3,291,907	2,581,121	-21.6%
경기도	동 수	3,541	2,661	-24.9%	17,163	14,209	-17.2%
	연면적	3,732,519	1,787,103	-52.1%	14,950,649	16,093,984	7.6%
지 방	동 수	8,230	8,337	1.3%	49,869	44,092	-11.6%
	연면적	5,978,974	5,574,123	-6.8%	28,850,767	29,547,101	2.4%
부 산	동 수	413	534	29.3%	2,680	2,466	-8.0%
	연면적	423,527	564,851	33.4%	2,814,425	2,637,239	-6.3%
대 구	동 수	418	484	15.8%	3,023	2,320	-23.3%
	연면적	702,784	675,020	-4.0%	2,448,014	3,280,349	34.0%
광 주	동 수	272	268	-1.5%	1,739	1,622	-6.7%
	연면적	123,553	100,744	-18.5%	1,209,999	1,227,543	1.4%
대 전	동 수	289	198	-31.5%	1,673	1,416	-15.4%
	연면적	234,640	113,730	-51.5%	1,422,452	1,335,221	-6.1%
울 산	동 수	331	314	-5.1%	2,030	1,729	-14.8%
	연면적	553,091	140,184	-74.7%	1,269,431	801,081	-36.9%
강 원	동 수	576	676	17.4%	4,292	3,535	-17.6%
	연면적	284,150	489,051	72.1%	2,001,636	2,298,470	14.8%
충 북	동 수	796	664	-16.6%	4,682	3,621	-22.7%
	연면적	366,121	375,795	2.6%	2,596,403	2,591,266	-0.2%
충 남	동 수	1,415	861	-39.2%	6,301	4,564	-27.6%
	연면적	1,252,535	665,096	-46.9%	5,075,564	3,576,073	-29.5%
전 북	동 수	567	862	52.0%	3,331	3,561	6.9%
	연면적	170,041	667,314	292.4%	1,286,093	1,980,529	54.0%
전 남	동 수	582	607	4.3%	3,807	3,778	-0.8%
	연면적	389,975	259,701	-33.4%	1,719,118	1,262,722	-26.5%
경 북	동 수	1,020	1,252	22.7%	7,297	7,027	-3.7%
	연면적	569,296	539,782	-5.2%	2,851,419	3,564,637	25.0%
경 남	동 수	1,161	1,318	13.5%	7,079	6,961	-1.7%
	연면적	795,661	890,039	11.9%	3,627,581	4,549,546	25.4%
제 주	동 수	390	299	-23.3%	1,935	1,492	-22.9%
	연면적	113,600	92,816	-18.3%	528,632	442,425	-16.3%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6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무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건 축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무소		합 계		비율(%)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54	5,054	200	398	26	79	1	4	0	0	5,281	5,535	1,454	1,454	257	507	77	232	29	116	16	80	5	30	5	35	6	56	1,849	2,510	8	8	7,138	8,053	100.0%	100.0%	
서울	1,185	1,185	54	108	15	46					1,254	1,339	858	858	164	328	45	135	18	72	7	35	2	12	4	28	4	35	1,102	1,503	7	7	2,363	2,849	33.1%	35.4%	
부산	525	525	23	46	3	9					551	580	70	70	13	26	6	18	4	16	4	20	2	12					99	162			650	742	9.1%	9.2%	
대구	419	419	31	62	4	12	1	4			455	497	41	41	17	34	5	15	2	8	2	10							67	108			522	605	7.3%	7.5%	
인천	217	217	3	6							220	223	52	52	4	8	1	3												57	63			277	286	3.9%	3.6%
광주	199	199	2	4							201	203	31	31	11	22	2	6	1	4	1	5	1	6	1	7				48	81			249	284	3.5%	3.5%
대전	207	207	16	32	2	6					225	245	25	25	7	14	1	3	1	4							1	12	35	58			260	303	3.6%	3.8%	
울산	160	160	5	10	1	3					166	173	14	14	2	4	2	6												18	24			184	197	2.6%	2.4%
경기	635	635	26	50							661	685	211	211	24	41	8	25			1	5								244	282			905	967	12.7%	12.0%
강원	156	156	5	10							161	166	20	20	3	6	1	3	1	4										25	33			186	199	2.6%	2.5%
충북	171	171	8	16							179	187	19	19	3	6			1	4	1	5					1	9	25	43			204	230	2.9%	2.9%	
충남	157	157	3	6							160	163	32	32			2	6	1	4										35	42			195	205	2.7%	2.5%
전북	182	182	3	6							185	188	19	19	2	4	1	3												22	26			207	214	2.9%	2.7%
전남	126	126									126	126	10	10			1	3												11	13			137	139	1.9%	1.7%
경북	281	281	8	16	1	3					290	300	28	28	1	2	1	3												30	33	1	1	321	334	4.5%	4.1%
경남	331	331	13	26							344	357	18	18	6	12	1	3												25	33			369	390	5.2%	4.8%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43	10	8,053	100.0%	26
서울	2,846	3	2,849	35.4%	13
부산	741	1	742	9.2%	9
대구	605	0	605	7.5%	0
인천	286	0	286	3.6%	0
광주	284	0	284	3.5%	0
대전	302	1	303	3.8%	0
울산	197	0	197	2.4%	0
경기	965	2	967	12.0%	2
강원	199	0	199	2.5%	0
충북	230	0	230	2.9%	0
충남	202	3	205	2.5%	0
전북	214	0	214	2.7%	0
전남	139	0	139	1.7%	0
경북	334	0	334	4.1%	1
경남	390	0	390	4.8%	1
제주	109	0	109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35	2,510	8	8,053	
비 율	68.7%	31.2%	0.1%	100.0%	
사무소수	5,281	1,849	8	7,138	
비 율	74.0%	25.9%	0.1%	100.0%	

신건축

2005년 5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오는
9월 25일까지
일본 아이치
현에서 개최
되고 있는
2005일본국
제 박람회의
내용이 특집



으로 다루어지면서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자연의 예지(叡智)'를 테마로 한 이번 박람회의 건축역시 박람회의 테마에 맞추어 '환경친화건축'이 각 파빌리언의 디자인에 있어 기본적인 테마로 깔려있다. 이 외에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였던 단게 켄조에 대한 추도의 글들이 권두에 소개되었다.

■특집: 2005일본국제박람회(愛・地球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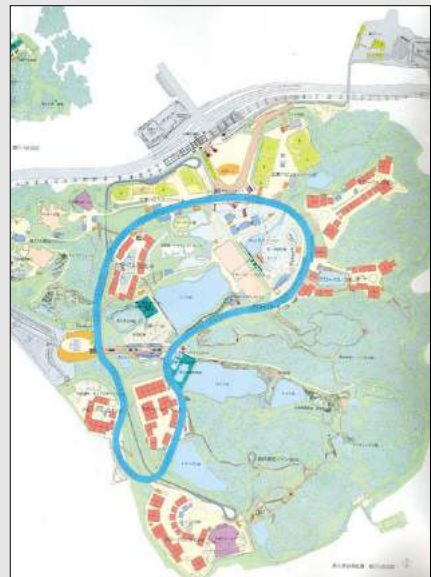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오사카 만국박람회(1970)로부터 35년만이며 21세기 최초의 만국박람회인 2005 일본국제박람회가 3월 25일 개막되었다. 회기는 9월 25일까지로 총 185일간 열리며, 1,500만명의 입장객을 예상하고 있다. 회장(會場)은 나고야시의 동부 구릉지대로서 지형의 기복이 제법 있으며 녹음이 울창한 곳이다. 약 158ha의 나가쿠테(長久手)회장과 약 15ha의 세토(瀬戸)회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곳 모두 기존의 지형에 거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회장계획으로 이루어졌다. 나가쿠테회장에서는 전쟁(全長) 2.6km, 폭 21m의 공중회랑 '글로벌 루프(Global Loop)'가 세계 120개국과 4개 국제기관의 파빌리언들을 모아놓은 6개의 '글로벌 커먼(Global Common)'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 또한 이번 회의장 계획의 큰 특징이다. 회장의 파빌리언 건축에서는 박람회 테마인 '자연의 예지'를

반영하여 환경부하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회장계획의 특징

1996년 일본의 아이치와 캐나다의 캘거리가 2005년 만국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경쟁했을 당시 일본정부가 제시한 박람회장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카이쇼노 모리'라는 540ha의 숲속에 주거단지의 개발과 함께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이 일본정부의 본래 생각이었으며, 상당한 절토와 성토를 요하면서 기존의 녹음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계획은 당시 박람회장 계획을 맡았던 건축사들의 반대로 주거단지 개발을 배제한 환경친화적인 회장계획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유치가 확정되자 일본정부는 이 계획을 단지 유치를 위한 안으로 사장시켜버리고 본래 의도했던 주거단지의 개발을 포함한 안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BIE(박람회국제사무국)를 비롯한 제외각국이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자 결국 일본 정부는 주거단지 개발의 중지와 함께 카이쇼노모리에서의 개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개최지 선정의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나가쿠테 청소년 스포츠공원'이다.

이 스포츠공원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구릉지에 사이클링 로드, 축구, 야구, 테니스 등을 위한 필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드, 검도장과 유도장, 아이스링크와 운수 풀장 그리고 합숙시설 등이 흩어져 있었다. 14개의 연목과 녹지로 둘러싸인 자연속의 훌륭한 공원이었으나 훌륭한 스포츠 공원이 반드시 훌륭한 만국박람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회장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 이번 박람회장은 종래의 만국박람회장계획의 상식에서 본다면 '두 곳으로 나누어진 회장', '좁은 회장', '고저차가 있는 회장'이라는 세 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반대로 이번 박람회장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1) 두 곳으로 나누어진 회장 -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나가쿠테 회장과 더불어 소규모 회장으로 선정된 세토회장은 150년 만국박람회 역사상 최초의 시민참가형 회장으로서 자리잡았으며, 나가쿠테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좁은 회장 - 과거 150년간의 만국박람회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장이 적어도 100ha정도의 평지를 시설용지로 확보하였다. 나가쿠테 회장은 비록 158ha이지만 그 절반은 희귀한 곤충과 식물 등도 서식하고 있는 수면이나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박람회장으로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은 70~80ha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는 350ha를 사용하였고, 2010년의 상하이 만국박람회에서는 580ha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번 박람회장은 지극히 컴팩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3) 고저차가 있는 회장 - 회장내에 존재하는 최대 40m의 고저차를 가진 부지에서 대폭적인 부지의 변형 없이 어떻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한 관람로를 만드느냐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2001년 봄에 제안된 '공중회랑' 안은 회장후보지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박람회 시설부문의 치프 프로듀서인 하라타 건축사가 떠올렸던 아이디어였다. 회장을 순환하는 이 공중회랑은 마치 산간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교량구간처럼 기복이 심한 회장을 완만한 구배의 경사로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루프(Global 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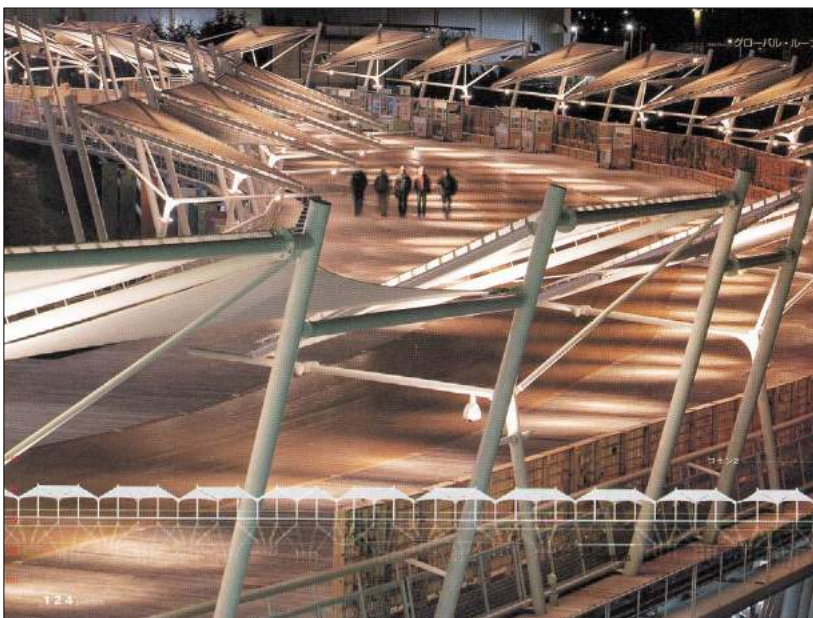
앞서 밝힌 바대로 고저차가 큰 회장에서 지

형의 변경 없이 장애물 없는 간선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이 회장계획에 있어서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희귀종의 생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을 피해가면서 여러 가지 동선의 모양을 스터디한 결과 지금의 호리병 모양의 동선을 설정하였다. 이것이 폭 21m, 전장 2.6km의 글로벌 루프이다. 글로벌 루프는 글로벌 커먼이라 불리는 6개의 공식 참가국의 클러스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일주(一周) 2.6km 중에서 일부 접지부분을 제외하고 2.0km 부분이 공중회랑으로서 브릿지구조를 하고 있다. 이 공중회랑 구상은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내왕자에게 있어서 박람회장 동선의 파악이 쉽다는 점과 비일상적 공간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배리어 프리한 동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평가되어 채택된 것이다.

교각의 길이는 최대 약 16m, 평균 7.5m이다. 구조설계가 그대로 외관디자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설계가와 더불어 부양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여러 스터디를 거쳐 완성된 철선(鐵線)구조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힘 모두에 대해 기울어진 기둥으로 저항할 수 있는 훌륭한 구조시스템이다. 또한 리유스(reuse)와 리사이클(recycle)을 고려하여 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파일(pile) 또한 끝부분에 있는 회전우근(回轉羽根)을 역회전시키면 뽑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노면은 보행감을 높이고 보행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목재를 마감재로 사용하였으며, 21m 폭원의 중앙부에는 긴급차량이나 전기 트램의 통행을 고려하여 목재칩 50%, 플라스틱 50%의 복합재인 재생유기성목재를 사용하였다.

글로벌 커먼(Global Common)

마스터플랜을 세우기에 앞서 6개월간의 박람회를 위해 부지의 모습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축구, 야구, 테니스 등의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 5만평방미터의 공식참가국의 파빌리언을 배치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의 제외국 및 각국 제기관인 파빌리



글로벌 루프(Global Loop)



각 국 파빌리언에 제공된 '모듈' 들

언은 각국이 각각 부지를 마련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박람회협회가 '모듈'이라 이름붙인 각면 18m의 공간유니트를 국가별로 최대 5개까지 제공하여 참가국은 일정한 룰 안에서 파사드나 내부의 디자인에 있어서만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결과 개발도상국 등의 참가비용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1200이 넘는 국가와 국제기관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관이 너무 단조로워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모듈방식은 각 참가국의 부담경감과 동시에 폐막 후 3R(reduce, reuse, recycle)의 촉진 또한 의도하고 있다. 3R에 관해서는 와세다대학으로부터의 조언을 얻어가며 검토를 진행하였다. 해체된 부재의 리사이클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듈을 이설하여 다른 기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우스'를 보급하는 것 또한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건축의 중고부재는 잔존강도나 잔존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으며, 공공건축물도 새 부재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중고차의 심사시스템과 같은 공공적인 인증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고건축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컨센서스의 조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스페인관

모듈을 사용한 파빌리언은 자원의 재활용과 참가비용의 경감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낳았지

만 매년 박람회 건축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건축적 실험들에 관심을 갖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한국관, 미국관, 프랑스관 등 대부분의 파빌리언들의 외관은 간단한 간판의 이미지 구성으로 끝났으며, 제한된 구조체 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만으로는 건축적 실험의 한계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유수 건축잡지들이 앞 다투어 소개했던 하노버 박람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끌만한 외국 파빌리언은 단연 스페인관이다. 기존의 모듈 벽체에 새로운 파사드를 추가하였으며, 그 설계 또한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건축사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커먼3에 마련된 스페인관이 각국의 파빌리언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외관이다. 이 외관은 스페인의 전통적 건축공법 '셀로시아(celosia: 격자창)'이다. 기설 모듈의 벽으로부터 3m 이격된 위치에 6각형의 도기(陶器)로 된 6종류의 블록을 기하학적으로 쌓아 높이 약 11미터, 폭 5cm의 벽을 만들었다. 사용된 셀로시아는 스페인 국기를 상징한 적색과 황색으로부터 변형된 6가지 색상이 있다. 와인이나 투우의 적색, 태양과 모래의 황색... 처럼 이들은 세계적



스페인관

으로 스페인을 상징하는 색상들이다. 또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공존하는 스페인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는 실내공간의 디자인에 나타나는데 실내의 구성은 하나의 커다란 방(교회의 중앙회랑을 연상)을 중심으로 7개의 방이 연결된 형태를 취하였다. 이 방들은 모두 6각형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고딕의 볼트나 이슬람의 반구 돔이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다.



스페인관

일본관과 일본에서 제작한 기타 시설들

나가쿠테 일본관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제작한 박람회 시설들에서는 단연 목재를 활용한 구법이 눈에 띈다. 최근 10여년 간 꾸준히 목구조를 활용하여 대공간을 구축하는 실험을 해온 일본으로서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니혼세케이(日本設計)가 설계를 담당한 일본관 파빌리언은 대나무로 된 트러스와 피막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관에서는 3R를 실현하기 위해 11개의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신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신기술에는 대나무를 활용한 구조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식품폐기물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외벽, 흙으로 되돌아가는 벽돌(굽는 온도를 낮추어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나무를 활용한 구조체는 '지구시민촌'의 구조물에도 활용되었으며, 이 밖에도 영빈관, 시민파빌리언, 세토 일본관, 박람회장의 게이트 등에 목재가 구조체와 마감재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박람회의 센터존에 마련된 '바이오 링(B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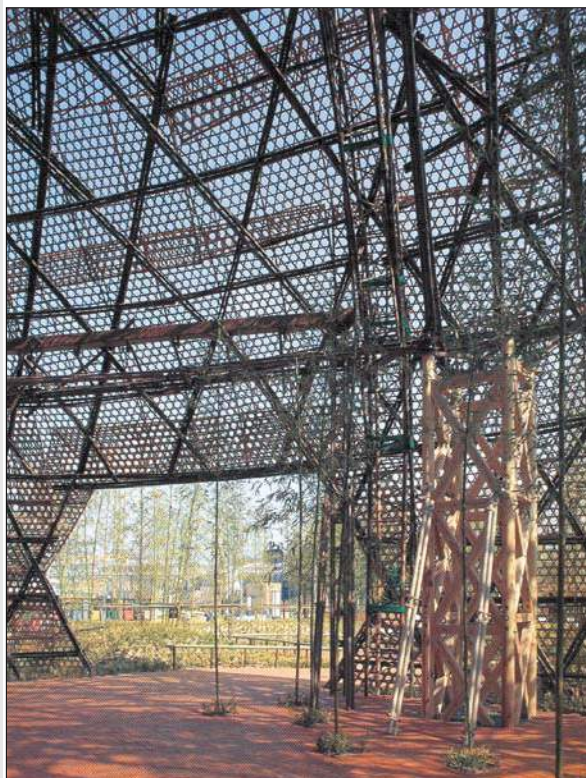
세토 일본관

lung)'은 외벽에 식물이 설치된 '녹화패널'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컨셉을 보인 것은 기업파빌리언인 '미쓰비시 미래관'이며, 다른 기업파빌리언들은 철골을 사용하면서 해체 후 재사용을 고려한 점을 박람회의 테마와 연관 지었다.

투박하고 소박한 환경친화 건축의 진면모를 보이다

이번 박람회의 건축물들은 화려함과 세련됨을 앞세웠던 박람회 건축의 경향과는 크게 반대되는 것이다. '모듈'의 사용으로 인해 참가국의 파빌리언들은 간편건축(cardboard architecture)이 되어버린 느낌도 없지 않지만 투박하고 소박한 표현 속에 친환경 건축의 패러다임이 갖는 진정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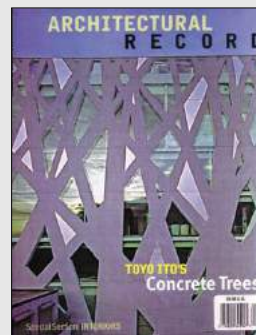


나가쿠테 일본관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6월호

최신작으로 Toyo Ito의 일본 도쿄 Tod's Omotesando Building, Bernard Tschumi의 스 위 스



Vacheron Constantin Headquarters and Factory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타입별 연구로는 요양원을 다루고 있다. 비평 및 이론분야에서는 건축의 상징성에 대한 최근의 논쟁, 건축계에서 건축이론의 위상 재고에 대한 논의가 게재되어 있다.

■ 건축이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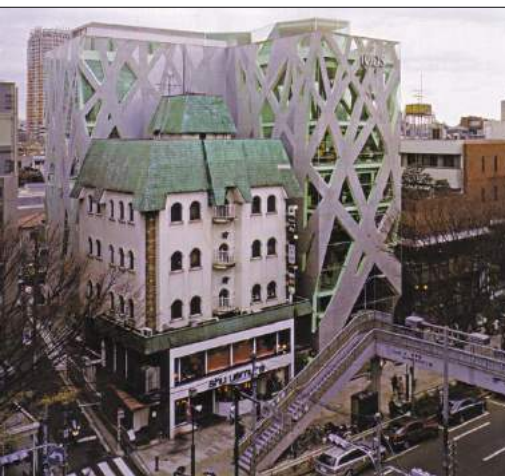
Michael Speaks가 기고한 이 글은 건축계에서 이론의 가치와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현황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대학교들은 막시즘과 해체주의에 바탕을 둔 아방가르드적 가치를 지향해왔다. Jacques Derrida의 철학을 건축에 접목시킨 Peter Eisenman, 막시스트 역사학자 Manfredo Tafuri의 시각을 미국에서 확장시킨 K. Michael Hays의 소위 '비판적' 이론과 건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순수한 건축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제도권에 저항하는 건축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새롭고 개혁적인 건축은 바로 시장 속에서 탄생하고 있으며, George Baird가 소위 'post-critics'라 명명한 신진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건축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축의 '비판적' 기능에 더 이상 무게를 두지 않는 이들 중 일부는 이론 자체가 새로운 건축의 생산에 더 이상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아방가르드 이론이 개혁지향적인

건축문화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들에 일면 제동을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건축계의 앞날을 열어갈 새로운 시도들이 아카데미나 이론계가 아니라 소형 사무실의 작업실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저커팅기 등 새로운 도구의 등장으로 1:1 스케일의 모형까지 실제 재료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즉시 만들어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무 작업 환경이다. Design Prototyping을 통해 다양한 구상의 디자인 및 시공상 문제점을 짚어내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해결안을 제공하며, 공동작업을 촉진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사고와 제작 사이의 간극(이론과 실천이라는 이분법이 여기에 기초해 있다), prototype과 최종 제품 사이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권 역시 이러한 비선형적 개선 방식이 주는 교훈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근작소개

Toyō Ito & Associates, Architects의 일본 도쿄 Tod's Omotesando Building

Tod's 건물이 들어선 Omotesando 가는 많은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고급 브랜드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L자형으로 생긴 대지로 인해 10m 만이 주가로에 접했기에 특이한 입면구성만으로는 건물의 정체성



Tod's Omotesando Building

을 구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Toyō Ito는 구조와 표피가 결합된 전체조직을 고안해냈다. 입면이 9개의 서로 겹쳐진 나뭇가지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내부는 완전한 무주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커튼월 구조를 차용한 주위의 대부분 건물들로부터 뚜렷이 대별된다. Ito의 표현에 따르면 구조적 합리성이 내재돼 있다는 나뭇가지 구조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지해야 할 하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폭도 점차 좁아진다. 이 구조체 사이로 270개의 개구부가 있으며, 프레임 없는 유리나 알루미늄 패널로 채워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3층까지의 상점, 2개층에 걸친 사무실, 이벤트 공간, 회의실, 옥상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피쪽으로 주요 수직통로를 둬으로써 중심부 상점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Sendai Mediatheque, 런던의 Serpentine Gallery Pavilion에 이어 Ito의 구조적 모험을 다시 보여준 이 작품은 특히 절제된 구조적 표현을 통해 초시간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신작으로 Schwartz/Silver Architects의 미국 루이지애나 주 Shaw Center for the Arts, Vincent James Associates Architects의 미국 위스콘신 주 Porter Boathouse, Bernard Tschumi Architects의 스위스 Vacheron Constantin Headquarters and Factory, Krueck & Sexton Architects의 미국 일리노이 주 Shure Technology Center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요양원

환자의 편의와 쾌유를 위해,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병원들은 호텔과 같은 환경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행동연구과학자 Roger S. Ulrich는 광활한 자연이 내다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이 그렇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 투약횟수도 적고 입원기간도 짧은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시설 자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자연에 접해있는 입지환경도 그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주위 자연

환경을 내부에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있는 사례로 Herzog & de Meuron의 스위스 바젤 REHAB, ALTUS Architecture+Design의 미국 미네소타 주 Dalseth Family Dental Clinic이 소개되어 있으며, Cambridge Seven Associate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Yawkey Center는 도심의 경우 어떻게 입지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바젤 REHAB

■ 기타

상하이 인근 킵푸(Qingpu)의 활발한 건축붐 소식, 건축의 상징성에 대한 일련의 논쟁, 그린 빌딩 평가 시스템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재고, 최신 인테리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2005년 6월

Zaha Hadid의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장 등 자동차 관련 오피스, 전시장, 공장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 건축과 자동차

자동차와 근대건축은 같은 역사의 궤를 따라 왔다. 자동차와 그 대량생산 체제는 근대건축의 논의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르 꼬르뷔제는 빌라 사보아를 1929년형 Voison의 회전반경에 맞춰 설계했으며, 자동차의 미학과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Citrohan 주택을 고안하였다. 하지만 대량생산체제를 곧바로 근대건축에 접목시켰던 것은 Albert Kahn으로, 그는 Ford사를 위해 미학을 배제한 기능주의 공장을 설계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와 형식의 건물을 생산해냈다. 생활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로스앤젤레스, 밀턴 케인즈에서부터 브라질리아까지 수많은 도시들의 체계가 자동차 도로를 중심으로 조직 혹은 재조직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관계는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자동차가 지닌 유선형의 형태적 특성이 건축형태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Zaha Hadid의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장 라이프치히 교외의 평원에 위치한 BMW의 새 공장단지는 최신 생산기술, 브랜딩, 대규모 투자와 스타건축가의 참여가 한 데 어우러진 유럽의 가장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였으며, 세계의 거대한 생산공장과 Zaha Hadid의 센트럴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 제작 공장과 페인트 공장, 조립공장 사이에 위치하여 각 공정을 연결해주고 있는 센트럴 빌딩은 전시장,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장

오피스, 연구실, 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여있는 복합건물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가 차체 제작 공장에서 페인트 공장으로 옮겨가는 경로가 건물 내의 로비, 오피스, 식당 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체 공정이 개별 작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피라네지의 그림과 같은 공간감을 전달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Hadid의 역동적인 형태적 실험에 다중적인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융합된 결과이다. 공장과 오피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제품과 공정의 구분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열린 구성은 Self-Compacting Concrete의 사용으로 가능했다.

그 외에 Jakob+MacFarlane의 프랑스 Boulogne-Billancourt Communications Centre, Shuhei Endo의 일본 오사카 토요나카 자동차 전시장, Coop Himmelb(l)au의 독일 뮌헨 BMW 판매 및 이벤트 센터, UN Studio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박물관, Hentrich-Petschnigg & Partner의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원, Szyszkowitz + Kowalski의 오스트리아 그라츠 자동차공원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2005년 Aichi 일본 국제 박람회에 대한 보고, 최신 주택 사례로 Denton Corker Marshall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Bass Strait 주택 및 작업실, Daniel Libeskind의 첫 번째 중국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실장)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박물관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합/(042)841-5725 · 청양지역회합/(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익산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